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86호

도시관리계획(회현 등 61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1개 구역 건축물의 용도계획 등 변경]

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6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26.7.22.)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비주거비용 폐지완화 등 市 규제철폐 사항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주거용도를 제한하는 공동주택 불허용도 등을 정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건축물의 용도 및 주거복합 건축물의 비주거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 대상 : 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치구	구역명
강남구	압구정로변, 논현지구, 청담지구, 대치지구
강북구	삼양지구, 4·19사거리, 가오리역, 화계역
강서구	우장산역생활권, 목동사거리 생활권중심
관악구	사당·이수(동작구, 서초구 중북), 미림지구중심 및 주변지역, 난곡생활권중심, 낙성대, 대림지역중심, 은천생활권중심
광진구	광나루역지구, 군자역지구, 구의사거리, 화양1지구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금천구	금천구심
노원구	광운대주변, 수락지구중심
도봉구	도봉생활권중심, 방학역세권, 쌍문지구중심

자치구	구역명
동작구	사당·이수(관악구, 서초구 중복)
마포구	아현1지구, 아현2지구, 대흥지구, 신촌지구일대(서대문구 중복), 마포지구
서대문구	신촌지구일대(마포구 중복), 서대문구청주변
서초구	사당·이수(관악구, 동작구 중복), 내방역 일대,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양재지구중심
성동구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성북구	보문생활권중심, 월곡생활권중심, 정릉생활권중심
송파구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송파대로 제1지구, 삼전, 방이, 오금지구중심, 개롱, 옛성동구치소부지(특별계획구역②)
영등포구	신길6생활권, 신봉지구, 신길동, 선유도역 주변, 당산지구중심
용산구	이태원로 주변, 한남
은평구	응암로, 신사생활권
종로구	이화동 일대
중구	회현, 퇴계로변, 약수,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 공동주택에 관한 건축물 용도 및 용적률 계획 (상세한 내용은 첨부 결정조서 참조)

1) 공동주택에 관한 불허용도 계획 변경 (우장산역생활권중심 등 4개구역)

－ 불허용도 계획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을 삭제

< 불허용도에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

(예시)

구 분	기 정	변 경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삭제)
	공동주택	(삭제)

2) 불허용도 중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에 관한 불허용도 계획 변경 (압구정로변 등 57개구역)

－ 불허용도 계획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을 삭제

※ 주거복합 * : 주거복합, 주상복합, 주거복합건축물 등 이와 유사한 표현을 포함함

< 불허용도에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가 포함된 경우 >

(예시)

구 분	기 정	변 경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삭제)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삭제)

※ 주거복합 * : 주거복합, 주상복합, 주거복합건축물 등 이와 유사한 표현을 포함함

3) 비주거용도 비율 및 또는 주거 부분 용적률 계획 변경

－ 비주거용도 비율 및 주거부분 용적률 제한 기준 삭제

자치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기 정	변 경	비 고
강북구	삼양지구	주1) 주거복합건축물 지상층 및 지하층 주거용도 설치 불허, 비주거(오피스텔 제외) 비율 10%이상 설치 의무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2023.03.)에 따라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비주거용도를 용적률의 10%이상 지상층에 설치하여야 함	(삭 제)	불허용도 결정조서 중 주석삭제
	4.19사거리	1)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 10%이상(지상부 설치) 계획	(삭 제)	불허용도 결정조서 중 주석삭제
	가오리역	1)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 10% 이상 (지상부 설치)계획	(삭 제)	불허용도 결정조서 중 주석삭제
송파구	송파대로 제1지구	주1) 건축물의 비주거용도가 건축물의 지상부 2개층 이상이고 용적률의 15%이상인 경우에 한함	(삭 제)	불허용도 결정조서 중 주석삭제
		■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기준 ○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5% 이상 계획	(삭 제)	용적률 계획 중 관련내용 삭제
	삼전	주1) 건축물의 비주거용도가 건축물의 지상부 2개층 이상이고 용적률의 15%이상인 경우에 한함	(삭 제)	불허용도 결정조서 중 주석삭제
		주2) 준주거지역내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기준 ○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15% 이상 계획 * 용적률 15% 이상 설치하는 지상부 2개층 이상 설치를 의미 * ‘준주거지역내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하는 기준과는 별도로 비주거 용도비율을 만족하여야 함	(삭 제)	용적률 계획 중 주석 및 관련내용 삭제

자치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기 정	변 경	비 고
	망이	주1) 주거복합건축물 :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가 건축물의 지상부 2개층 이상이고, 용적률의 15% 이상인 경우에 한함	(삭 제)	불허용도 결정조서 중 주식삭제
		■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기준 ○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5% 이상 계획	(삭 제)	용적률 계획 중 관련내용 삭제
	오금지구중심	주1)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가 건축물의 지상부 2개층 이상이고, 용적률의 15% 이상인 경우에 한함	(삭 제)	불허용도 결정조서 중 주식삭제
		※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용적률의 15% 이상, 지상층 2개층 이상 계획 ※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삭 제)	용적률 계획 중 관련내용 삭제
	옛 성동구치소 부지 (특별계획구역②)	※ 주거의 용도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 계획	(삭 제)	용적률 계획 중 관련내용 삭제
광진구	화양1지구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의 250%이하 적용	(삭 제)	용적률 계획 중 관련내용 삭제

□ 건축물 용도 및 용적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불임 참조

○ 건축물 용도 및 용적률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별 결정(변경) 조서는 관계 도서와 같음

※ 본 결정내용은 금회 변경된 사항에 한해 유효하며, 그 외 사항은 기정 내용을 따름

3. 관계도면 : 불임 참조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74) 및 자치구 지구 단위계획(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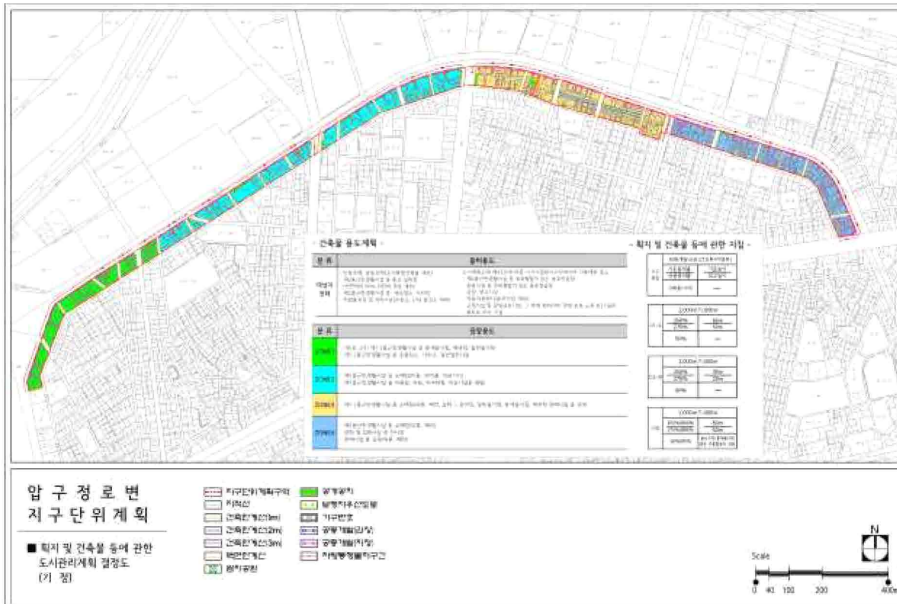
■ 건축물 용도 및 건축물의 비주거에 관한 계획 결정 (변경) 조서

□ 강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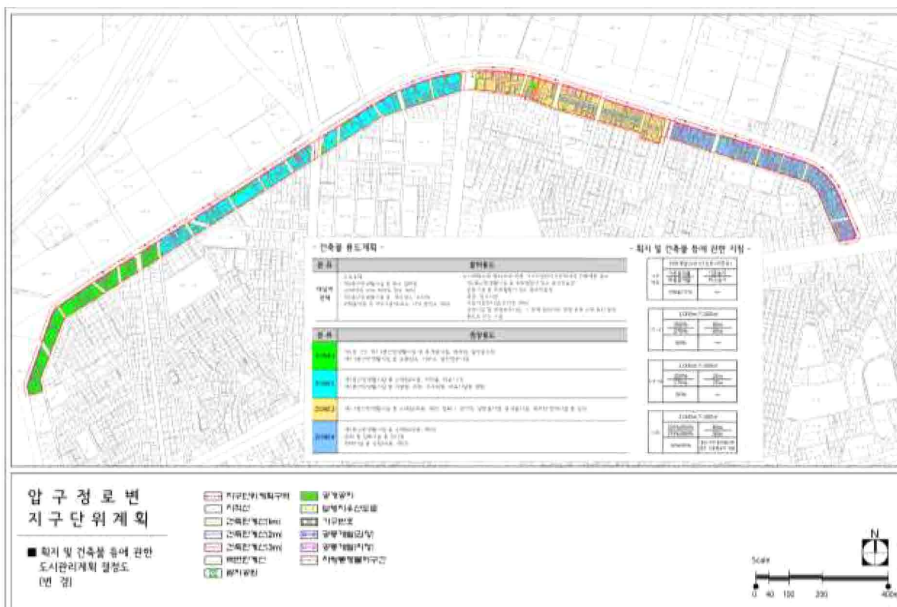
○ 압구정로변

구분	기정			변경				
③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 : 변경 1) 불허용도	구 분		불허용도	구 분		불허용도		
	변경	전체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종교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연면적의 50% 미만의 경우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LPG 충전소 제외) - 사가지정관리구 불허용도 (공방,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등)	신사동 639-2외 3필지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음.	변경	전체	- 단독주택 - 종교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연면적의 50% 미만의 경우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LPG 충전소 제외) - 사가지정관리구 불허용도 (공방,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등)	신사동 639-2외 3필지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음.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화구역은 법 제9조 및 동법 영 제22조 규정 적용.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화구역은 법 제9조 및 동법 영 제22조 규정 적용.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경



○ 논현지구

구분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다. 획지(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1) 불허용도 계획	간선도로변 (A)	- 일반미관지구 내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주상복합1)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관주택 및 안마시술소	—	간선도로변 (A)	- 일반미관지구 내 불허용도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관주택 및 안마시술소	—
	이면도로변 (B)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이면도로변 (B)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주1) 주상복합의 경우 주거용도의 용적률은 250% 이하로 제한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획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획지의 규정 적용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획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획지의 규정 적용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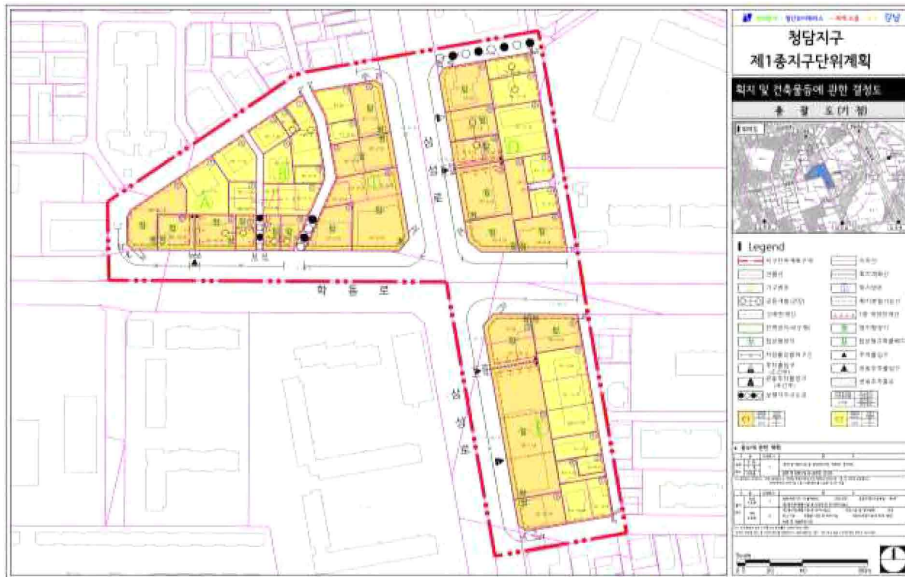


○ 청담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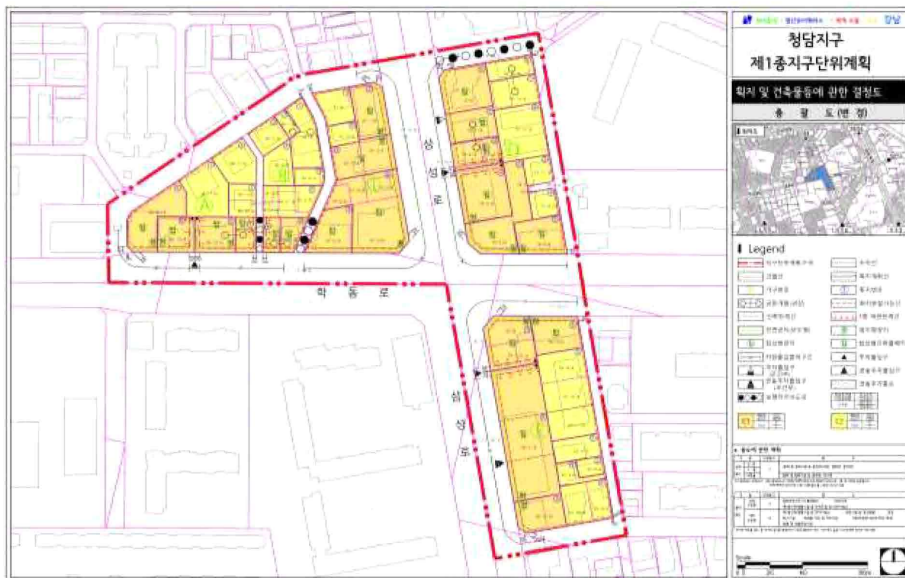
구분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다. 획지(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1) 불허용도 계획	간선도로변 (A)	- 일반미관지구 내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주상복합1)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관주택 및 안마시술소	—	간선도로변 (A)	- 일반미관지구 내 불허용도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관주택 및 안마시술소	—
	이면도로변 (B)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광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이면도로변 (B)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광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주1) 주상복합의 경우 주거용도의 용적률은 250% 이하로 제한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획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획지의 규정 적용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획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획지의 규정 적용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
경



○ 대치지구

구분	기정			변경		
다. 획지(가 구) 및 건축 물 등에 관 한 계획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1) 불허용도 계획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간선도로변 (A)	- 일반미관지구 내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주상복합1)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관주택 및 안마시술소 - 특별계획구역에는 주거 및 오피스텔 불허	—	간선도로변 (A)	- 일반미관지구 내 불허용도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관주택 및 안마시술소 - 특별계획구역에는 주거 및 오피스텔 불허	—
	이면도로변 (B)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이면도로변 (B)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주1) 주상복합의 경우 주거용도의 용적률은 250% 이하로 제한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획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획지의 규정 적용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획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획지의 규정 적용		



- 강북구
○ 삼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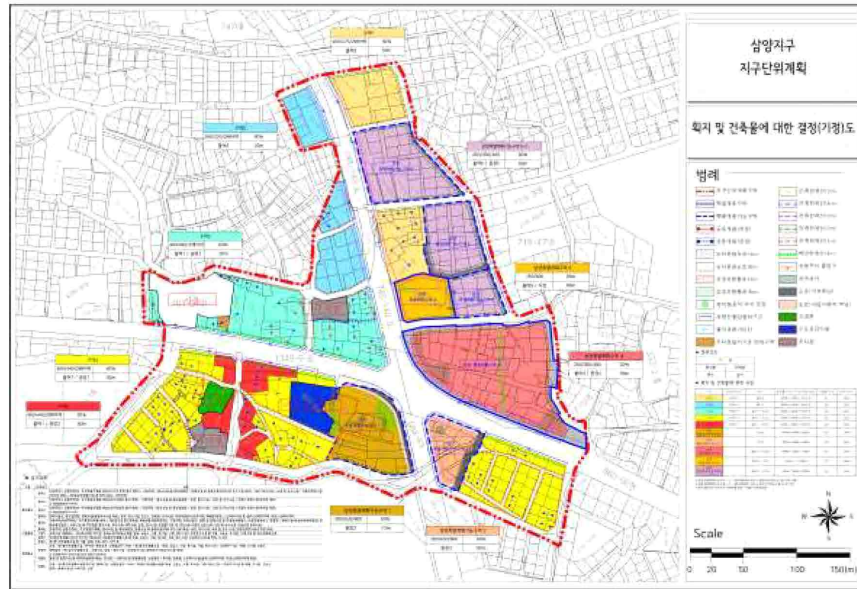
구분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 1) 불허용도 결정	불허 1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 주거복합건축물 제외)(간선부 접한 필지 해당)/ 다중주택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강폐시설 중 강폐식장(의료시설 부수시설 제외) -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준주거	불허 1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간선부 접한 필지 해당)/ 다중주택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강폐시설 중 강폐식장(의료시설 부수시설 제외) -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준주거
	불허 2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 공동주택(단, 주거복합건축물 제외)(간선부 접한 필지 해당)/다중주택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3종 일반주거 지역	불허 2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간선부 접한 필지 해당)/ 다중주택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3종 일반주거 지역
	불허 3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 공동주택(단, 주거복합건축물 제외)/다중주택/ 다중생활시설/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불허 3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간선부 접한 필지 해당)/ 다중주택/ 다중생활시설/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주1) 주거복합건축물 지상1층 및 지하층 주거용도 설치 불허, 비주거(오피스텔 제외) 비율 10%이상 설치 의무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2023.03)」에 따라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비주거용도를 용적률의 10% 이상 지상층에 설치하여야 함
주2) 간선부(솔샘로,삼양로) 건축물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벽면 길이 50% 이상(단, 전면도로에 접하는 벽면 폭 3m 이상 조성), 건축물 바닥면적 50%이상 필로타구조 금지
주3) 종교집회장 기존건축물의 증개축은 허용. 신규 건축하려는 경우 1층 전면부에 가로활성화 용도(건축물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를 1층 바닥면적의 30% 이상 도입한 경우에만 허용. 가로활성화 용도 외 별도의 용도 도입 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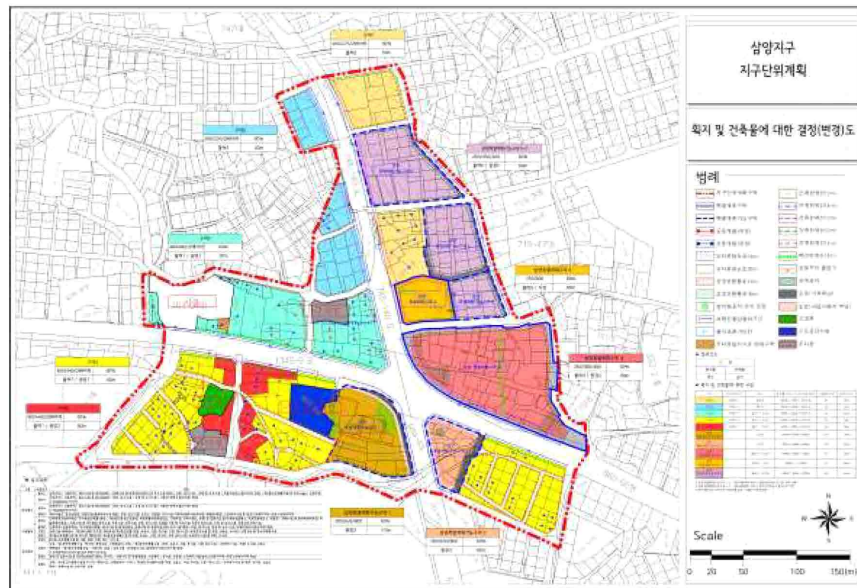
주1) 종교집회장 기존건축물의 증개축은 허용. 신규 건축하려는 경우 1층 전면부에 가로활성화 용도(건축물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를 1층 바닥면적의 30% 이상 도입한 경우에만 허용. 가로활성화 용도 외 별도의 용도 도입 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함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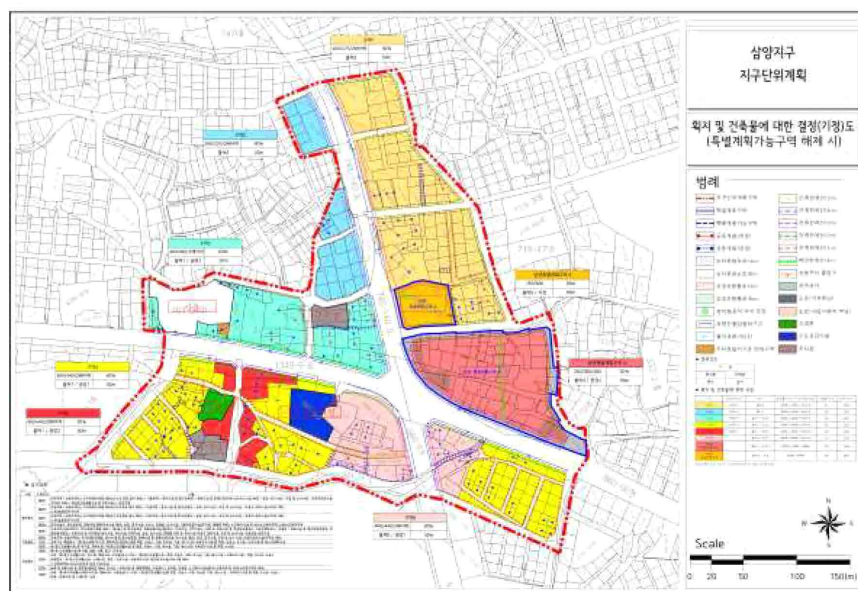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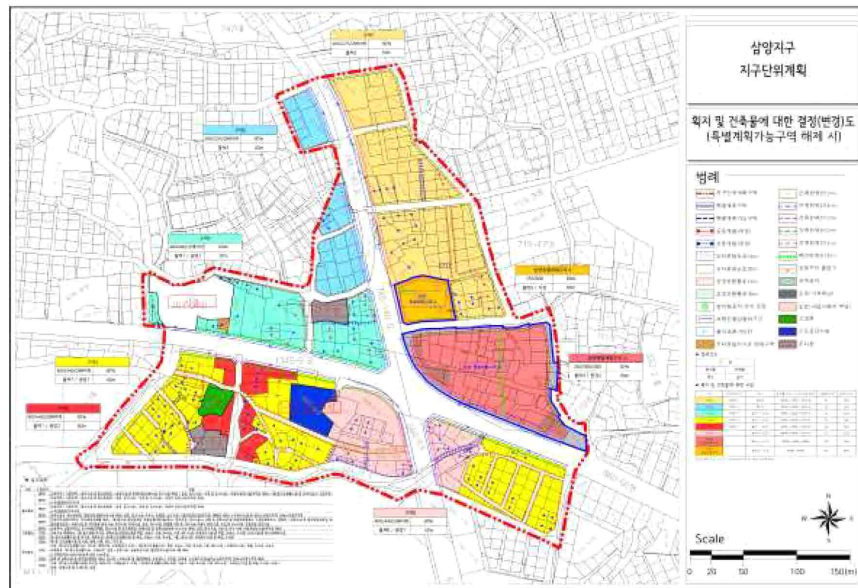
변
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 시)

기
정

변경



○ 4.19사거리

구분	기정	변경
	구분	구분
	불허용도	불허용도
	비고	비고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용도 ■ 불허용도 결정조서	A 간선부 (삼양로, 한천로, 4·19로) • 조양기도복합경관지구 해당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불허용도 적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 제1호 단독주택 - 제2호 공동주택(단, 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실소 및 단란주점 - 제3호 종교시설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8호 강폐시설	A 간선부 (삼양로, 한천로, 4·19로) • 조양기도복합경관지구 해당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불허용도 적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 제1호 단독주택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실소 및 단란주점 - 제3호 종교시설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8호 강폐시설
	B 이면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실소 및 단란주점 - 제3호 종교시설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8호 강폐시설	B 이면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실소 및 단란주점 - 제3호 종교시설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8호 강폐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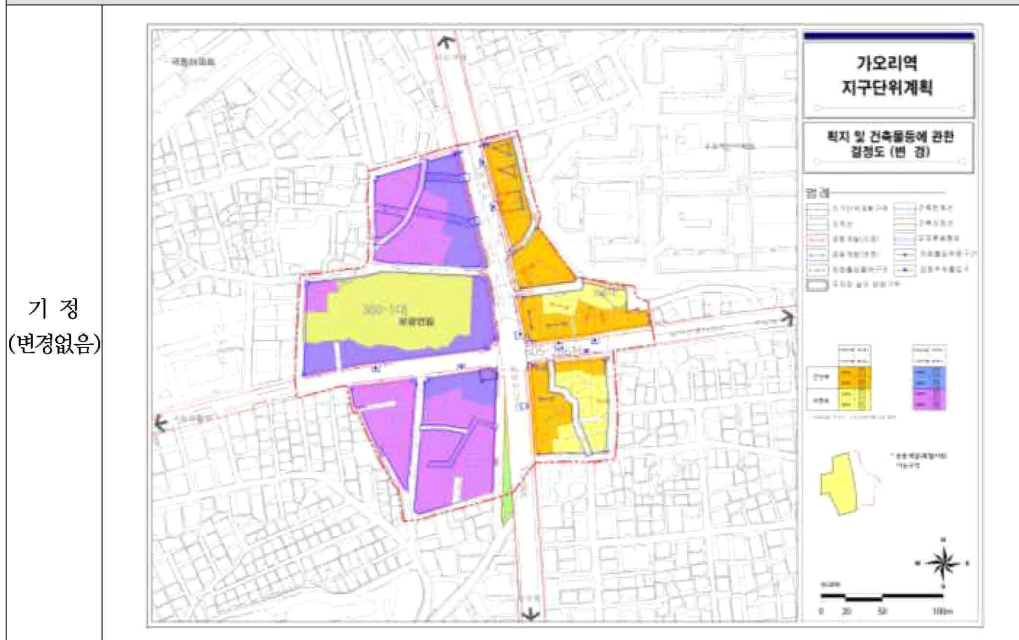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illegible]

○ 가오리역

구분	기정			변경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2.1 건축물의 용도 가) 불허용도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A	간선부 (삼양로 및 삼각산로변)	• 조양가도특화경관지구 해당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불허용도 적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 제1호 단독주택 - 제2호 공동주택 (단, 주거복합건축물1)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제6호 종교시설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및 매매장 제외)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8호 장례시설	-	A	간선부 (삼양로 및 삼각산로변)	• 조양가도특화경관지구 해당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불허용도 적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 제1호 단독주택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제6호 종교시설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및 매매장 제외)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8호 장례시설	-
	B	이면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제6호 종교시설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및 매매장 제외)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8호 장례시설	-	B	이면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제6호 종교시설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및 매매장 제외)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8호 장례시설	-
1)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 10% 이상 (지상부 설치)계획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화계역

구분	기정			변경		
	도면표시	불허용도	비고	도면표시	불허용도	비고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1) 불허용도	불허1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단, 주거복합건축물1) 제외) - 공동주택(단, 주거복합건축물1)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조건부 허용) 2) - 강폐시설 중 강폐식장(의료시설 부속시설 제외) - 공장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불허1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단, 주거복합건축물1)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조건부 허용) 2) - 강폐시설 중 강폐식장(의료시설 부속시설 제외) - 공장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불허2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조건부 허용) 2) - 강폐시설 중 강폐식장(의료시설 부속시설 제외) - 공장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불허2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조건부 허용) 2) - 강폐시설 중 강폐식장(의료시설 부속시설 제외) - 공장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주1) 지상1층 및 지하층 주거용도 설치 불허

주2) 종교집회장 기존건축물의 증개축은 허용. 신규 건축하려는 경우 1층 전면부에 가로활성화 용도(건축물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 전시장)를 1층 바닥면적의 30%이상 도입한 경우에만 허용

※ 불허용도1과 불허용도2 필지 공동개발시 불허용도1 적용

※ 관련법령(용도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불허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에 따름

※ 간선부(덕릉로, 삼양로) 건축물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벽면길이 50%이상(단, 벽면길이 폭 3m이상), 건축물 바닥면적 50% 이상 필로티구조금지

주1) 종교집회장 기존건축물의 증개축은 허용. 신규 건축하려는 경우 1층 전면부에 가로활성화 용도(건축물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 전시장)를 1층 바닥면적의 30%이상 도입한 경우에만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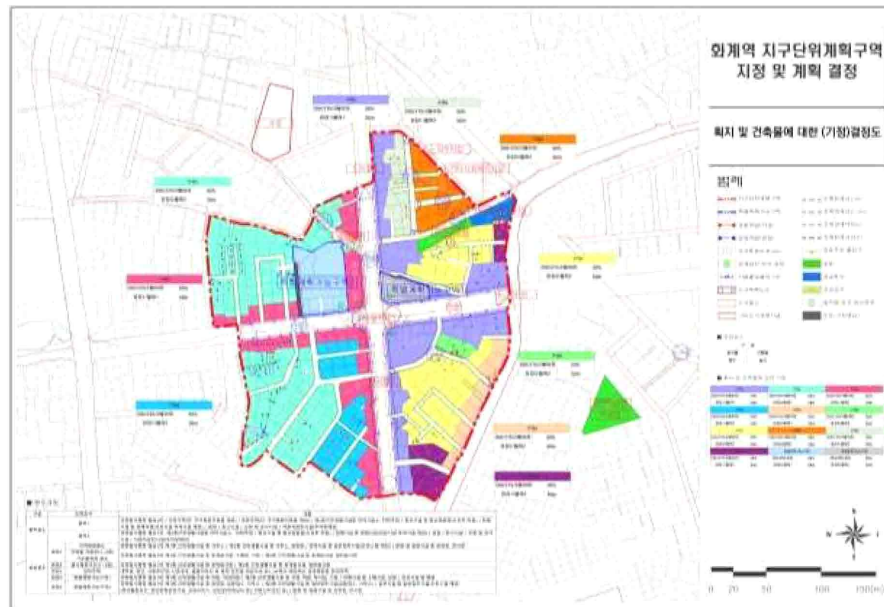
※ 불허용도1과 불허용도2 필지 공동개발시 불허용도1 적용

※ 관련법령(용도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불허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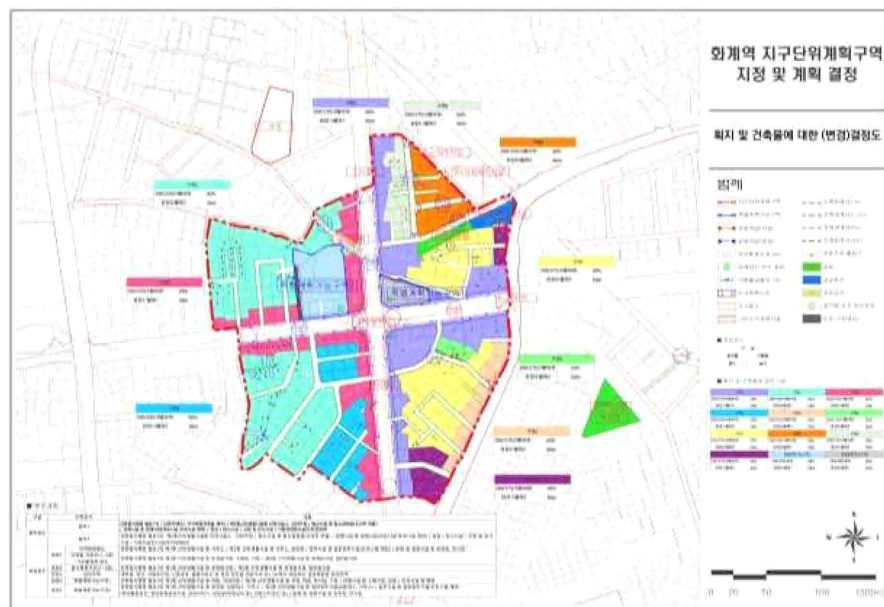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에 따름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결정도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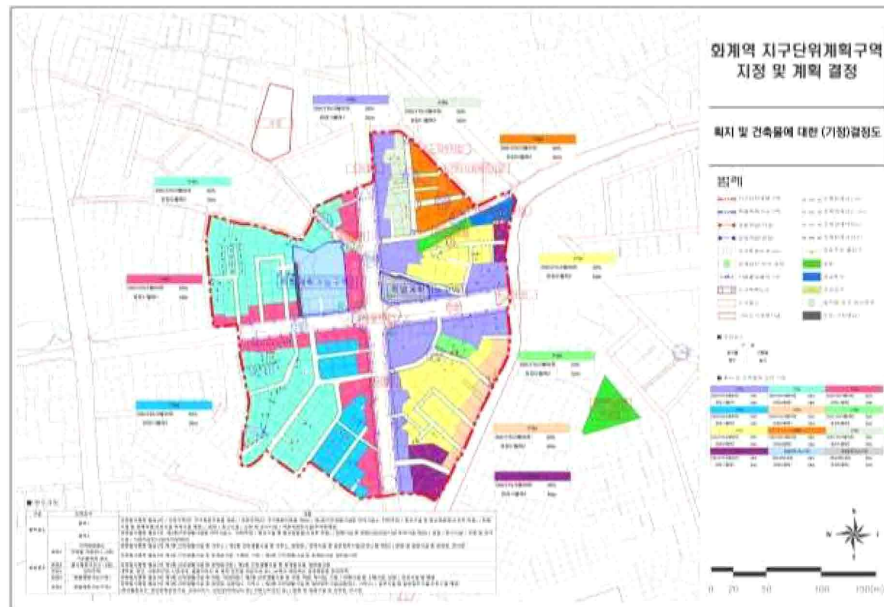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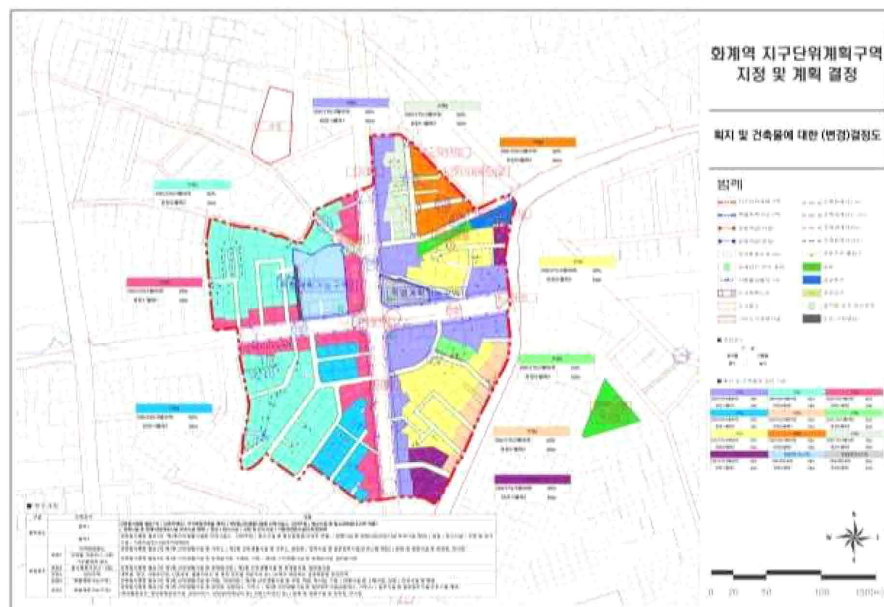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결정도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기 정



변경



☐ 강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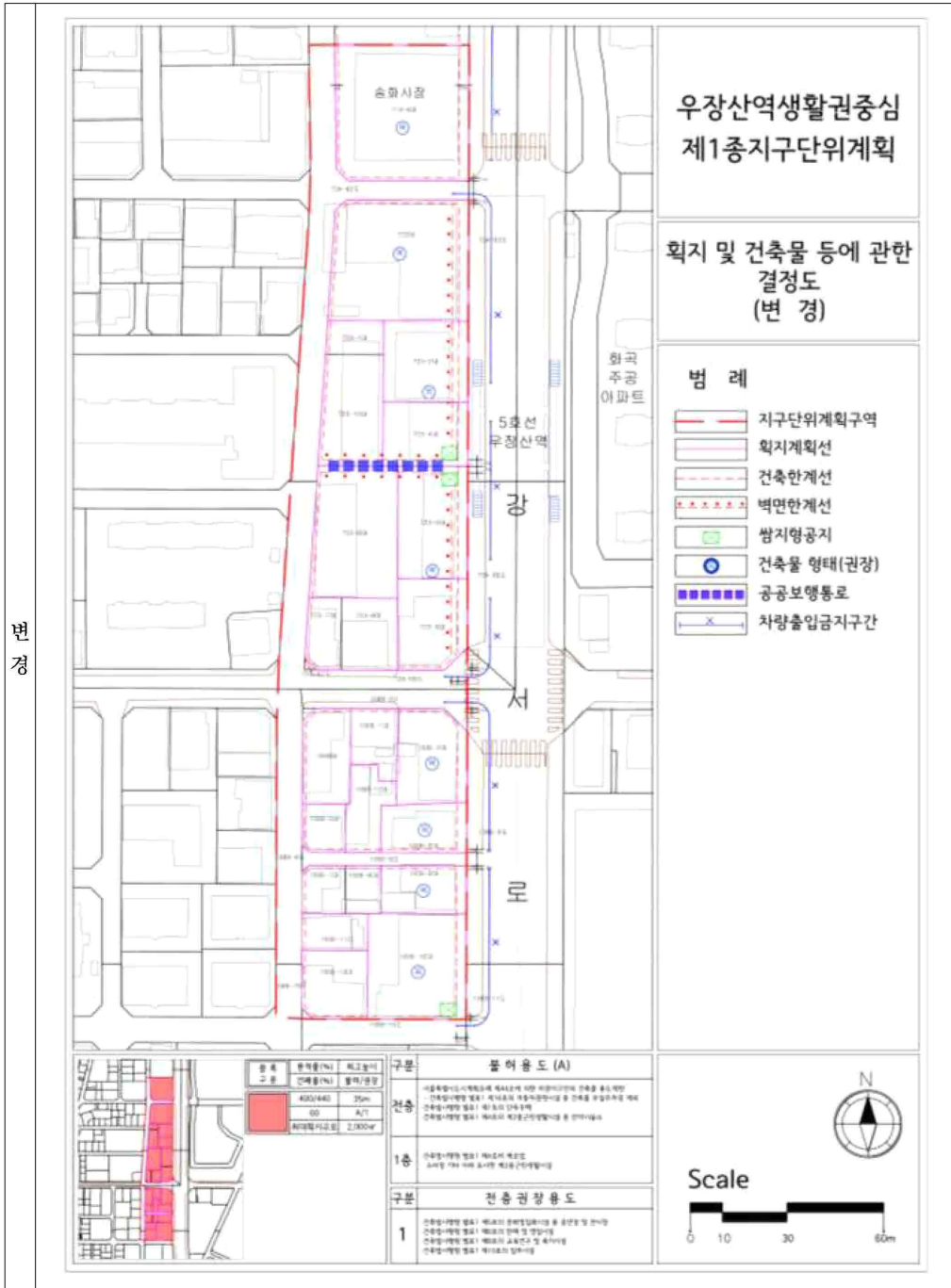
☐ 우장산역생활권중심

구분	기정			변경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나.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계획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전층 불허용도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4조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구역 전체	전층 불허용도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4조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구역 전체
	1층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제2종근린 생활시설		1층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 - 제2종근린 생활시설	
	관장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관장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 불허용도의 적용범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83조제4항에 의거하여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함 ※ 관장용도의 인정 : 관장용도의 면적구성은 건물전체 용도의 경우 당해용도 바닥면적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 (주차장 제외) 합이 20%이상인 경우 관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관장 용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불허용도의 적용범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83조제4항에 의거하여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함 ※ 관장용도의 인정 : 관장용도의 면적구성은 건물전체 용도의 경우 당해용도 바닥면적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 (주차장 제외) 합이 20%이상인 경우 관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관장 용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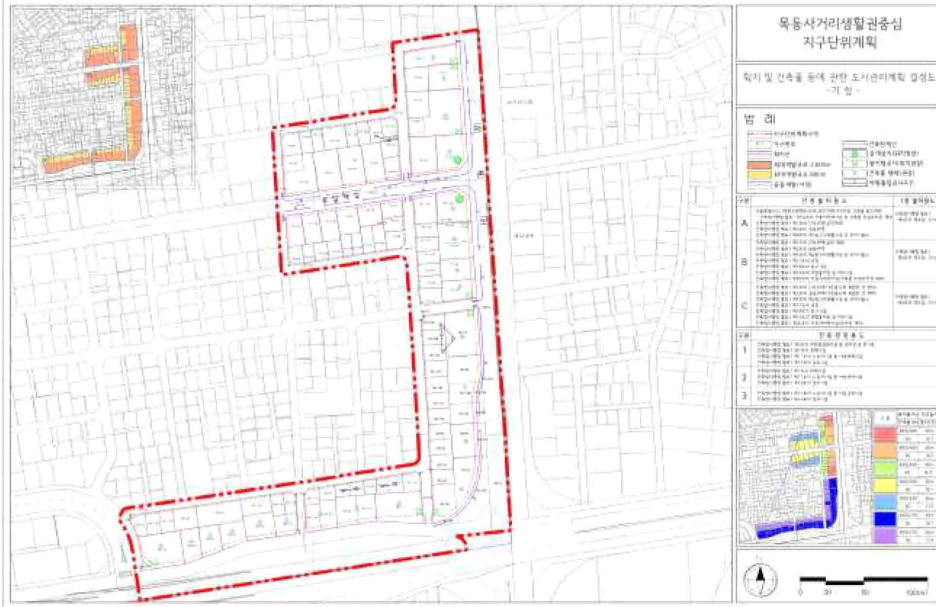


○ 목동사거리생활권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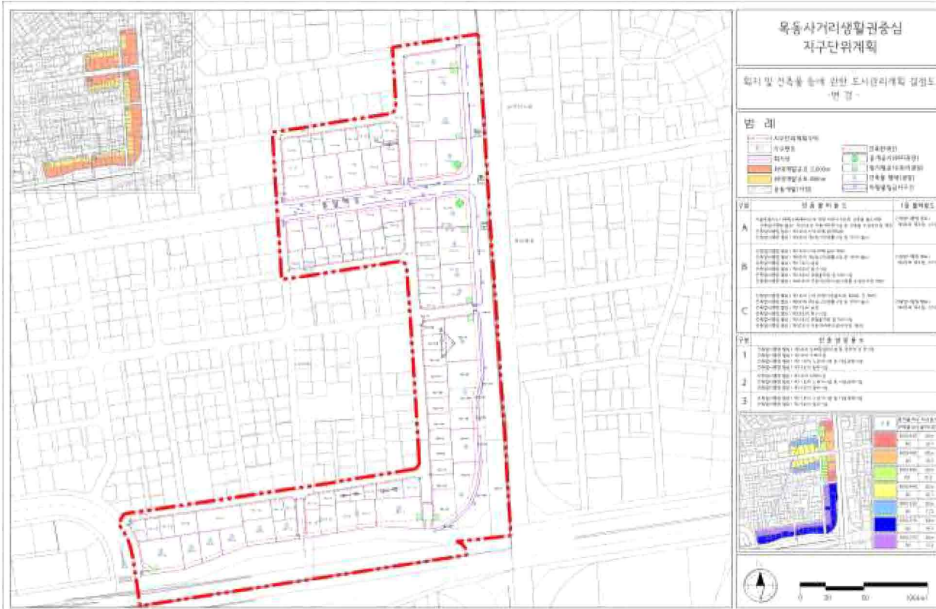
구분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나.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계획 가) 불허용도 계획	A (등촌로변, 경인국도변)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4조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1층 불허용도	A (등촌로변, 경인국도변)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4조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1층 불허용도
	B (곰달래길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건축물 부설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B (곰달래길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건축물 부설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C (이면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용도와 복합된 것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용도와 복합된 것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조업, 수리점	C (이면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용도와 복합된 것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조업, 수리점
※ 불허용도의 적용범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의거하여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함				※ 불허용도의 적용범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의거하여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함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
경



□ 관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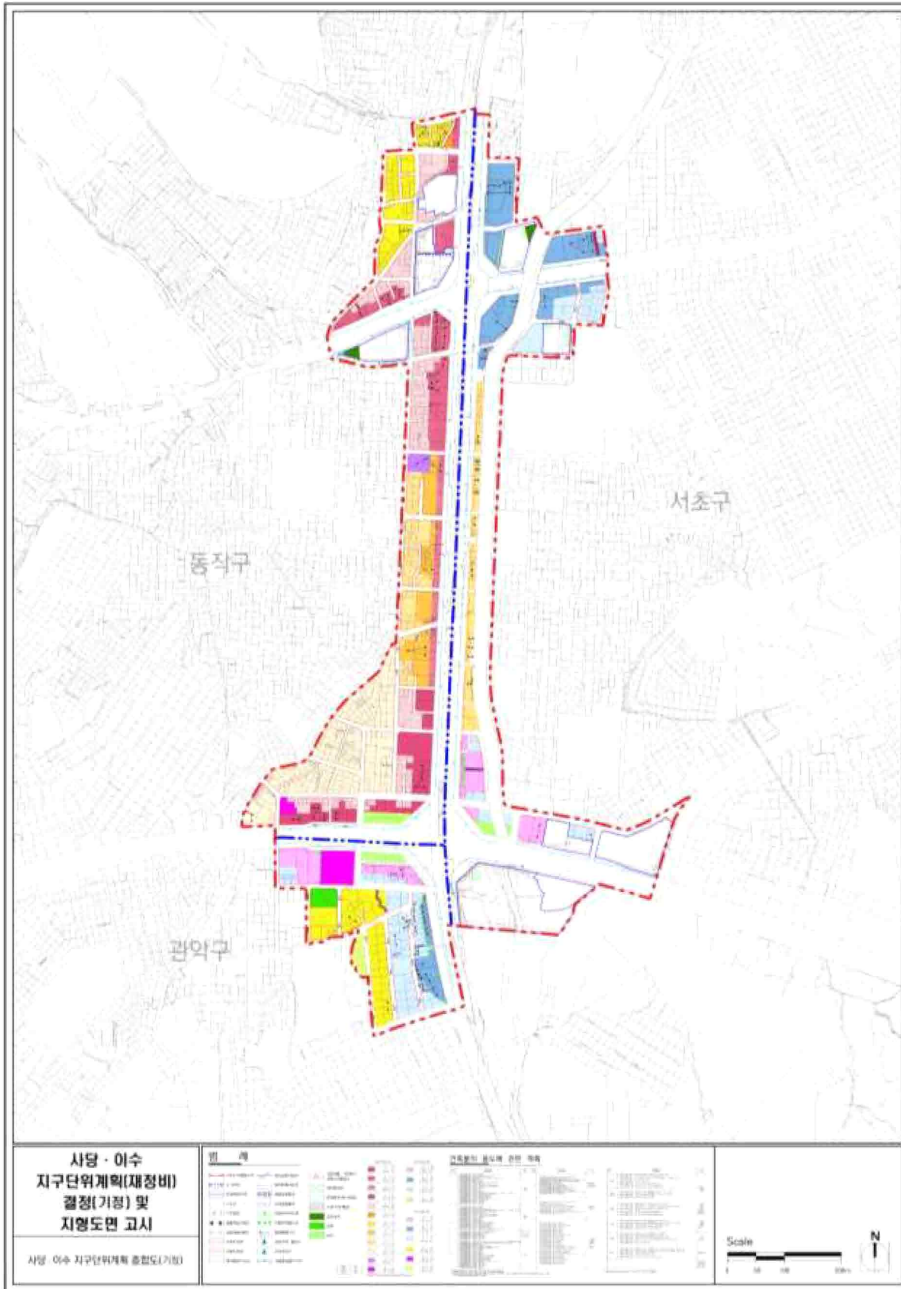
○ 사당·이수 (동작구, 서초구 중복)

구분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다. 건축물의 불허용도에 관한 계획 (변경)	A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컬타프런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컬타프런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탁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호의2의 국방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전면부 상업	A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컬타프런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컬타프런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탁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호의2의 국방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전면부 상업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및 옥외컬타프런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컬타프런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탁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호의2의 국방 군사시설	이면부 상업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및 옥외컬타프런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컬타프런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탁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호의2의 국방 군사시설	이면부 상업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동작구 사당동 1044-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동작구 사당동 1044-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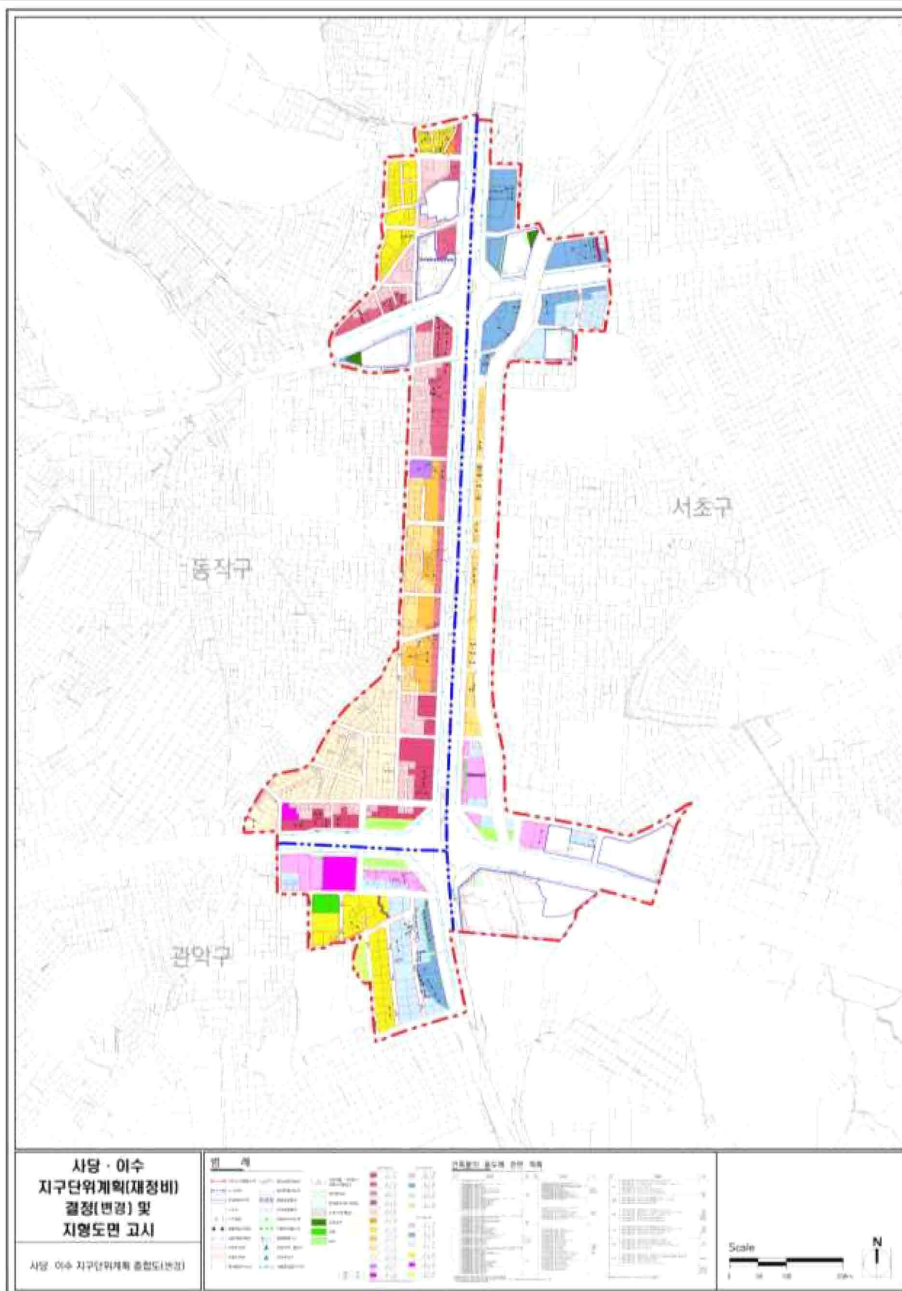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C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옥외철따림프린트업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따림프린트업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호의2의 국방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준주거	C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옥외철따림프린트업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따림프린트업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호의2의 국방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준주거
D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 단,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은 용도완화 적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따림프린트업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따림프린트업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자동차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호의2의 국방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일반주거(동작대도면, 사당역 이면부)	D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 단,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은 용도완화 적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따림프린트업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따림프린트업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자동차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호의2의 국방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일반주거(동작대도면, 사당역 이면부)
E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호의2의 국방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일반주거(관악구)	E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호의2의 국방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일반주거(관악구)
F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호의2의 국방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근린상업(사당동 1008-1,1008-15에 한함)	F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호의2의 국방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근린상업(사당동 1008-1,1008-15에 한함)

지구단위계획 종합도

기
정



변경



○ 낙성대

구분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 용도계획 결정다. 건축물 불허용도 결정 조서	준주거 지역	a	• 당해 용도지역 내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제조업소 (1층, 지하층에 한함)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단란주점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준주거 지역	a	• 당해 용도지역 내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제조업소 (1층, 지하층에 한함)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단란주점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b	• 당해 용도지역 내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제조업소 (1층, 지하층에 한함), 옥외열탕 골프연습장 • 운동시설 중 옥외열탕 골프연습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의료시설 병원 중 정신병원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b	• 당해 용도지역 내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제조업소 (1층, 지하층에 한함), 옥외열탕 골프연습장 • 운동시설 중 옥외열탕 골프연습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의료시설 병원 중 정신병원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c	• 당해 용도지역 내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제조업소 (1층, 지하층에 한함), 옥외열탕 골프연습장 • 운동시설 중 옥외열탕 골프연습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의료시설 병원 중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성인전용시설(게입제공업소, 사행성게입장, 전화방 등)		—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c	• 당해 용도지역 내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제조업소(1층, 지하층에 한함), 옥외열탕 골프연습장 • 운동시설 중 옥외열탕 골프연습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의료시설 병원 중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성인전용시설(게입제공업소, 사행성게입장, 전화방 등)		—
		d	B1층, 1층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	—	낙성대 로변	d	B1층, 1층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	—
			B1층 ~ 4층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업무시설(R&D 관련) 이외의 용도				B1층 ~ 4층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업무시설(R&D 관련)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조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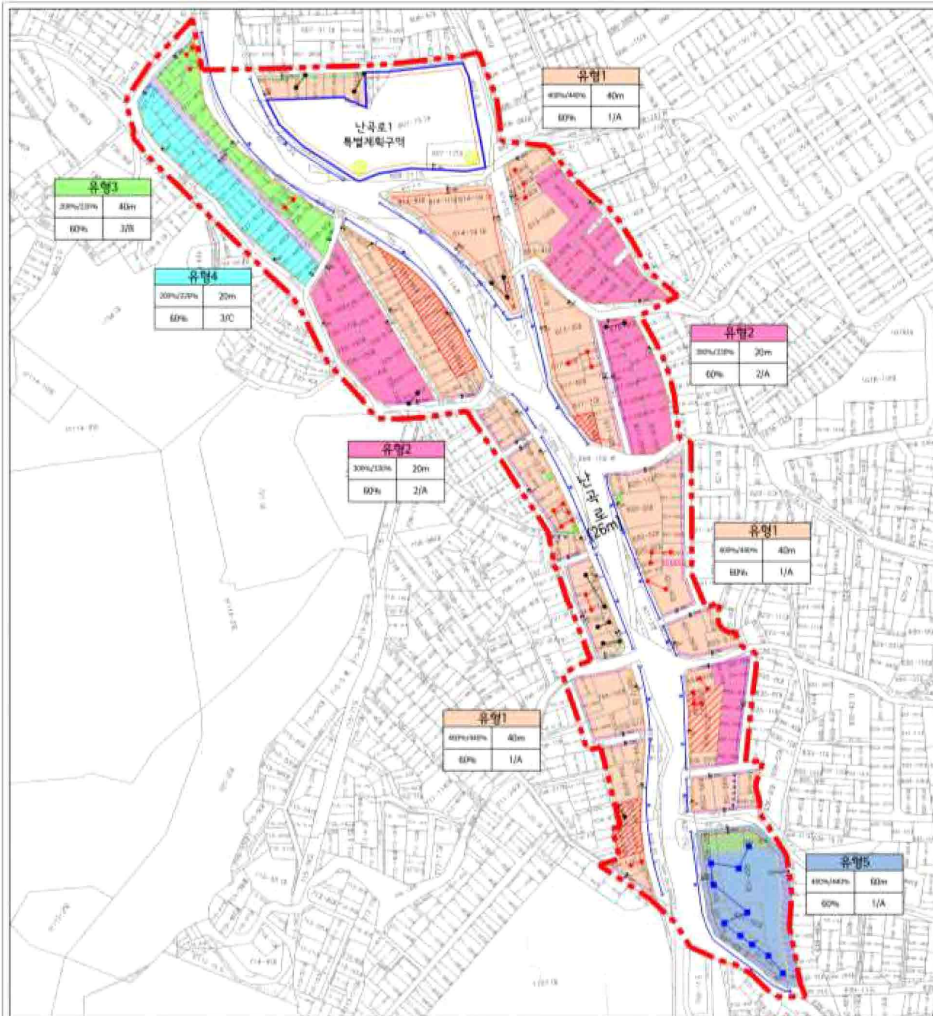


○ 난곡생활권중심

구분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가. 건축물 용도계획 1) 불허용도	A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공동주택 (단, 주거복합건물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유사시설 포함), 제조업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성인 전용시설(게임제공업소, 사행성게임장, 전화방 등)	준주거 지역	A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유사시설 포함), 제조업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성인 전용시설(게임제공업소, 사행성게임장, 전화방 등)	준주거 지역
	B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창고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유사시설 포함), 제조업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성인 전용시설(게임제공업소, 사행성게임장, 전화방 등)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난곡로변)	B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창고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유사시설 포함), 제조업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성인 전용시설(게임제공업소, 사행성게임장, 전화방 등)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난곡로변)
	C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유사시설 포함),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성인전용시설 (게임제공업소, 사행성게임장, 전화방 등)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면부)	C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유사시설 포함),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성인전용시설 (게임제공업소, 사행성게임장, 전화방 등)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면부)
	주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상 당해 용도지역 내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 적용 주2) 전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지하층 및 반지하의 주거용도 불허			주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상 당해 용도지역 내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 적용 주2) 전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지하층 및 반지하의 주거용도 불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기정)

■ 별 제

-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 지척선
- 공동개발(기정)
- 공동개발(권정)
- 공동개발(특별지정)
- 일시종결가능선
- 건축한계선(1.5m)
- 건축한계선(2.5m)
- 건축한계선(3m)
- 건축한계선(5m)
- 건축한계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30m)
- 도로 중심선
- 배관한계선
- 합치합종지(위치지정)
- 공해금지(위치지정)
- 공공보행통로(위치지정)
- 보치권용도로
- 지하철입출역구간
- 주유충전구
- 공동주차충전구
- 주차장일지각연계화구역

■ 관할용도

구분	전 용
1	업무시설(도소청 제외) 노후차기밀 용 비율제한(일 노후차기밀 2주거용도 제외) 제한용도(연면적 500㎡ 이하 용도제한, 지역
2	근린생활시설 용도제한
3	노후차기밀 용 비율제한(일)

■ 계획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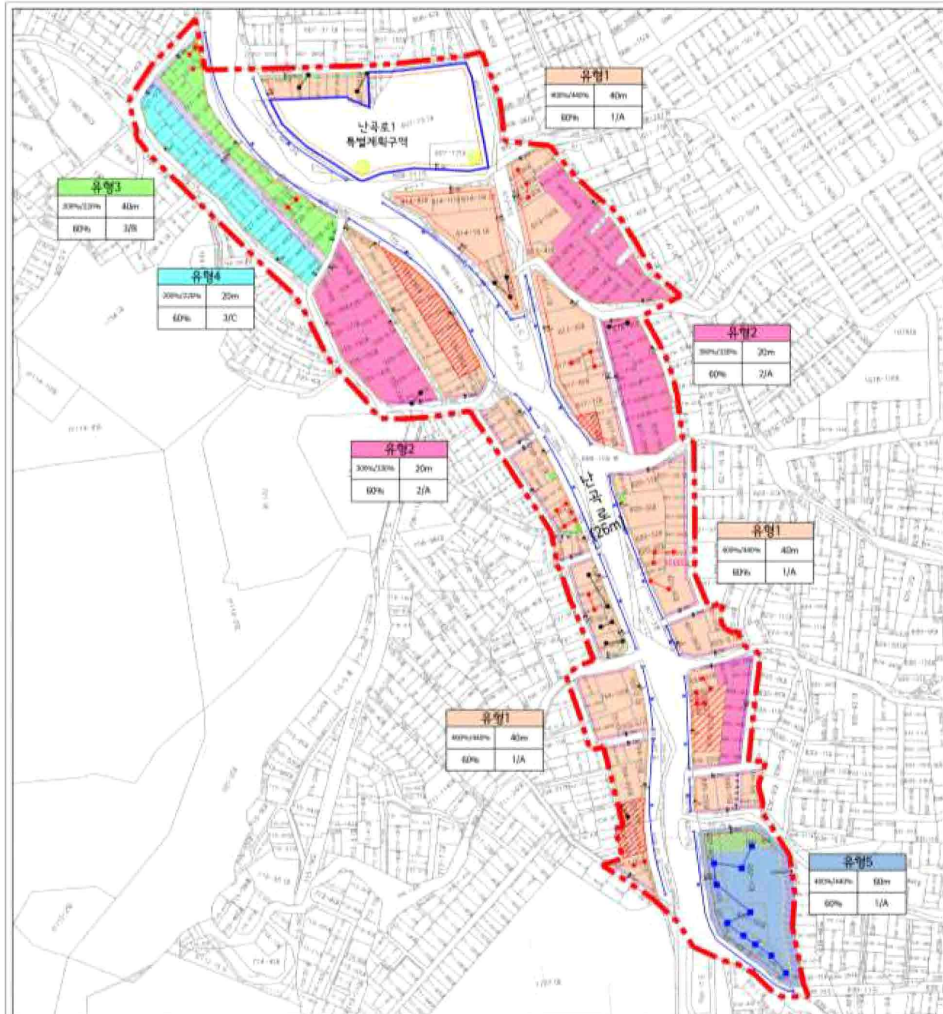
유형	용도	용도	용도	용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400%~450%	400%	400%	400%	400%
40m	40m	40m	40m	40m
60%	60%	60%	60%	60%
1/A	1/A	1/A	1/A	1/A

■ 용어용도

구분	용도
A	업무시설(도소청 제외) 노후차기밀 용 비율제한(일 노후차기밀 2주거용도 제외) 제한용도(연면적 500㎡ 이하 용도제한, 지역
B	업무시설(도소청 제외) 노후차기밀 용 비율제한(일 노후차기밀 2주거용도 제외) 제한용도(연면적 500㎡ 이하 용도제한, 지역
C	업무시설(도소청 제외) 노후차기밀 용 비율제한(일 노후차기밀 2주거용도 제외) 제한용도(연면적 500㎡ 이하 용도제한, 지역



변경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변경)

1. 형 제

-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 지형선
- 공동개발(거점)
- 공동개발(관정)
- 공동개발(특별지정)
- 일대일대지주권
- 건축제한선(1.5m)
- 건축제한선(2m)
- 건축제한선(3m)
- 건축제한선(5m)
- 건축제한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3m)
- 도로중심선
- 역면한계선
- 합치한계선(위차지정)
- 공채공시(위차지정)
- 공공보행통로(위차지정)
- 문화체육통로
- 체육활동공간
- 주차충당구
- 공동주차충당구
- 주차충당지(순환화구역)

2. 관할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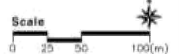
- 구분
- 관할
- 1. 일대일대지주권(도로소유권 제외)
- 2. 공동개발(거점) 공동소유권
- 3. 공동개발(관정) 공동소유권

3. 계획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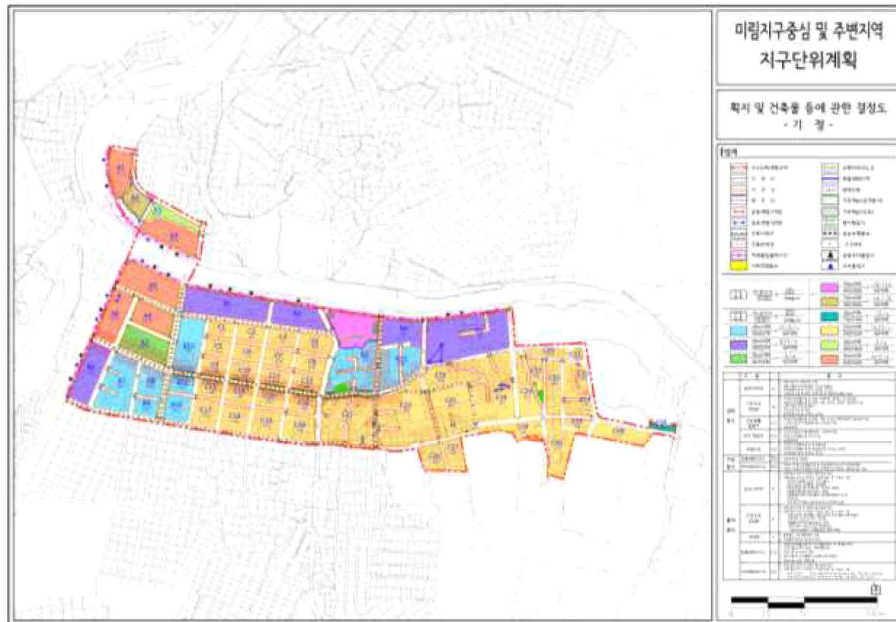
-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 유형5

4.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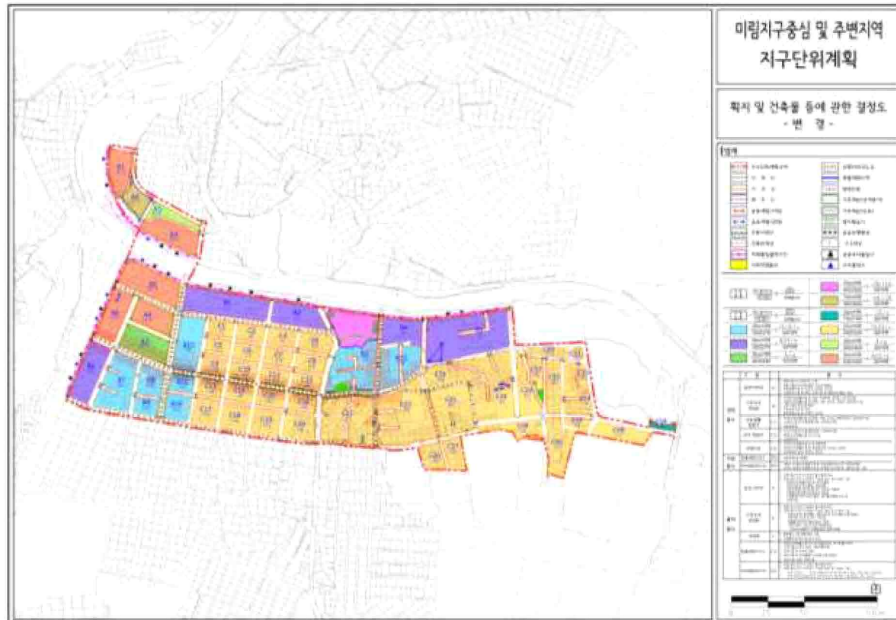
- 구분
- 관할
- A. 1세대 이상 주택 또는 1세대 이상 주택과 1세대 이상 주택이 혼합된 주택
- B. 2세대 이상 주택 또는 2세대 이상 주택과 2세대 이상 주택이 혼합된 주택
- C. 3세대 이상 주택 또는 3세대 이상 주택과 3세대 이상 주택이 혼합된 주택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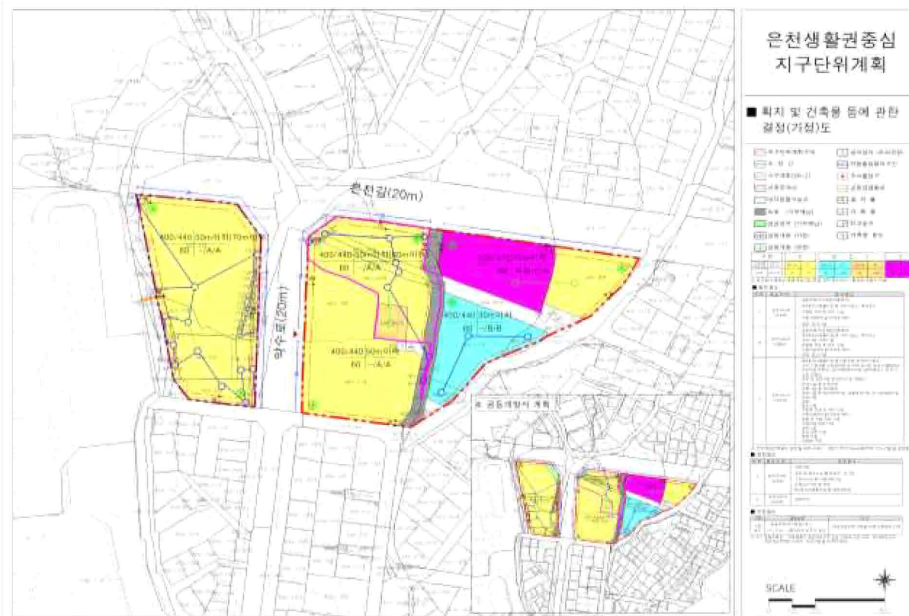


○ 은천생활권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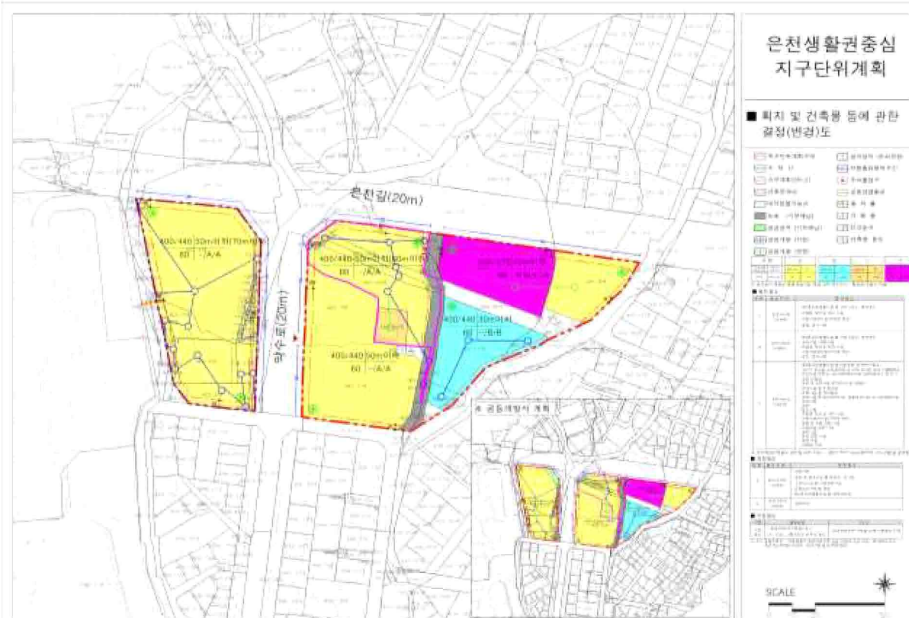
구분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 건축물 불 허용도 결정 조서	간선면	A -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제조업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창고시설		간선면	A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제조업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창고시설	
	이면부	B -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제조업소 - 숙박시설,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창고시설		이면부	B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제조업소 - 숙박시설,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창고시설	
주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적용 주2) 주거복합건축물이 임지할 경우 지상 1~3층은 주거 기능(공동주택,오피스텔)을 불허함				주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적용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
경



○ 대림지역중심

구분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 건축물 불허용도 결정조서	일반 상업지역	A -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제2종요양소 - 위험물저장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창고시설		일반 상업지역	A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제2종요양소 - 위험물저장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창고시설	
	주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적용 주2) 주거복합건축물이 입지할 경우 지상 1~3층은 주거 기능(공동주택, 오피스텔)을 불허함			주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적용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
경



- 광진구
○ 군자역지구

구분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C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2호의 공동주택(주상복합 제외)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옥외열탕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회와장, 전시장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열탕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제외)
- 제16호의 위탁시설
-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 제28호의 장례식장

D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옥외열탕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회와장, 전시장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열탕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 제28호의 장례식장

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회와장, 전시장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열탕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구분

불허용도

C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옥외열탕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회와장, 전시장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열탕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제외)
- 제16호의 위탁시설
-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 제28호의 장례식장

D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옥외열탕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회와장, 전시장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열탕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 제28호의 장례식장

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회와장, 전시장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열탕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 일반상업지역내 2002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후 신축된 지역에도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적용

※ 자율적공동개발로 간선부와 이면부가 공동개발시 간선부의 용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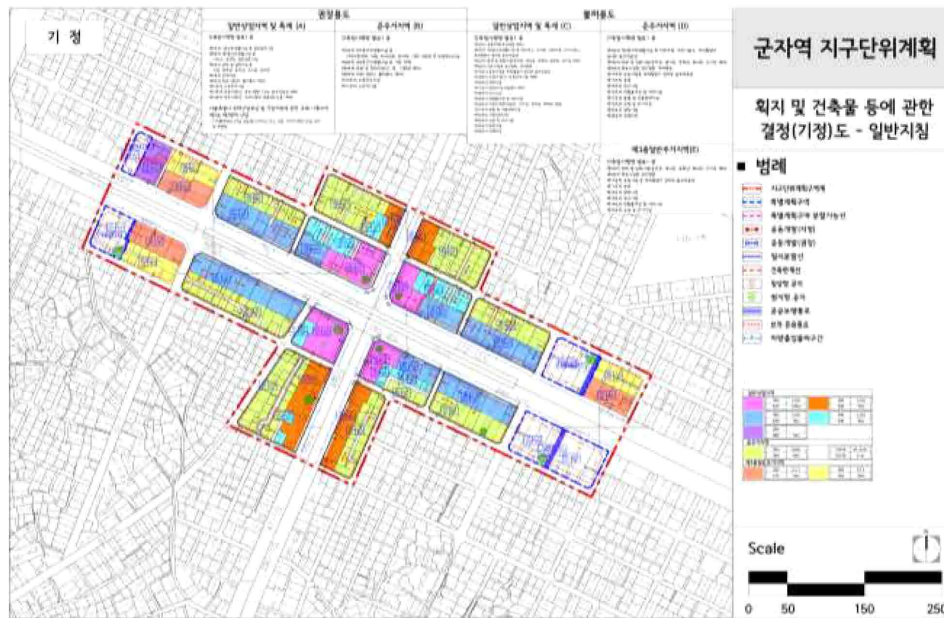
※ 주거, 주거외 설치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4-2(3)를 따름

※ 일반상업지역내 2002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후 신축된 지역에도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적용

※ 자율적공동개발로 간선부와 이면부가 공동개발시 간선부의 용도 적용

※ 주거, 주거외 설치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4-2(3)를 따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일반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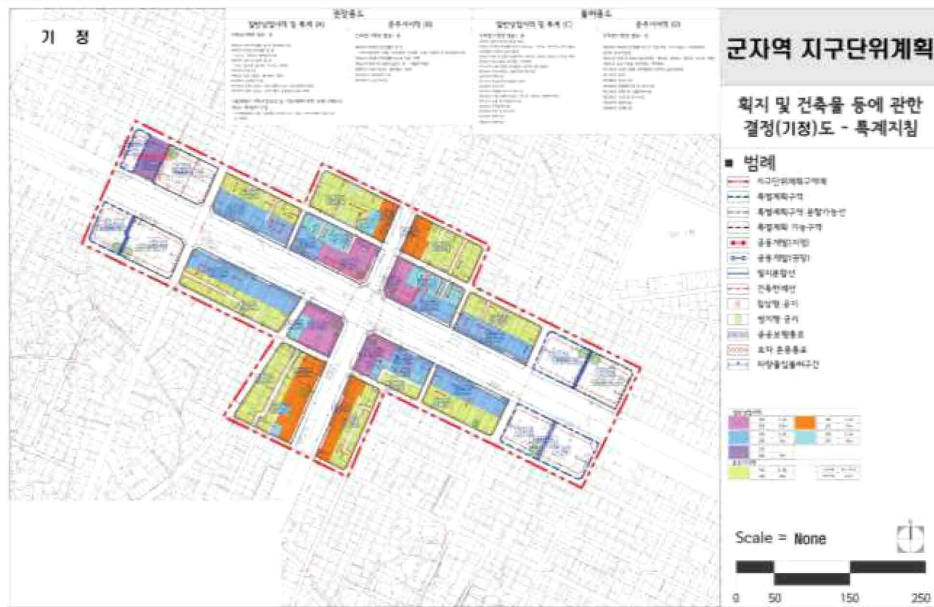
기
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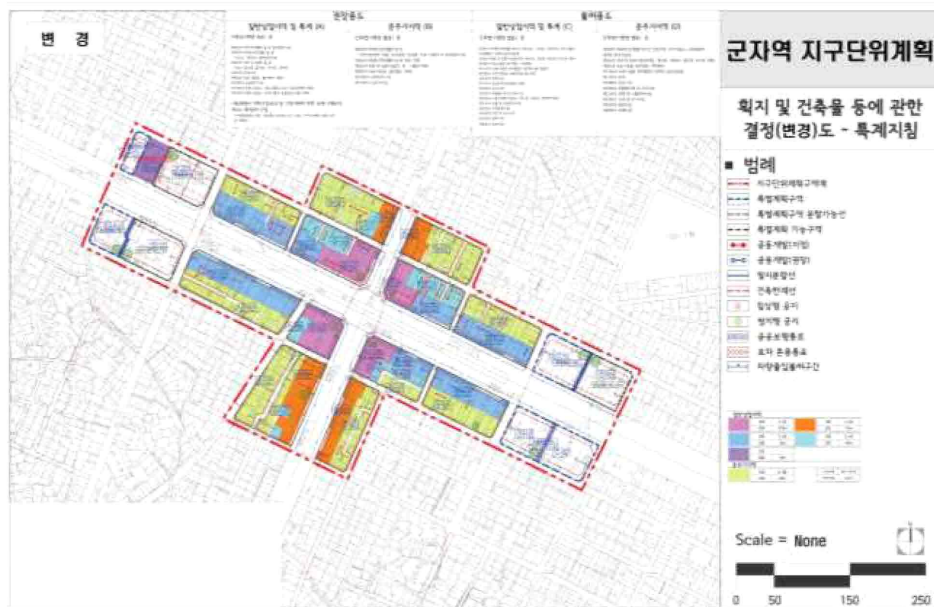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특계지침)

기정



변경



○ 광나루역지구

구분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나.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계획	A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설치된 풋프런츱장	제2종일반주거지역	A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설치된 풋프런츱장	제2종일반주거지역
	B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설치된 풋프런츱장	제3종일반주거지역	B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설치된 풋프런츱장	제3종일반주거지역
	C	• 단독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제1종일반주거지역	C	• 단독주택	제1종일반주거지역
※ 주) 상가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분류임				※ 주) 상가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분류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특별계획가능구역 일반지침)

기
정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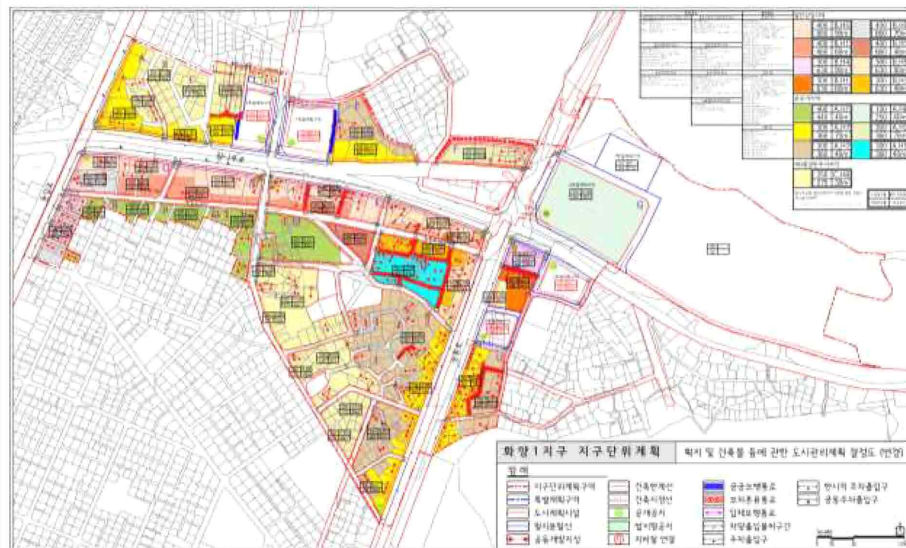


○ 화양1지구

구분	기정	변경						
3. 가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나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4) 용적률 계획 결정(변경) 조서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내 주거 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내 용</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td><td>•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td><td>혼재된 경우 가중평균</td></tr> </tbody> </table> ※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말함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혼재된 경우 가중평균	(삭 제)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혼재된 경우 가중평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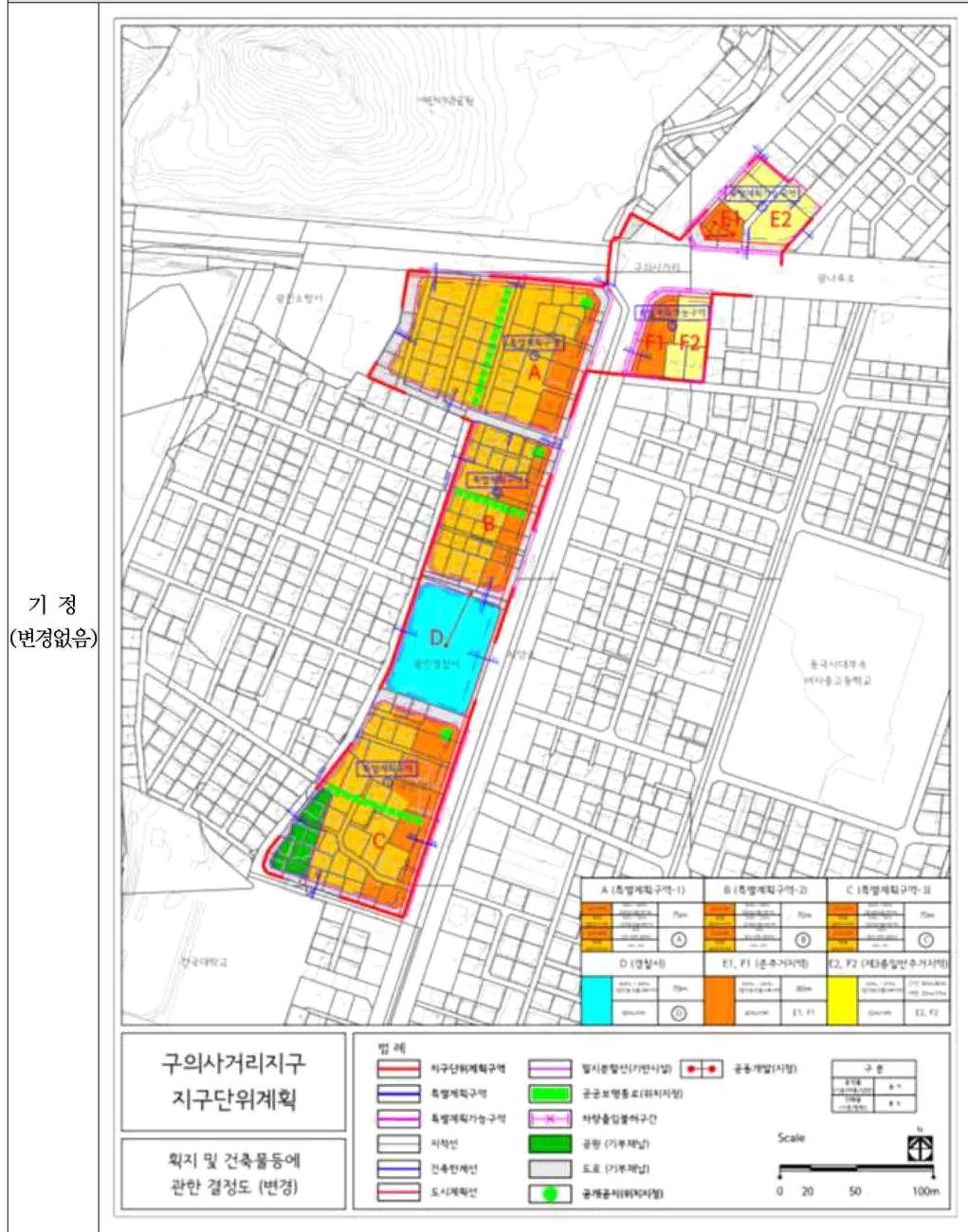
기 정
(변경없음)



○ 구의사거리

구분	기정				변경			
	적용지역 (도면표시)	권장용도	불허용도	비 고	적용지역 (도면표시)	권장용도	불허용도	비 고
4. 특별계획 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라. 특별계획 가능구역 계획지침 2) 특별계획 가능구역 일반지침 나)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E1,F1	준주거지역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점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동식물원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점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보호관찰소, 갇살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갇살보육교육·보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E1,F1	준주거지역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점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동식물원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점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보호관찰소, 갇살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갇살보육교육·보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E2,F2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제조업소, 게임제공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E2,F2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제조업소, 게임제공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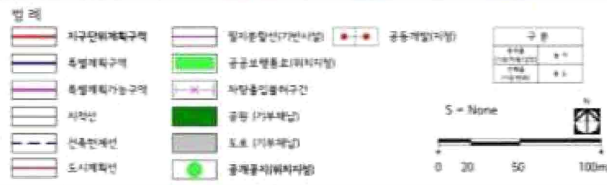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특별계획가능구역 일반지침)

기 정
(변경없음)



구의사거리지구
지구단위계획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특별계획가능구역 일반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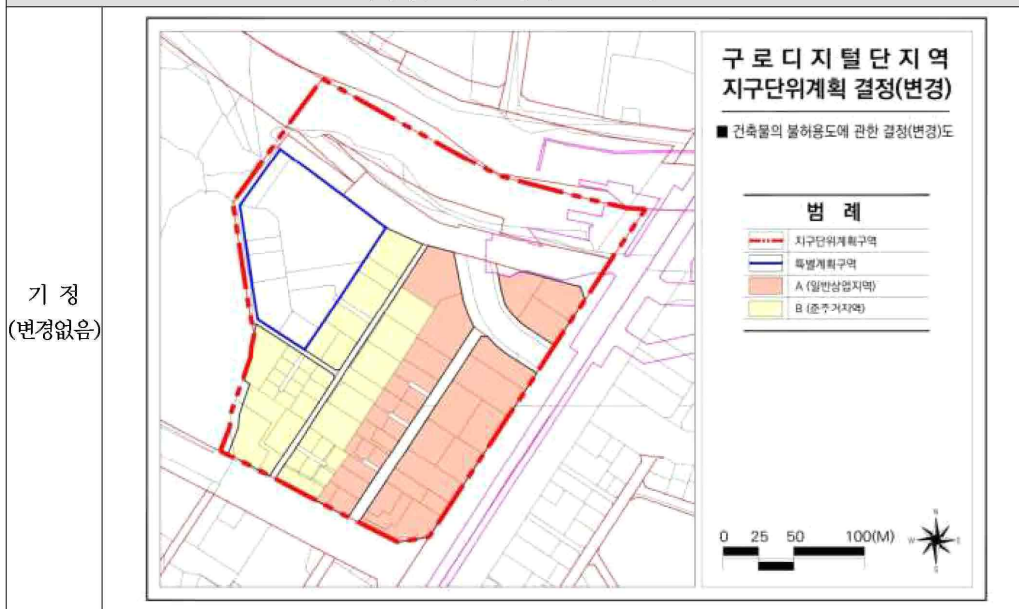


□ 구로구

○ 구로디지털단지

구분	기정			변경		
②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가. 불허용도 ■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전체 (공동사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로류 판매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전체 (공동사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로류 판매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A 일반 상업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A 일반 상업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B 준주거 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욕외에 철합이 있는 골프연습장		B 준주거 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욕외에 철합이 있는 골프연습장	
주) 특별계획구역은 별도 계획지침 준용				주) 특별계획구역은 별도 계획지침 준용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금천구
○ 금천구심

구분	기정	변경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	<table> <tr> <th>구분</th><th>불허용도</th><th>비고</th></tr> <tr> <td>A</td><td>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td><td> - 일반상업지역 - 시흥대로, 금하로, 시흥대로73길, 시흥대로63길변 * 준주거지역 </td></tr> <tr> <td>B</td><td>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td><td> - 무지개, 건영, 베르빌, 목련아파트 * 제3종일반주거지역 </td></tr> <tr> <td>C</td><td>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td><td> - 기타 지역 *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td></tr> <tr> <td>D</td><td> - 단독주택 - 공동주택 (군부대부지 중 상업·업무 복합용지(D1(가구단위), (D2-2))의 경우 지상층 연면적 중 주거면적 비율이 60%미만으로 계획시 공동주택 허용) * 군부대부지의 주거면적 비율 중 완화되는 비율(50%~60%△10%)은 실무부서협의를 통하여 근로자, 젊은이 등을 위한 기숙사,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 등으로 계획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td><td> - 군부대부지 - 시흥대로변 - 금천구청역부근 * 준주거지역 </td></tr> <tr> <td>E</td><td> - 단독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td><td> - 웰슈아파트 부지 * 준공업지역 </td></tr> <tr> <td>F</td><td>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용도 (부영부지, 기아자동차부지의 경우 공동주택부지 보다 산업부지 개발이 우선하거나 병행되어야함) </td><td> <공동주택용지> * 군부대부지(*제3종) * 부영부지, 기아자동차부지(*준공업지역) </td></tr> <tr> <td>G</td><td>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td><td> - 가구번호 : D8 * 준공업지역 </td></tr> <tr> <td>H</td><td>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정비공장 제외) </td><td> - 가구번호 : E1, E2 * 준공업지역 </td></tr> <tr> <td>I</td><td>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td><td> - 시흥동 1031, 홈플러스부지 특별계획구역 * 준공업지역 </td></tr> <tr> <td>J</td><td> - 산업시설(도시계획조례 별표2. 3호)을 제외한 용도 *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 한정하여 산업지원시설 설치가능 함 </td><td> - 부영부지, 기아자동차부지 (산업,지식산업센터) </td></tr> </table>	구분	불허용도	비고	A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일반상업지역 - 시흥대로, 금하로, 시흥대로73길, 시흥대로63길변 * 준주거지역	B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무지개, 건영, 베르빌, 목련아파트 * 제3종일반주거지역	C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기타 지역 *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D	- 단독주택 - 공동주택 (군부대부지 중 상업·업무 복합용지(D1(가구단위), (D2-2))의 경우 지상층 연면적 중 주거면적 비율이 60%미만으로 계획시 공동주택 허용) * 군부대부지의 주거면적 비율 중 완화되는 비율(50%~60%△10%)은 실무부서협의를 통하여 근로자, 젊은이 등을 위한 기숙사,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 등으로 계획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군부대부지 - 시흥대로변 - 금천구청역부근 * 준주거지역	E	- 단독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웰슈아파트 부지 * 준공업지역	F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용도 (부영부지, 기아자동차부지의 경우 공동주택부지 보다 산업부지 개발이 우선하거나 병행되어야함)	<공동주택용지> * 군부대부지(*제3종) * 부영부지, 기아자동차부지(*준공업지역)	G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가구번호 : D8 * 준공업지역	H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정비공장 제외)	- 가구번호 : E1, E2 * 준공업지역	I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시흥동 1031, 홈플러스부지 특별계획구역 * 준공업지역	J	- 산업시설(도시계획조례 별표2. 3호)을 제외한 용도 *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 한정하여 산업지원시설 설치가능 함	부영부지, 기아자동차부지 (산업,지식산업센터)	<table> <tr> <th>구분</th><th>불허용도</th><th>비고</th></tr> <tr> <td>A</td><td> - 단독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td><td> - 일반상업지역 - 시흥대로, 금하로, 시흥대로73길, 시흥대로63길변 * 준주거지역 </td></tr> <tr> <td>B</td><td>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td><td> - 무지개, 건영, 베르빌, 목련아파트 * 제3종일반주거지역 </td></tr> <tr> <td>C</td><td>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td><td> - 기타 지역 *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td></tr> <tr> <td>D</td><td> - 단독주택 - 공동주택 (군부대부지 중 상업·업무 복합용지(D1(가구단위), (D2-2))의 경우 지상층 연면적 중 주거면적 비율이 60%미만으로 계획시 공동주택 허용) * 군부대부지의 주거면적 비율 중 완화되는 비율(50%~60%△10%)은 실무부서협의를 통하여 근로자, 젊은이 등을 위한 기숙사,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 등으로 계획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td><td> - 군부대부지 - 시흥대로변 - 금천구청역부근 * 준주거지역 </td></tr> <tr> <td>E</td><td> - 단독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td><td> - 웰슈아파트 부지 * 준공업지역 </td></tr> <tr> <td>F</td><td>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용도 (부영부지, 기아자동차부지의 경우 공동주택부지 보다 산업부지 개발이 우선하거나 병행되어야함) </td><td> <공동주택용지> * 군부대부지(*제3종) * 부영부지, 기아자동차부지(*준공업지역) </td></tr> <tr> <td>G</td><td>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td><td> - 가구번호 : D8 * 준공업지역 </td></tr> <tr> <td>H</td><td> - 단독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정비공장 제외) </td><td> - 가구번호 : E1, E2 * 준공업지역 </td></tr> <tr> <td>I</td><td>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td><td> - 시흥동 1031, 홈플러스부지 특별계획구역 * 준공업지역 </td></tr> <tr> <td>J</td><td> - 산업시설(도시계획조례 별표2. 3호)을 제외한 용도 *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 한정하여 산업지원시설 설치가능 함 </td><td> - 부영부지, 기아자동차부지 (산업,지식산업센터) </td></tr> </table>	구분	불허용도	비고	A	- 단독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일반상업지역 - 시흥대로, 금하로, 시흥대로73길, 시흥대로63길변 * 준주거지역	B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무지개, 건영, 베르빌, 목련아파트 * 제3종일반주거지역	C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기타 지역 *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D	- 단독주택 - 공동주택 (군부대부지 중 상업·업무 복합용지(D1(가구단위), (D2-2))의 경우 지상층 연면적 중 주거면적 비율이 60%미만으로 계획시 공동주택 허용) * 군부대부지의 주거면적 비율 중 완화되는 비율(50%~60%△10%)은 실무부서협의를 통하여 근로자, 젊은이 등을 위한 기숙사,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 등으로 계획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군부대부지 - 시흥대로변 - 금천구청역부근 * 준주거지역	E	- 단독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웰슈아파트 부지 * 준공업지역	F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용도 (부영부지, 기아자동차부지의 경우 공동주택부지 보다 산업부지 개발이 우선하거나 병행되어야함)	<공동주택용지> * 군부대부지(*제3종) * 부영부지, 기아자동차부지(*준공업지역)	G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가구번호 : D8 * 준공업지역	H	- 단독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정비공장 제외)	- 가구번호 : E1, E2 * 준공업지역	I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시흥동 1031, 홈플러스부지 특별계획구역 * 준공업지역	J	- 산업시설(도시계획조례 별표2. 3호)을 제외한 용도 *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 한정하여 산업지원시설 설치가능 함	부영부지, 기아자동차부지 (산업,지식산업센터)
구분	불허용도	비고																																																																		
A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일반상업지역 - 시흥대로, 금하로, 시흥대로73길, 시흥대로63길변 * 준주거지역																																																																		
B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무지개, 건영, 베르빌, 목련아파트 * 제3종일반주거지역																																																																		
C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기타 지역 *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D	- 단독주택 - 공동주택 (군부대부지 중 상업·업무 복합용지(D1(가구단위), (D2-2))의 경우 지상층 연면적 중 주거면적 비율이 60%미만으로 계획시 공동주택 허용) * 군부대부지의 주거면적 비율 중 완화되는 비율(50%~60%△10%)은 실무부서협의를 통하여 근로자, 젊은이 등을 위한 기숙사,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 등으로 계획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군부대부지 - 시흥대로변 - 금천구청역부근 * 준주거지역																																																																		
E	- 단독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웰슈아파트 부지 * 준공업지역																																																																		
F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용도 (부영부지, 기아자동차부지의 경우 공동주택부지 보다 산업부지 개발이 우선하거나 병행되어야함)	<공동주택용지> * 군부대부지(*제3종) * 부영부지, 기아자동차부지(*준공업지역)																																																																		
G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가구번호 : D8 * 준공업지역																																																																		
H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정비공장 제외)	- 가구번호 : E1, E2 * 준공업지역																																																																		
I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시흥동 1031, 홈플러스부지 특별계획구역 * 준공업지역																																																																		
J	- 산업시설(도시계획조례 별표2. 3호)을 제외한 용도 *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 한정하여 산업지원시설 설치가능 함	부영부지, 기아자동차부지 (산업,지식산업센터)																																																																		
구분	불허용도	비고																																																																		
A	- 단독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일반상업지역 - 시흥대로, 금하로, 시흥대로73길, 시흥대로63길변 * 준주거지역																																																																		
B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무지개, 건영, 베르빌, 목련아파트 * 제3종일반주거지역																																																																		
C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기타 지역 *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D	- 단독주택 - 공동주택 (군부대부지 중 상업·업무 복합용지(D1(가구단위), (D2-2))의 경우 지상층 연면적 중 주거면적 비율이 60%미만으로 계획시 공동주택 허용) * 군부대부지의 주거면적 비율 중 완화되는 비율(50%~60%△10%)은 실무부서협의를 통하여 근로자, 젊은이 등을 위한 기숙사,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 등으로 계획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군부대부지 - 시흥대로변 - 금천구청역부근 * 준주거지역																																																																		
E	- 단독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웰슈아파트 부지 * 준공업지역																																																																		
F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용도 (부영부지, 기아자동차부지의 경우 공동주택부지 보다 산업부지 개발이 우선하거나 병행되어야함)	<공동주택용지> * 군부대부지(*제3종) * 부영부지, 기아자동차부지(*준공업지역)																																																																		
G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가구번호 : D8 * 준공업지역																																																																		
H	- 단독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정비공장 제외)	- 가구번호 : E1, E2 * 준공업지역																																																																		
I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시흥동 1031, 홈플러스부지 특별계획구역 * 준공업지역																																																																		
J	- 산업시설(도시계획조례 별표2. 3호)을 제외한 용도 *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 한정하여 산업지원시설 설치가능 함	부영부지, 기아자동차부지 (산업,지식산업센터)																																																																		

구분	기정			변경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	K	•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을 제외한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동차 영업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은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한해 설치가능한 용도로 인정(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 한정하여 설치가능 함)	•기아자동차부지 (자동차 관련시설 (정비공장) 용지) * 준공업지역	K	•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을 제외한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동차 영업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은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한해 설치가능한 용도로 인정(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 한정하여 설치가능 함)	•기아자동차부지 (자동차 관련시설 (정비공장) 용지) * 준공업지역	
	L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옥외 쉼터에 있는 골프연습장 • 운동시설 중 옥외 쉼터에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위탁시설	•시흥대로 동측 * 제23종일반주거지역	L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옥외 쉼터에 있는 골프연습장 • 운동시설 중 옥외 쉼터에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위탁시설	•시흥대로 동측 * 제23종일반주거지역	
	M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 시설 •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흥동 10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일반상업지역	M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 시설 •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흥동 10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일반상업지역	
※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적용,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단,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단독주택은 주거복합이 아닌 경우를 말함				※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적용,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단,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단독주택은 주거복합이 아닌 경우를 말함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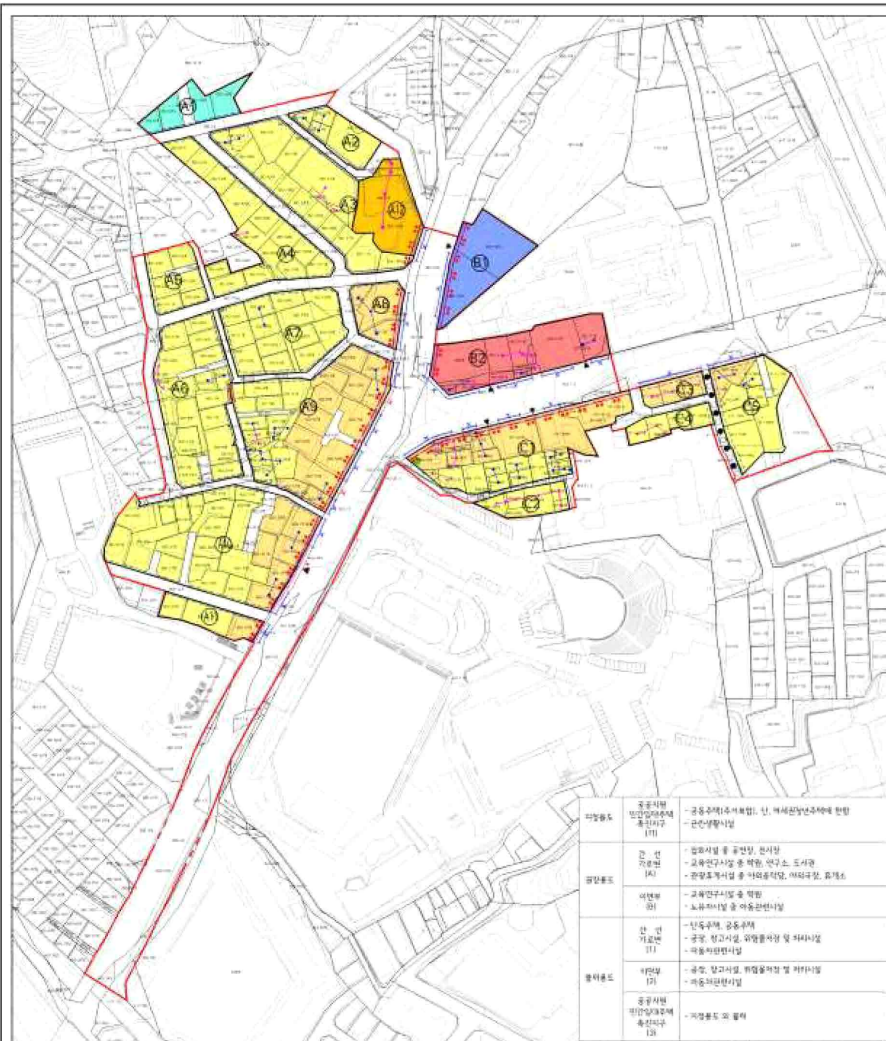


□ 노원구

○ 광운대주변

구분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	가로환경 정비구역 (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가로환경 정비구역 (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이면부 주거지역 (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이면부 주거지역 (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종합지침도

기
정광운대주변
지구단위계획

종 합 지 침 도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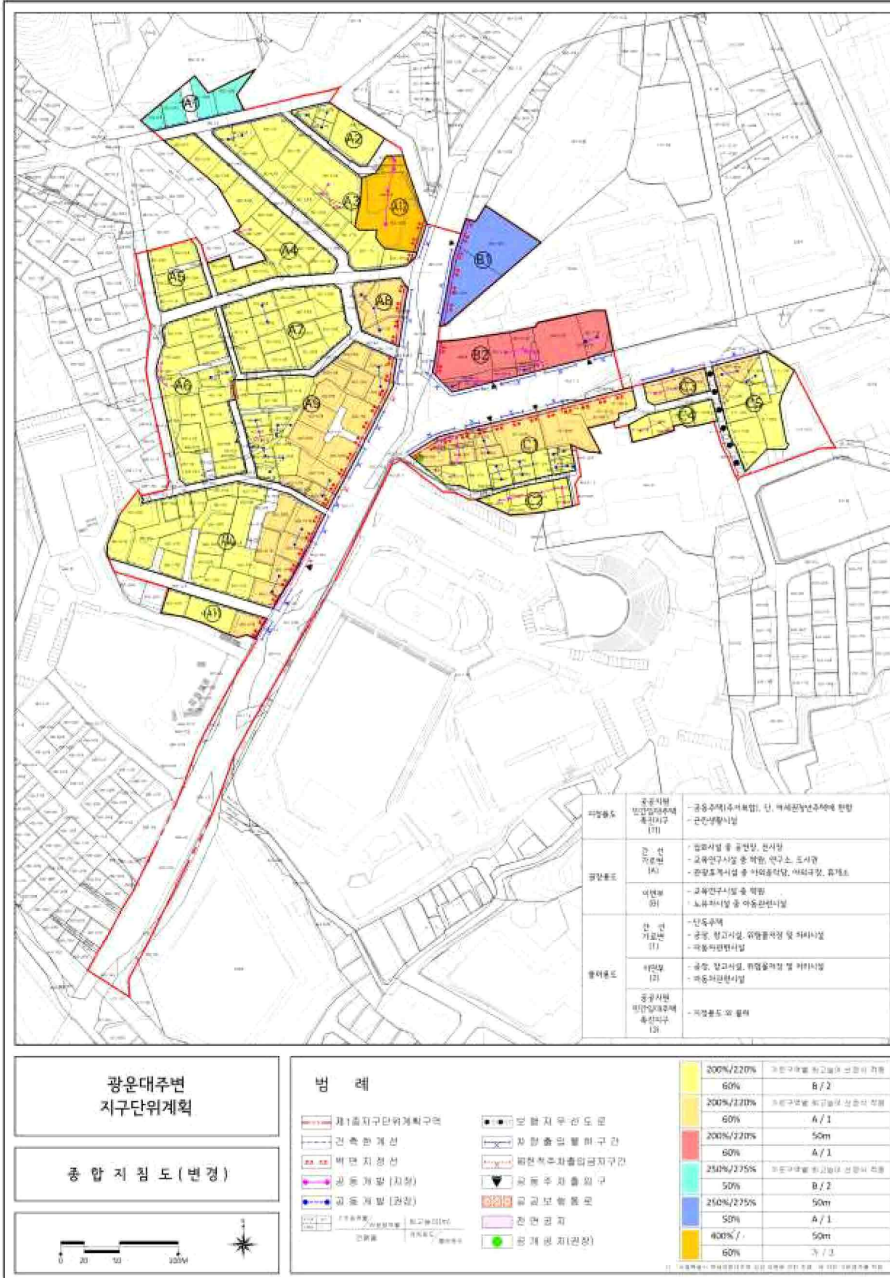


합 려



200%/220%	유한구분채 증권화액 증권지 가중
60%	B / 2
200%/220%	유한구분채 증권화액 증권지 가중
60%	A / 1
200%/220%	50m
60%	A / 1
250%/275%	유한구분채 증권화액 증권지 가중
50%	B / 2
250%/275%	50m
50%	A / 1
400% /	50m
60%	A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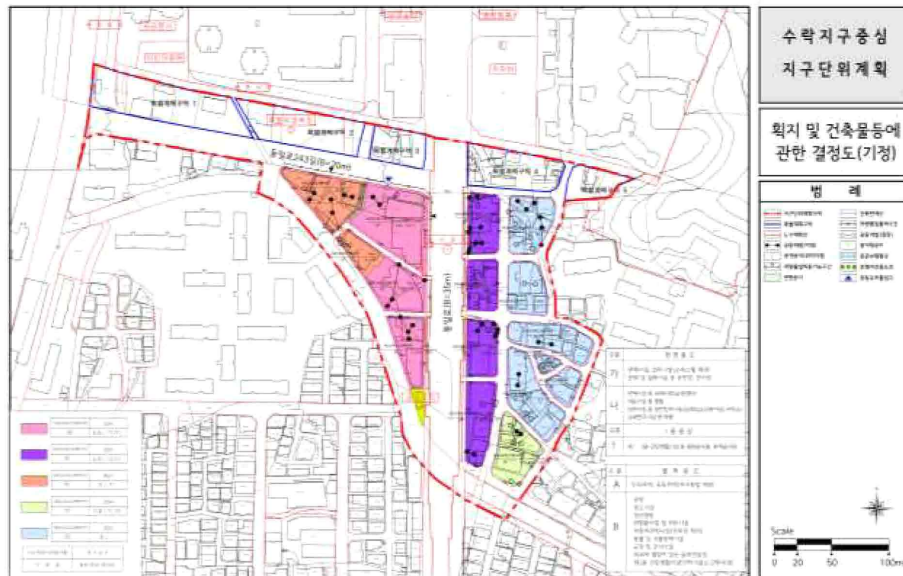
변경



○ 수락지구중심

구분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불허용도	A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주거복합 제외)	—	A	• 단독주택	—
	B	• 공장 •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B	• 공장 •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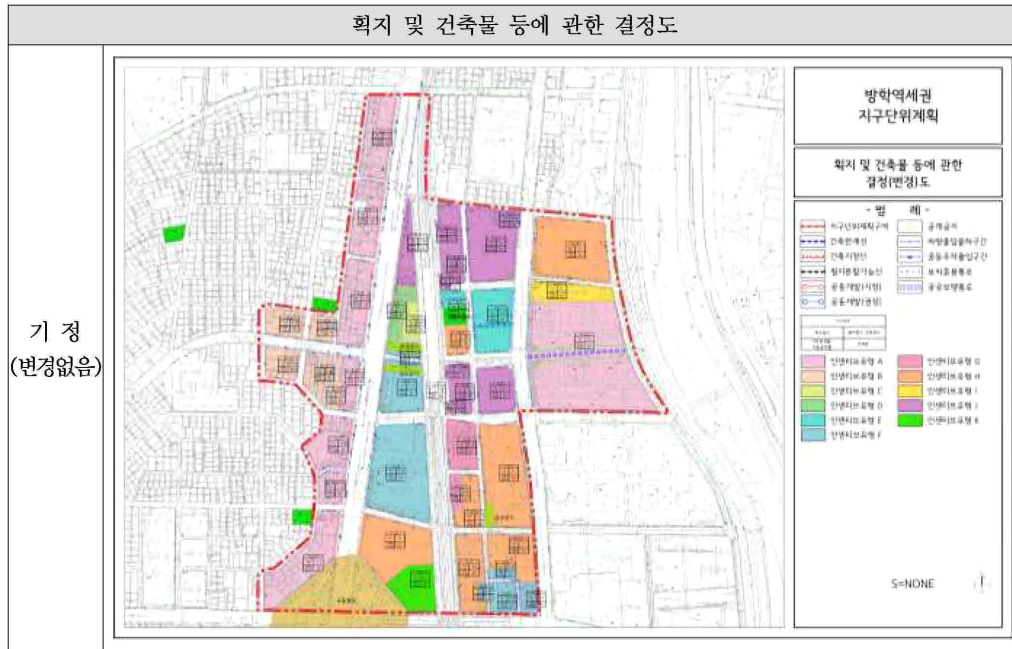
변경



- 도봉구
○ 방학역세권

구분	기정				변경			
	구분	1층블럭	전층블럭	비고	구분	1층블럭	전층블럭	비고
③ 건축계획 에 관한 결 정조서 2. 건축물 용 도 결정조서 2.1 불허용도 ■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 정조서	공통	-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로관예소 강아사, 사육성 상인 오락실, 고시원, 옥외결합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린 강의발매소, 마린 전회투표소 및 이와 비슷한 시설) - 제8호의 운수시설(철도시설은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대시설 강제식당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 결합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및 기존에 사용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차고 및 주차장은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제28호의 장례식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불허용도 (해당구역에 한함)	-	공통	-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로관예소 강아사, 사육성 상인 오락실, 고시원, 옥외결합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린 강의발매소, 마린 전회투표소 및 이와 비슷한 시설) - 제8호의 운수시설(철도시설은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대시설 강제식당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 결합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및 기존에 사용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차고 및 주차장은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제28호의 장례식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불허용도 (해당구역에 한함)	-
	불허 용도 1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자동차영업소,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불허 용도 1	제1호의 단독주택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자동차영업소,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불허 용도 2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자동차영업소,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기제식 재차설비 포함))	-	불허 용도 2	제1호의 단독주택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자동차영업소,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기제식 재차설비 포함))	-
	불허 용도 3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17호의 공장(단, 단업집적화합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지식산업센터 제외)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불허 용도 3	제1호의 단독주택	- 제17호의 공장(단, 단업집적화합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지식산업센터 제외)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불허 용도 4	-	- 제17호의 공장(단, 단업집적화합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지식산업센터 제외)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불허 용도 4	-	- 제17호의 공장(단, 단업집적화합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지식산업센터 제외)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불허 용도 5	-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자동차영업소,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불허 용도 5	-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자동차영업소,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참조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참조			

기 정
(변경없음)



○ 도봉생활권중심

구분	기정				변경			
	구분	1층부회	전층부회	비고	구분	1층부회	전층부회	비고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계획 ■ 불허용도	불허용도 1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내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불허용도 1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내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불허용도 2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불허용도 2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불허용도 3	주백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불허용도 3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 쌍문지구중심

구분	기정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구분	계획내용	비고
III.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1) 건축물의 불허용도(변경)	일반 상업 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고시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이와 비슷한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대시설 장폐식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폐식장	-	일반 상업 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고시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이와 비슷한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대시설 장폐식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폐식장	-
	이면부 A-2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상가구입업인 실내장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장행 행위인 상인전용판매, 상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상인전용업 -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공장 •광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이면부 A-2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상가구입업인 실내장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장행 행위인 상인전용판매, 상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상인전용업 -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공장 •광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준주거 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이와 비슷한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대시설 장폐식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폐식장	-	준주거 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이와 비슷한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대시설 장폐식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폐식장	-

구분

기정

변경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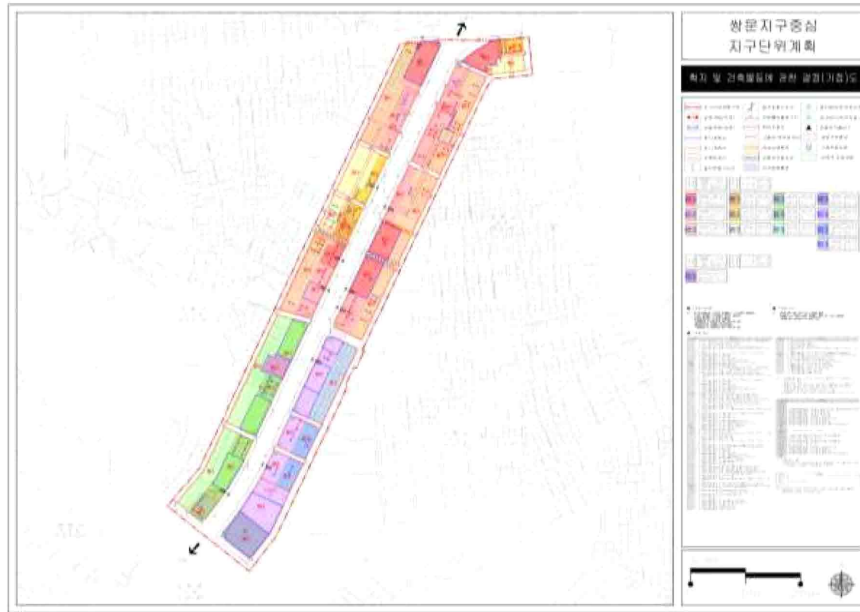
구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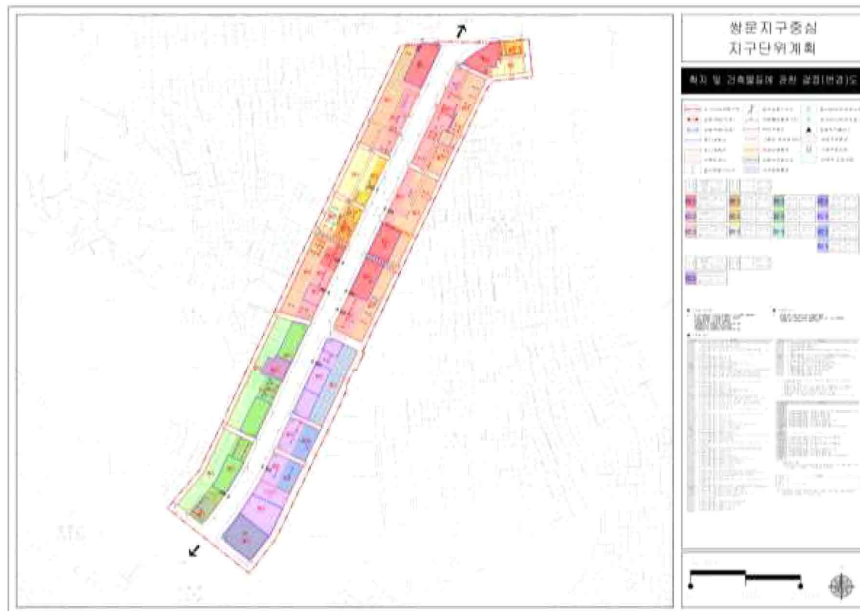
구분	기정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구분	계획내용	비고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1) 건축물의 불허용도(변경)	준공업 지역	이면부 C-2	—	준공업 지역	이면부 C-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옥외월담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옥외월담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대시설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대시설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월담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월담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단, 산업집적활성과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3호 지식산업센터, 제28조 도시형공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단, 산업집적활성과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3호 지식산업센터, 제28조 도시형공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기체식 세차설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기체식 세차설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주) 1. 관련법령(용도지역, 미관지구,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불허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				주) 1. 관련법령(용도지역, 미관지구,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불허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35조 제2호에 따라 일정 비율의 산업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음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35조 제2호에 따라 일정 비율의 산업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음			
3.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용도인 경우에도 불허용도는 건축할 수 없음				3.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용도인 경우에도 불허용도는 건축할 수 없음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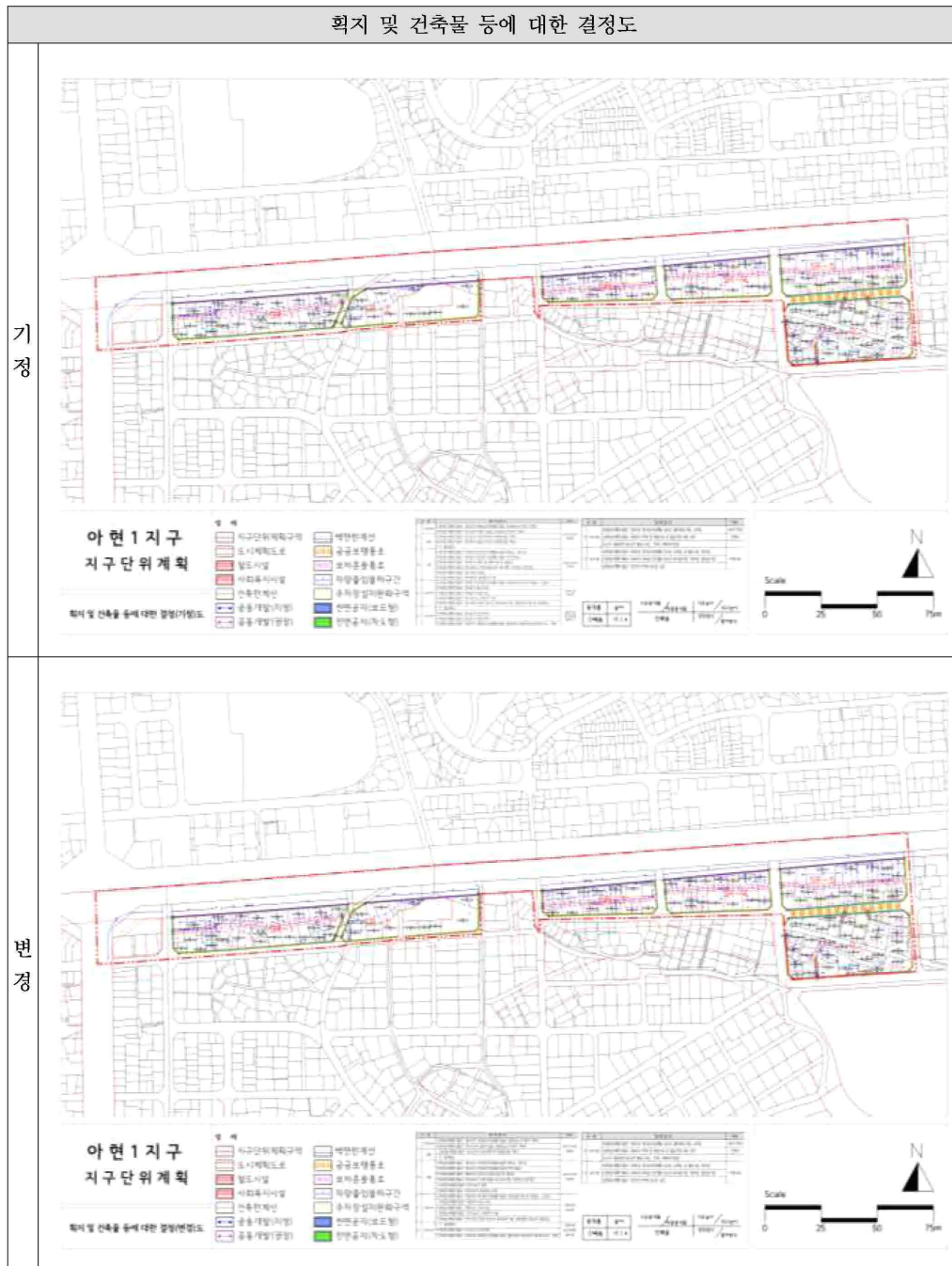
변
경



□ 마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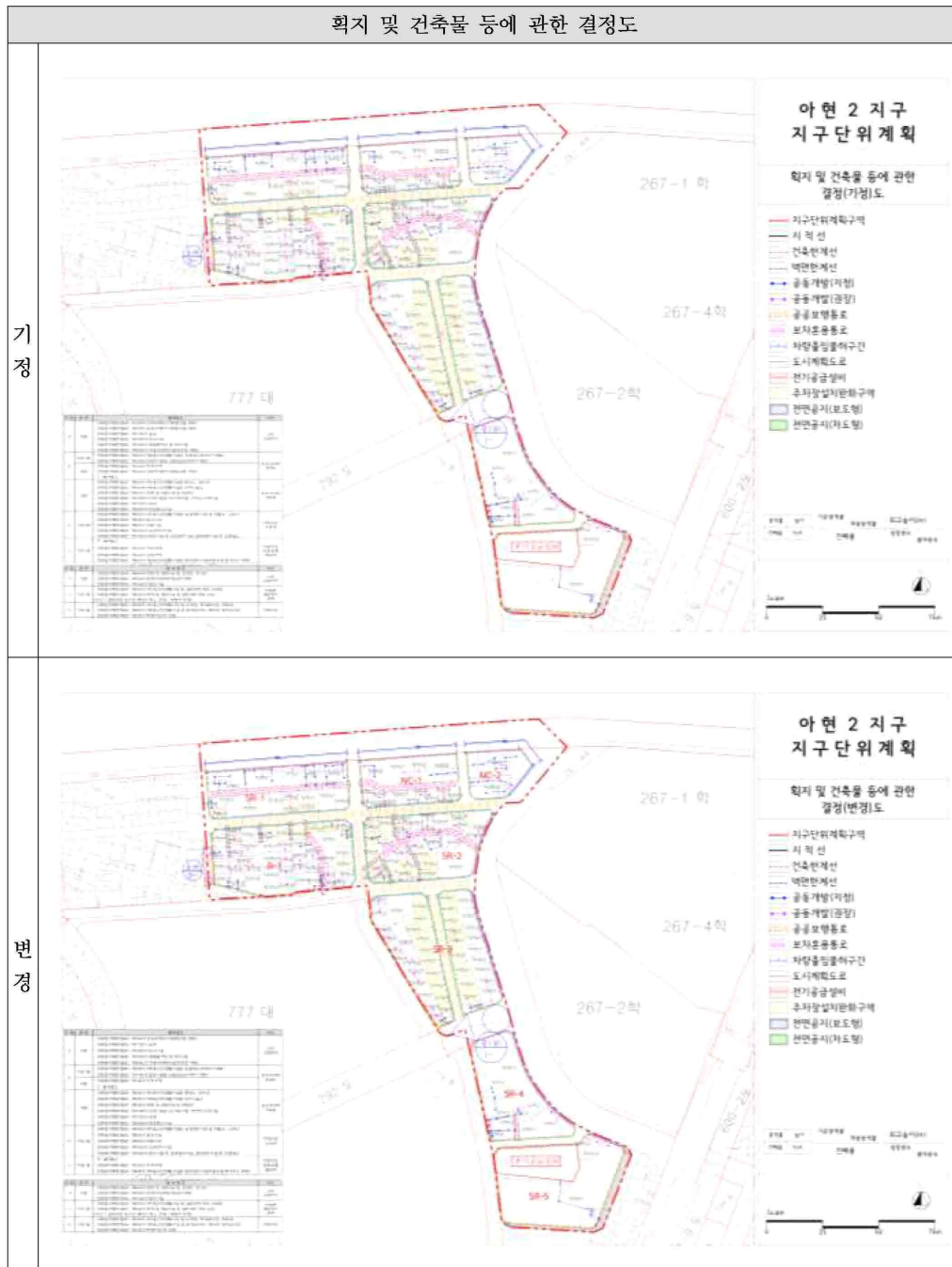
○ 아현1지구

구분	기정	변경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 용도 1) 불허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각 용도지역지구별 도입 가능한 용도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구역에 따라 불허용도로 제시된 용도의 입지는 불허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불허용도</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A</td><td> 지상 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td><td>준주거 지역 전단부</td></tr> <tr> <td>전층</td><td>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B' 불허용도 </td><td></td></tr> <tr> <td>B</td><td>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경수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설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 - 자연권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td><td>준주거 지역 이면부</td></tr> <tr> <td>C</td><td> 지상 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공공업무시설 중 파출소, 소방서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td><td>아원사정 도로변</td></tr> <tr> <td>D</td><td> 지상 1층 'C'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업무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제외) </td><td>아원사정 공공보행 통로변</td></tr> </tbody> </table>	구분	불허용도	비고	A	지상 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준주거 지역 전단부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B' 불허용도		B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경수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설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 - 자연권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준주거 지역 이면부	C	지상 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공공업무시설 중 파출소, 소방서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아원사정 도로변	D	지상 1층 'C'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업무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제외)	아원사정 공공보행 통로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각 용도지역지구별 도입 가능한 용도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구역에 따라 불허용도로 제시된 용도의 입지는 불허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불허용도</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A</td><td> 지상 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td><td>준주거 지역 전단부</td></tr> <tr> <td>전층</td><td>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B' 불허용도 </td><td></td></tr> <tr> <td>B</td><td>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 경수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설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 - 자연권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td><td>준주거 지역 이면부</td></tr> <tr> <td>C</td><td> 지상 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공공업무시설 중 파출소, 소방서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td><td>아원사정 도로변</td></tr> <tr> <td>D</td><td> 지상 1층 'C'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업무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제외) </td><td>아원사정 공공보행 통로변</td></tr> </tbody> </table>	구분	불허용도	비고	A	지상 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준주거 지역 전단부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B' 불허용도		B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 경수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설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 - 자연권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준주거 지역 이면부	C	지상 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공공업무시설 중 파출소, 소방서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아원사정 도로변	D	지상 1층 'C'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업무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제외)	아원사정 공공보행 통로변
구분	불허용도	비고																																				
A	지상 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준주거 지역 전단부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B' 불허용도																																					
B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경수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설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 - 자연권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준주거 지역 이면부																																				
C	지상 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공공업무시설 중 파출소, 소방서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아원사정 도로변																																				
D	지상 1층 'C'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업무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제외)	아원사정 공공보행 통로변																																				
구분	불허용도	비고																																				
A	지상 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준주거 지역 전단부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B' 불허용도																																					
B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 경수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설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 - 자연권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준주거 지역 이면부																																				
C	지상 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공공업무시설 중 파출소, 소방서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아원사정 도로변																																				
D	지상 1층 'C'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업무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제외)	아원사정 공공보행 통로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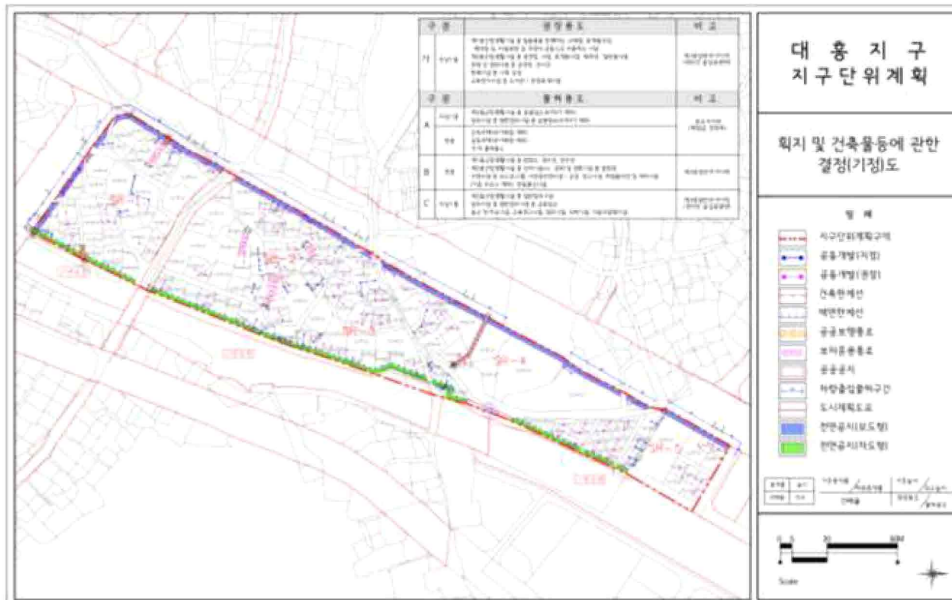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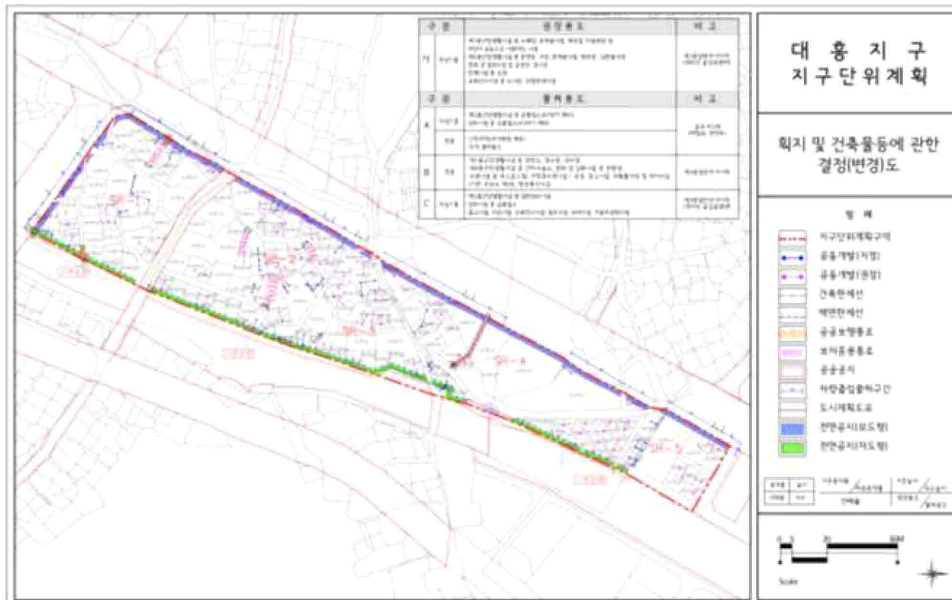


○ 아현2지구

구분	기정	변경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 용도 ■ 불허용도	- 토지이용계획 및 가로별 입지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 용도계획 -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의 입지제한, 부합하는 용도는 권장 - 토지이용계획의 충실을 위해 권장용도를 인센티브로 활용함으로써 계획 실현성 제고	- 토지이용계획 및 가로별 입지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 용도계획 -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의 입지제한, 부합하는 용도는 권장 - 토지이용계획의 충실을 위해 권장용도를 인센티브로 활용함으로써 계획 실현성 제고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불허용도</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A 전층</td><td>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td><td>근린 상업지역</td></tr> <tr> <td>B 자상 1층</td><td>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td><td>준주거 지역 전면부</td></tr> <tr> <td>B 전층</td><td>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C' 불허용도 </td><td>준주거 지역 전면부</td></tr> <tr> <td>C 전층</td><td>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편의소, 강수량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 자연권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td><td>준주거 지역 이면부</td></tr> <tr> <td>D 자상 1층</td><td>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공공업무시설 중 파출소, 소방서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td><td>이전시장 도로변</td></tr> <tr> <td>E 자상 1층</td><td> 'D'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중 일반업무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제외) </td><td>이전시장 공공보행 도로변</td></tr> </tbody> </table>	구분	불허용도	비고	A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근린 상업지역	B 자상 1층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준주거 지역 전면부	B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C' 불허용도	준주거 지역 전면부	C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편의소, 강수량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 자연권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준주거 지역 이면부	D 자상 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공공업무시설 중 파출소, 소방서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이전시장 도로변	E 자상 1층	'D'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중 일반업무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제외)	이전시장 공공보행 도로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불허용도</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A 전층</td><td>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td><td>근린 상업지역</td></tr> <tr> <td>B 자상 1층</td><td>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td><td>준주거 지역 전면부</td></tr> <tr> <td>B 전층</td><td>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C' 불허용도 </td><td>준주거 지역 전면부</td></tr> <tr> <td>C 전층</td><td>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편의소, 강수량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 자연권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td><td>준주거 지역 이면부</td></tr> <tr> <td>D 자상 1층</td><td>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공공업무시설 중 파출소, 소방서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td><td>이전시장 도로변</td></tr> <tr> <td>E 자상 1층</td><td> 'D'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중 일반업무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제외) </td><td>이전시장 공공보행 도로변</td></tr> </tbody> </table>	구분	불허용도	비고	A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근린 상업지역	B 자상 1층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준주거 지역 전면부	B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C' 불허용도	준주거 지역 전면부	C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편의소, 강수량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 자연권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준주거 지역 이면부	D 자상 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공공업무시설 중 파출소, 소방서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이전시장 도로변	E 자상 1층	'D'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중 일반업무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제외)
구분	불허용도	비고																																									
A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근린 상업지역																																									
B 자상 1층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준주거 지역 전면부																																									
B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C' 불허용도	준주거 지역 전면부																																									
C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편의소, 강수량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 자연권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준주거 지역 이면부																																									
D 자상 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공공업무시설 중 파출소, 소방서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이전시장 도로변																																									
E 자상 1층	'D'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중 일반업무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제외)	이전시장 공공보행 도로변																																									
구분	불허용도	비고																																									
A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근린 상업지역																																									
B 자상 1층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준주거 지역 전면부																																									
B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C' 불허용도	준주거 지역 전면부																																									
C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편의소, 강수량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 자연권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준주거 지역 이면부																																									
D 자상 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공공업무시설 중 파출소, 소방서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이전시장 도로변																																									
E 자상 1층	'D'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중 일반업무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제외)	이전시장 공공보행 도로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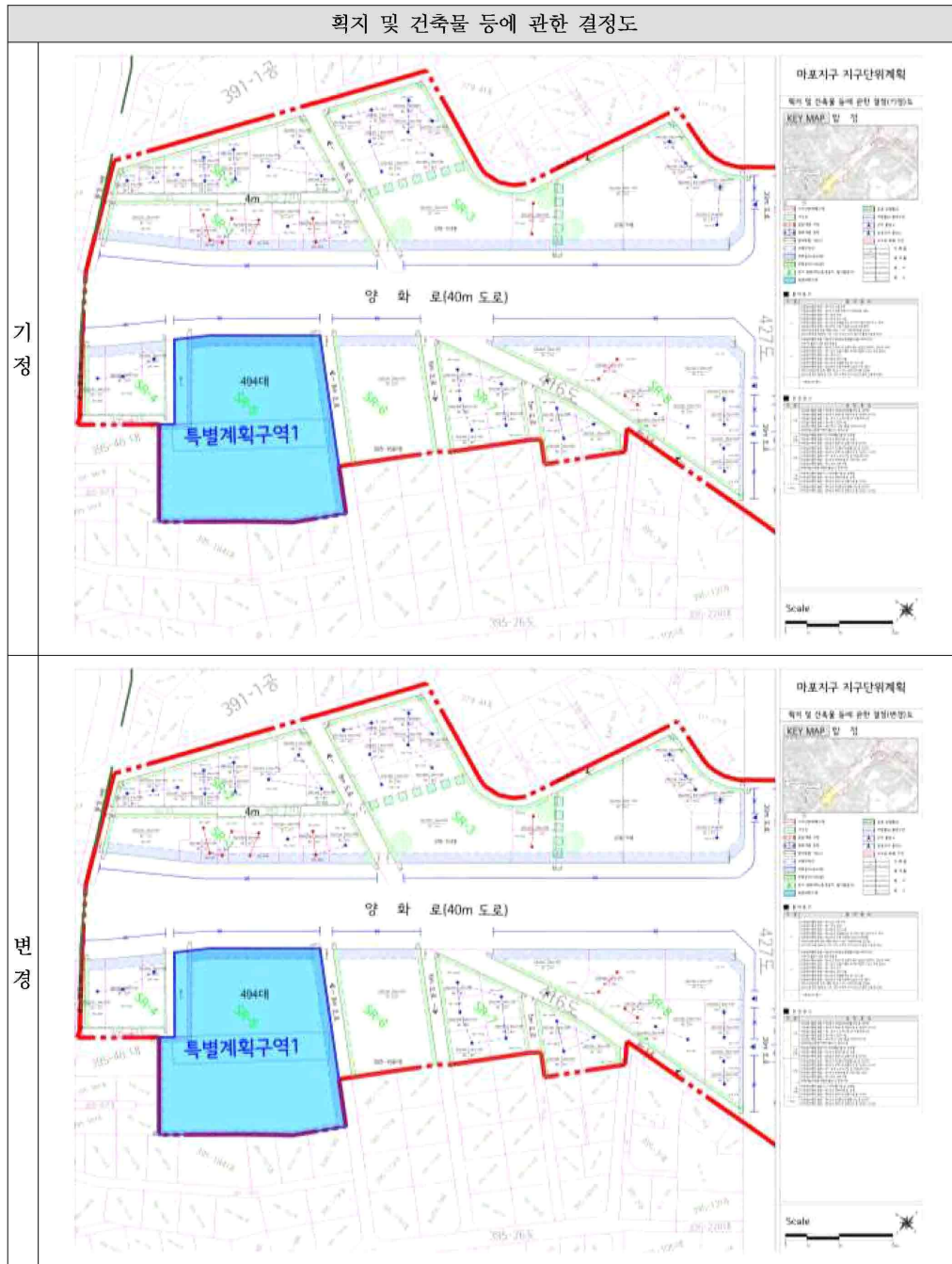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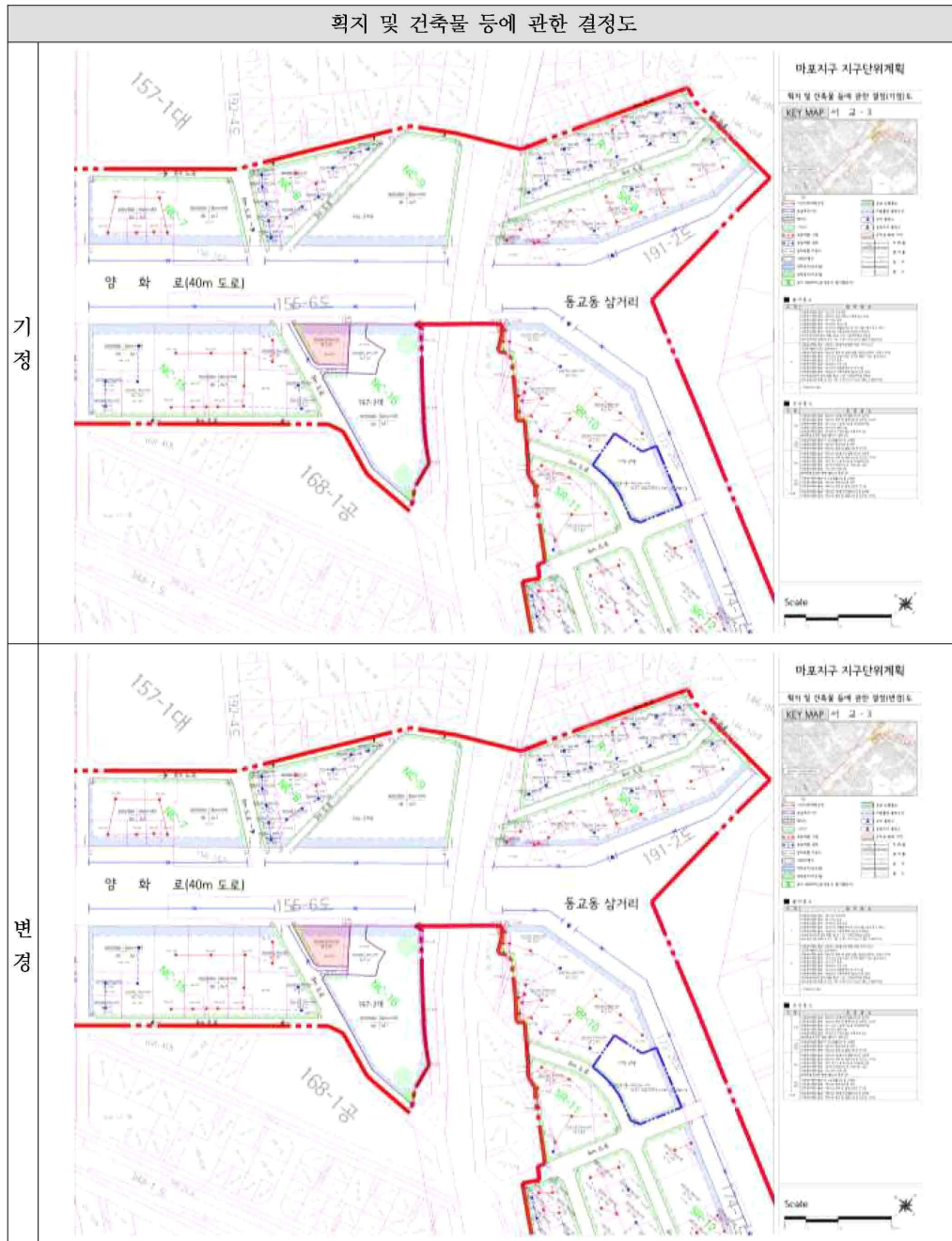
○ 마포지구

구분				변경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비고
③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불허용도 계획 ■ 불허용도 결정조서		A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기존주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사행성게임물 취급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가목 7)내지 9)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전면블럭	A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기존주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사행성게임물 취급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가목 7)내지 9)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전면블럭
		B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사행성게임물 취급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가목 7)내지 9)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준주거지역 이면부 및 일반 주거지역	B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사행성게임물 취급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가목 7)내지 9)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준주거지역 이면부 및 일반 주거지역
		C	지정용도 외 불허	동교동 173-2	C	지정용도 외 불허	동교동 173-2
				주)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적용			주)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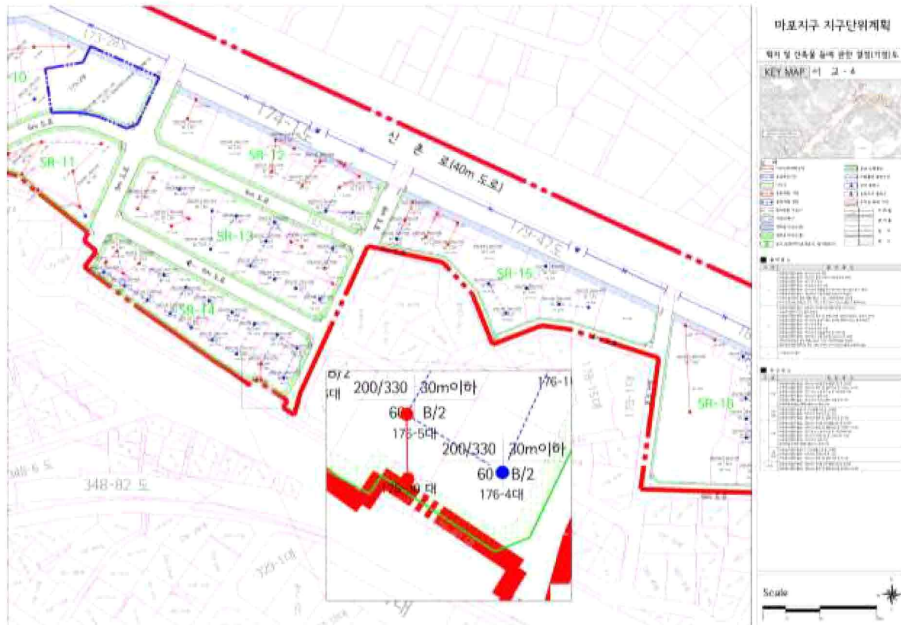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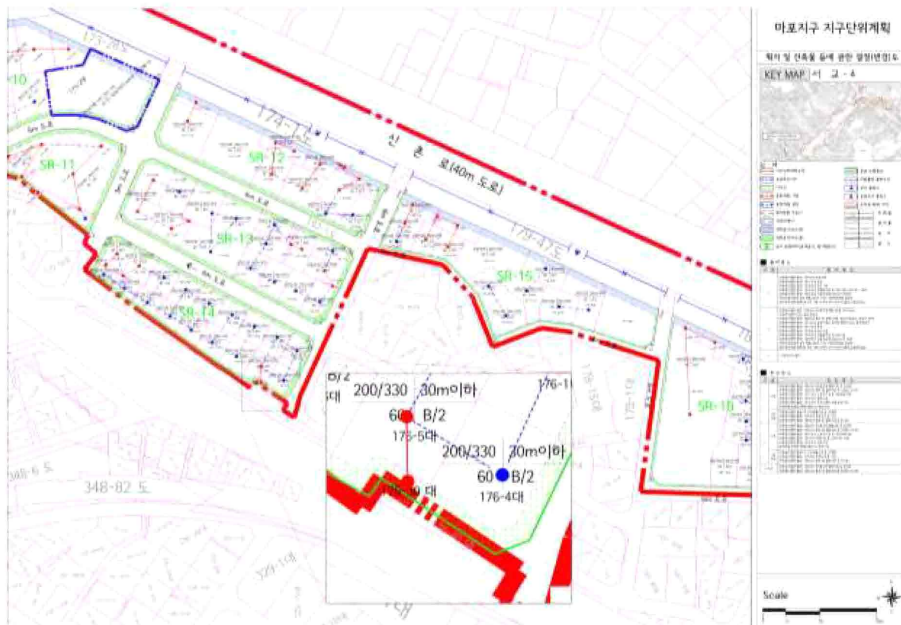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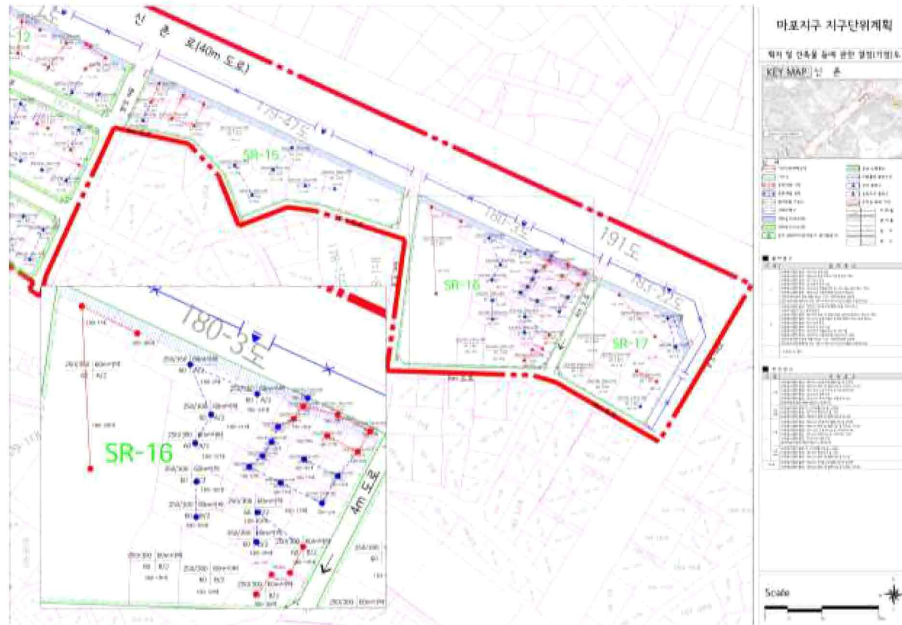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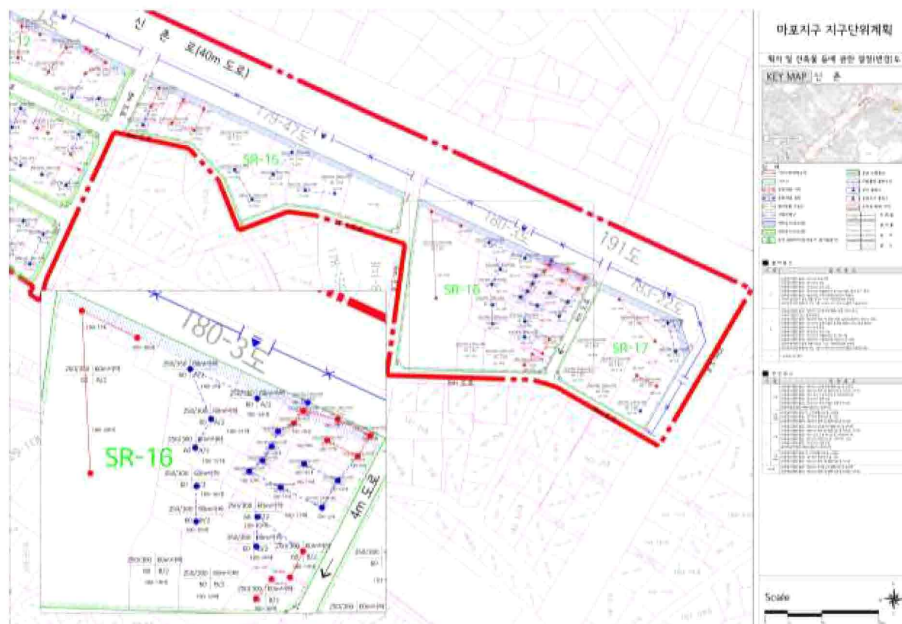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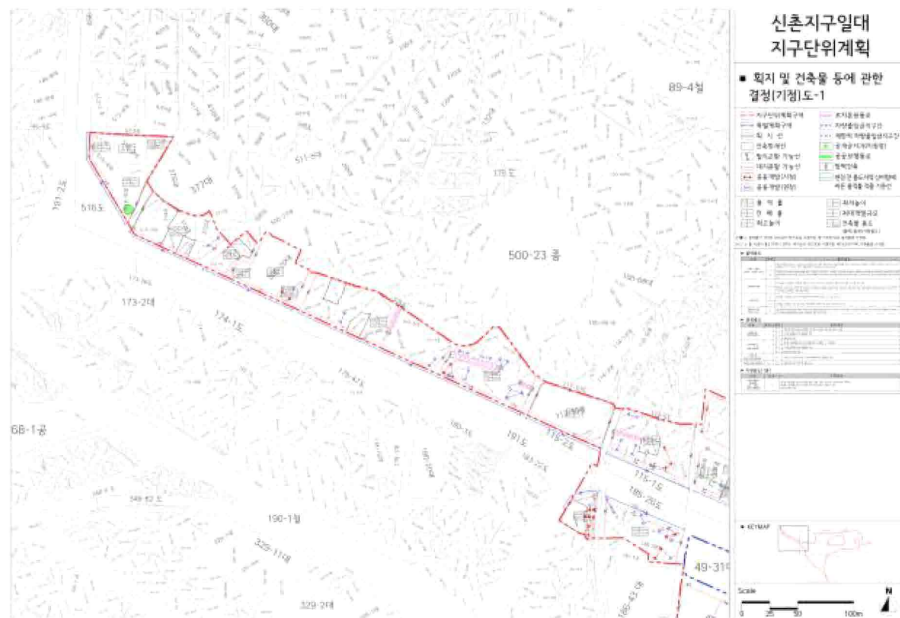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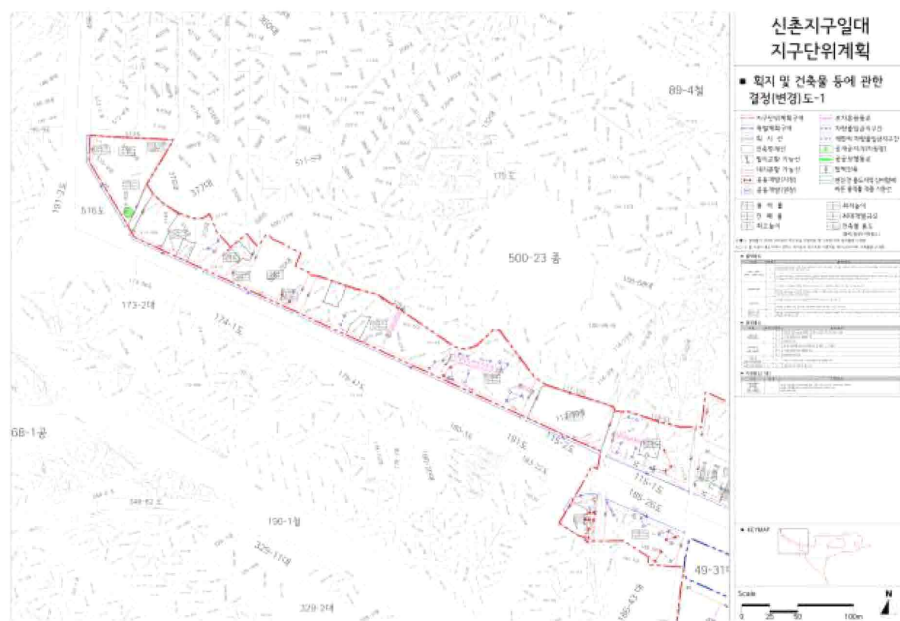
○ 신촌지구일대 (마포구, 서대문구)

구분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건축물의 불허용도	A	단독주택(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안마시술소, 정신병원, 요양병원, 장애인식당,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신촌로, 양화로, 연세로, 신촌역로 주변	A	단독주택(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 안마시술소, 정신병원, 요양병원, 장애인식당,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신촌로, 양화로, 연세로, 신촌역로 주변
	B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관주점, 안마시술소, 장애인식당,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탁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은 제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신촌로, 양화로, 연세로, 신촌역로 주변	B	단독주택, 단관주점, 안마시술소, 장애인식당,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탁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은 제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신촌로, 양화로, 연세로, 신촌역로 주변
	C	안마시술소, 정신병원, 요양병원, 장애인식당,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이화여대 주변	C	안마시술소, 정신병원, 요양병원, 장애인식당,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이화여대 주변
	D	단관주점, 안마시술소, 장애인식당,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탁시설,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이화여대 주변	D	단관주점, 안마시술소, 장애인식당,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탁시설,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이화여대 주변
	E	정신병원, 요양병원, 창고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연세대 주변	E	정신병원, 요양병원, 창고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연세대 주변
	F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연세대 주변	F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연세대 주변
	G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단관주점, 안마시술소,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조업소, 교정 및 군사시설	신촌상가 서측 준주거지역	G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단관주점, 안마시술소,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조업소, 교정 및 군사시설	신촌상가 서측 준주거지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
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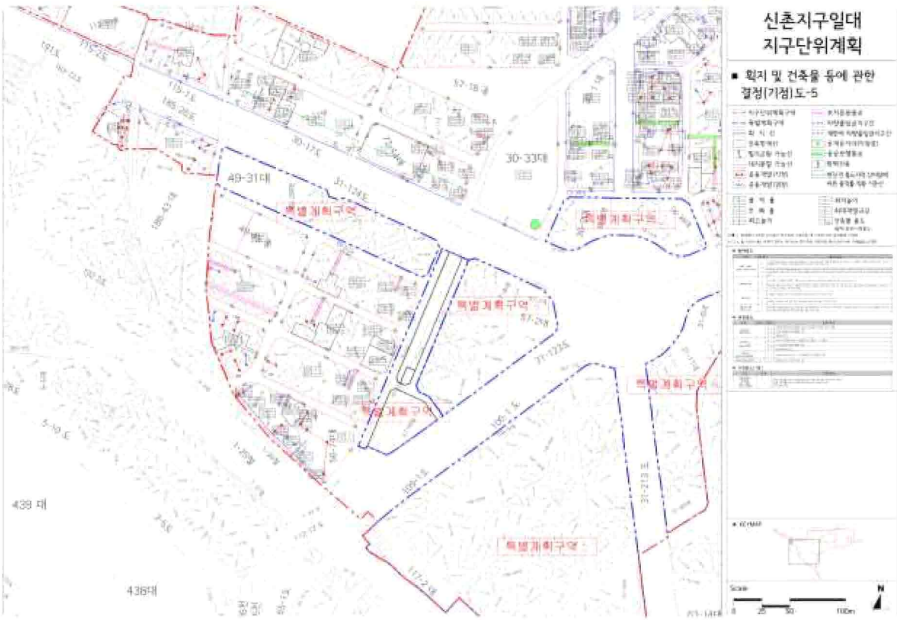
기
정

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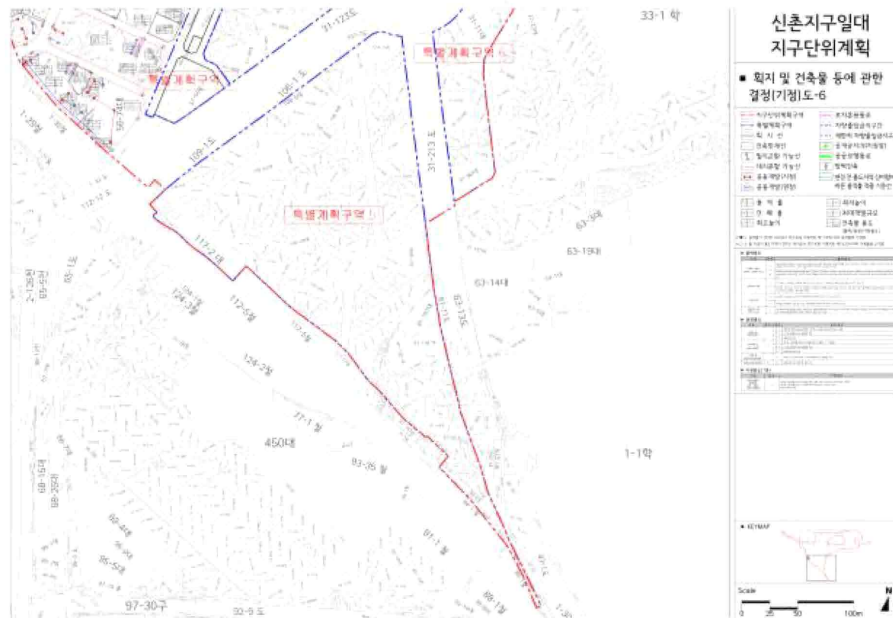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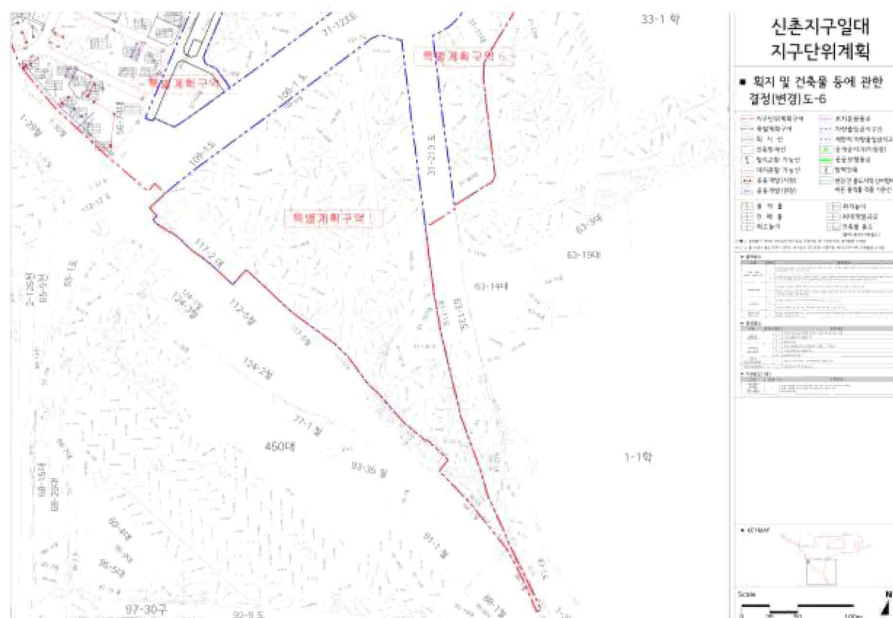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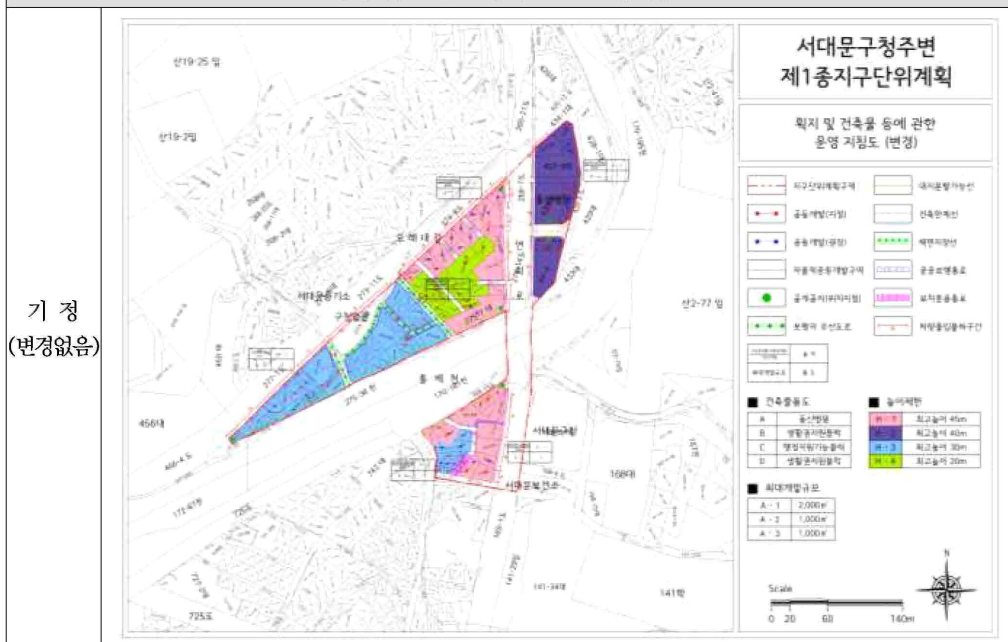


□ 서대문구

○ 서대문구청주변

구분	기정	변경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1) 불허용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불허용도</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A (A블럭)</td><td> •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td><td>—</td></tr> <tr> <td>B (B블럭)</td><td> •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강례식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td><td>—</td></tr> <tr> <td>C (C블럭)</td><td> •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강례식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td><td>—</td></tr> <tr> <td>D (D블럭)</td><td>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강례식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td><td>—</td></tr> <tr> <td>미관지구</td><td>미관지구 불허용도</td><td>—</td></tr> </tbody> </table>	구분	불허용도	비고	A (A블럭)	•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B (B블럭)	•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강례식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C (C블럭)	•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강례식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D (D블럭)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강례식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미관지구	미관지구 불허용도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불허용도</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A (A블럭)</td><td> •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td><td>—</td></tr> <tr> <td>B (B블럭)</td><td> •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강례식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td><td>—</td></tr> <tr> <td>C (C블럭)</td><td> •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강례식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td><td>—</td></tr> <tr> <td>D (D블럭)</td><td>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강례식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td><td>—</td></tr> <tr> <td>미관지구</td><td>미관지구 불허용도</td><td>—</td></tr> </tbody> </table>	구분	불허용도	비고	A (A블럭)	•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B (B블럭)	•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강례식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C (C블럭)	•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강례식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D (D블럭)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강례식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미관지구	미관지구 불허용도	—
구분	불허용도	비고																																				
A (A블럭)	•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B (B블럭)	•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강례식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C (C블럭)	•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강례식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D (D블럭)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강례식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미관지구	미관지구 불허용도	—																																				
구분	불허용도	비고																																				
A (A블럭)	•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B (B블럭)	•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강례식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C (C블럭)	•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강례식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D (D블럭)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강례식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미관지구	미관지구 불허용도	—																																				
주)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포함된 대지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주)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포함된 대지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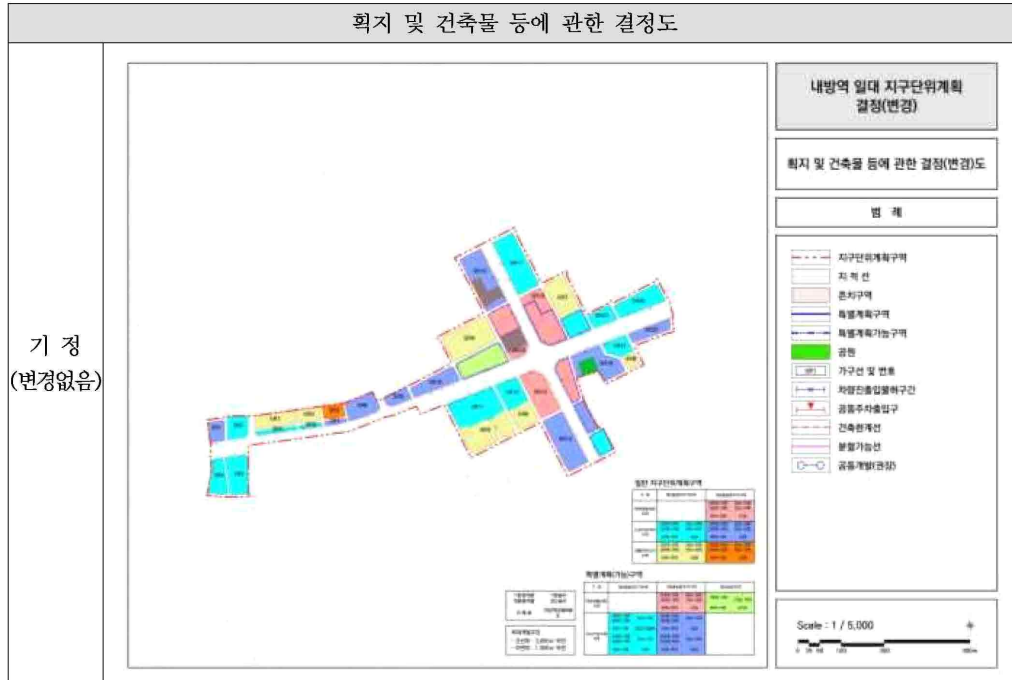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운영지침도



□ 서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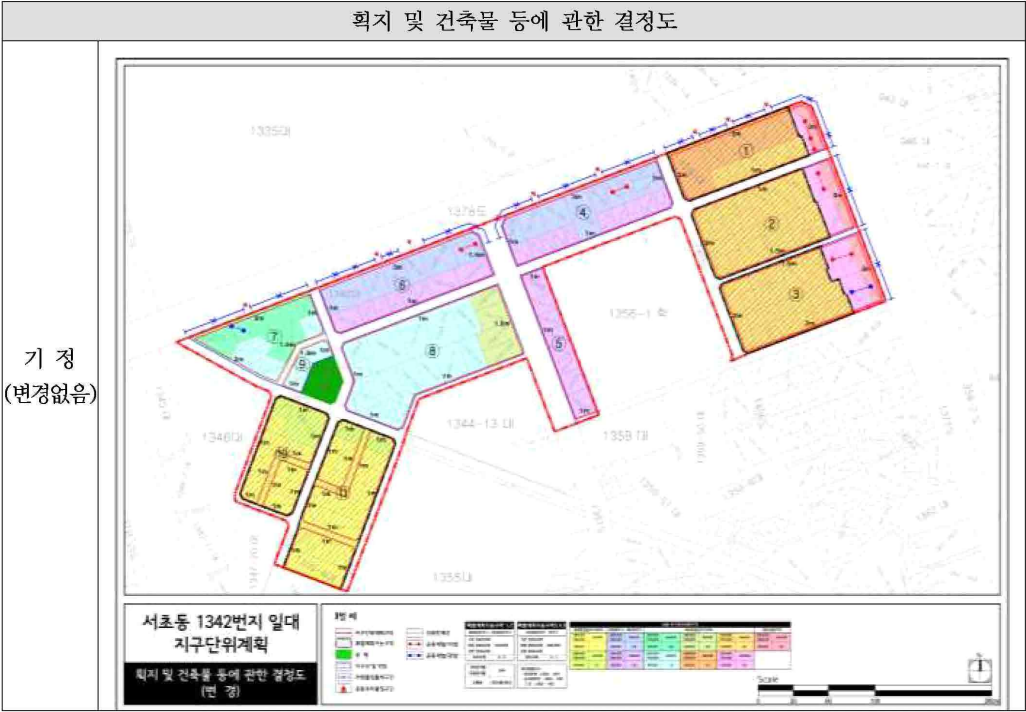
○ 내방역 일대

구분	기정		변경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용도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30조에서 정한 용도지역 및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용도 불허 ○ 가로외의 성격이나 경관 상 불량시설 또는 혐오시설로 분위기 저해가 예상되는 용도 ○ 지구중심으로 지역 활성화 등의 지구단위계획 목표에 부합하지 않아 제한이 필요한 용도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용도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30조에서 정한 용도지역 및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용도 불허 ○ 가로외의 성격이나 경관 상 불량시설 또는 혐오시설로 분위기 저해가 예상되는 용도 ○ 지구중심으로 지역 활성화 등의 지구단위계획 목표에 부합하지 않아 제한이 필요한 용도
	구분	도면번호	불허용도
	간선부	A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에서 불허하는 시설 입지 불가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시설 중 다음 시설은 건축 불가 -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충포편안소, 옥외활동공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린 경의 발레소 및 마린 전파투표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려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운동시설 중 옥외활동공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공공 장교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시설 중 다음 시설은 건축 불가 -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충포편안소, 옥외활동공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린 경의 발레소 및 마린 전파투표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려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운동시설 중 옥외활동공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공공 장교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이전부	B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에서 불허하는 시설 입지 불가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시설 중 다음 시설은 건축 불가 -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충포편안소, 옥외활동공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린 경의 발레소 및 마린 전파투표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려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운동시설 중 옥외활동공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공공 장교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허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함 ※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용도계획이 적용될 경우에는 해당 불허용도를 동시에 적용함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별도 계획 지침에 따름			



○ 서초동 1342번지 일대

구분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나. 불허용도 결정조서	A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중포판애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노래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린강의발애소마린전화투포소 및 이와 비슷한 시설, 편담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불안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아목의 차고 및 주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경매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노선 상업 지역	A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중포판애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노래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린강의발애소마린전화투포소 및 이와 비슷한 시설, 편담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불안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아목의 차고 및 주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경매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노선 상업 지역
	B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중포판애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업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안마사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불안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중 광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보호관찰소·갱생보호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B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중포판애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업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안마사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불안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중 광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보호관찰소·갱생보호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C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중포판애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린강의발애소마린전화투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중 광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C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중포판애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린강의발애소마린전화투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중 광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해당 계획지침 적용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해당 계획지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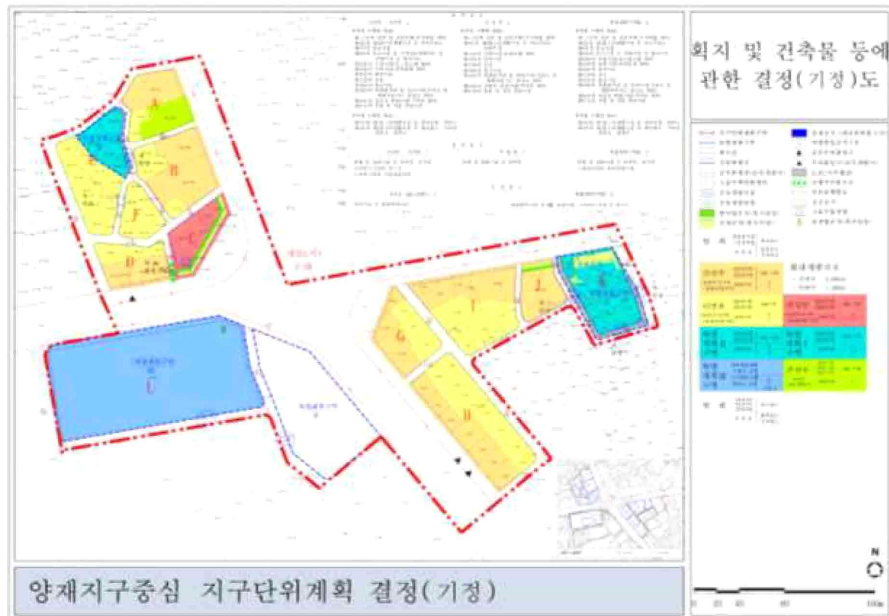


○ 양재지구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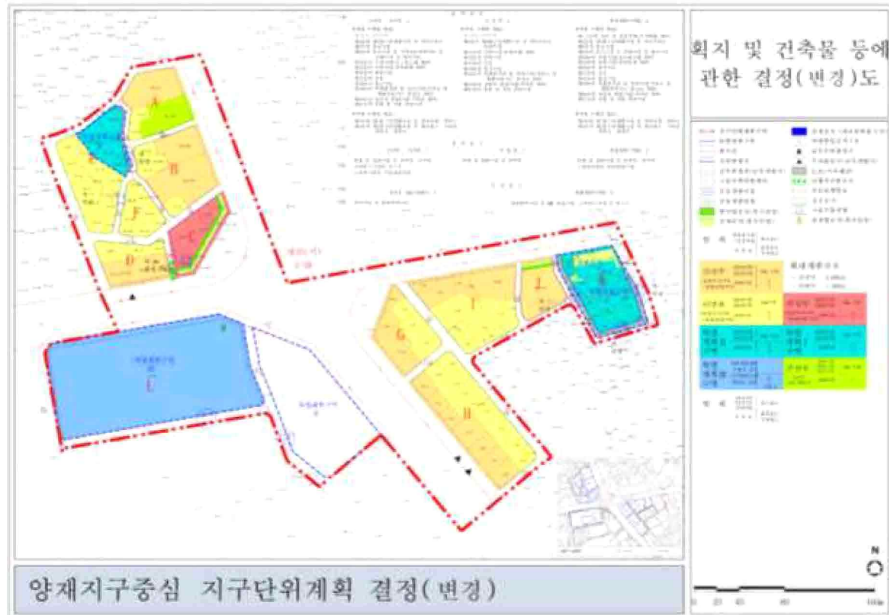
구분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구분	불허용도		
	전층불허	1층불허		전층불허	1층불허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계획 1) 불허용도 계획 결정(변경)조서	a 간선부 /가각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단독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실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세탁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2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장의사	a 간선부 /가각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실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세탁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2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장의사
	b 이면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단독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실소 및 단란주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b 이면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실소 및 단란주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d 특별 계획 구역 III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단독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실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세탁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2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장의사	d 특별 계획 구역 III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단독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실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세탁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2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장의사
	* 공동개발의 변경 등에 의해서로 상이한 지점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면에 대한 대지에 적용되는 지점을 적용			* 공동개발의 변경 등에 의해서로 상이한 지점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면에 대한 대지에 적용되는 지점을 적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에 의한 미단자구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 준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에 의한 미단자구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 준수			
* 학교보건법 제6조(항상 및 시행령 제42조의2)의 상대 및 절대 정화구역에 불허용도 불허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 50m 이내			* 학교보건법 제6조(항상 및 시행령 제42조의2)의 상대 및 절대 정화구역에 불허용도 불허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 50m 이내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200m 이내 (단 상대정화구역은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 제외)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200m 이내 (단 상대정화구역은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 제외)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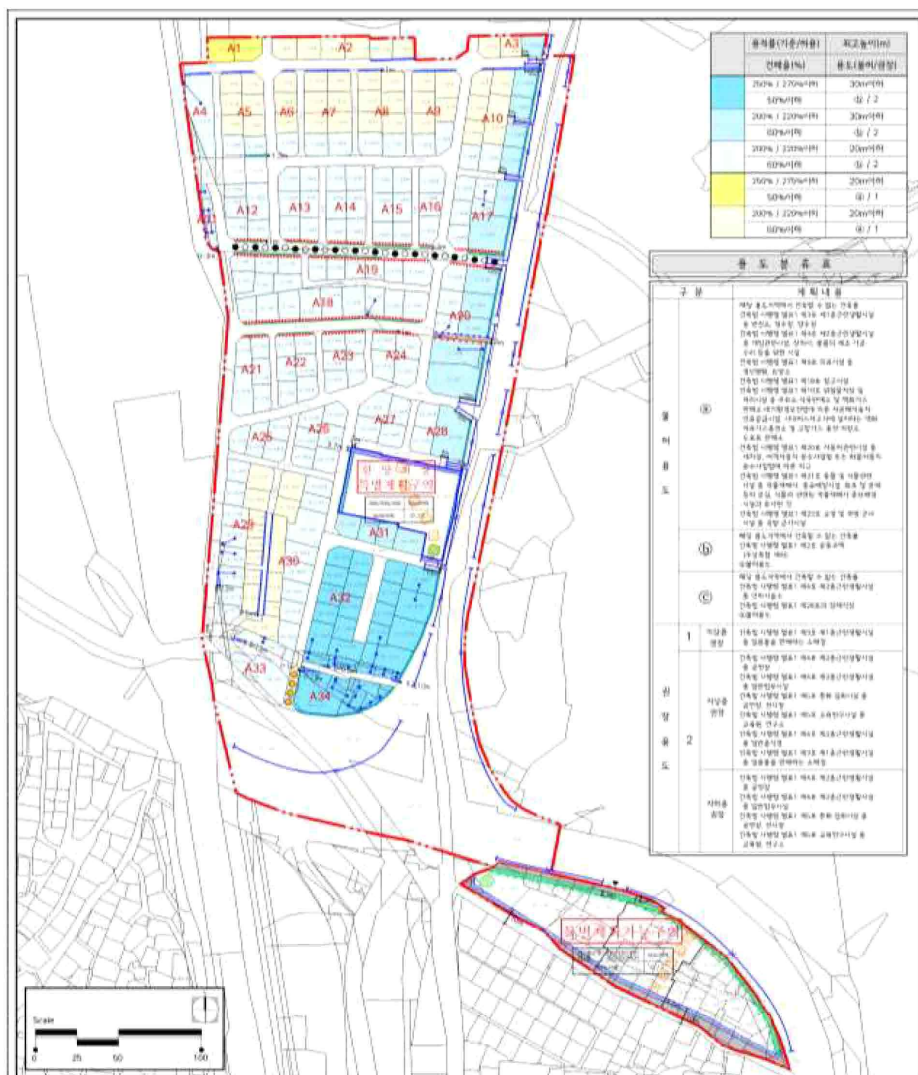


□ 성동구

○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구분	기정			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조서 가) 불허용도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㉔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경수장, 양수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계입관련시설, 장의사,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배설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작물·배설사 종묘배양시설과 유사한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㉔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경수장, 양수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계입관련시설, 장의사,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배설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작물·배설사 종묘배양시설과 유사한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㉕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주상복합 제외) • ㉔불허용도	—	㉕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㉔불허용도	—
	㉖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경매식장 • ㉔불허용도	—	㉖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경매식장 • ㉔불허용도	—

지구단위계획 총괄도

기
정

한양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기정)

지구단위계획 총괄(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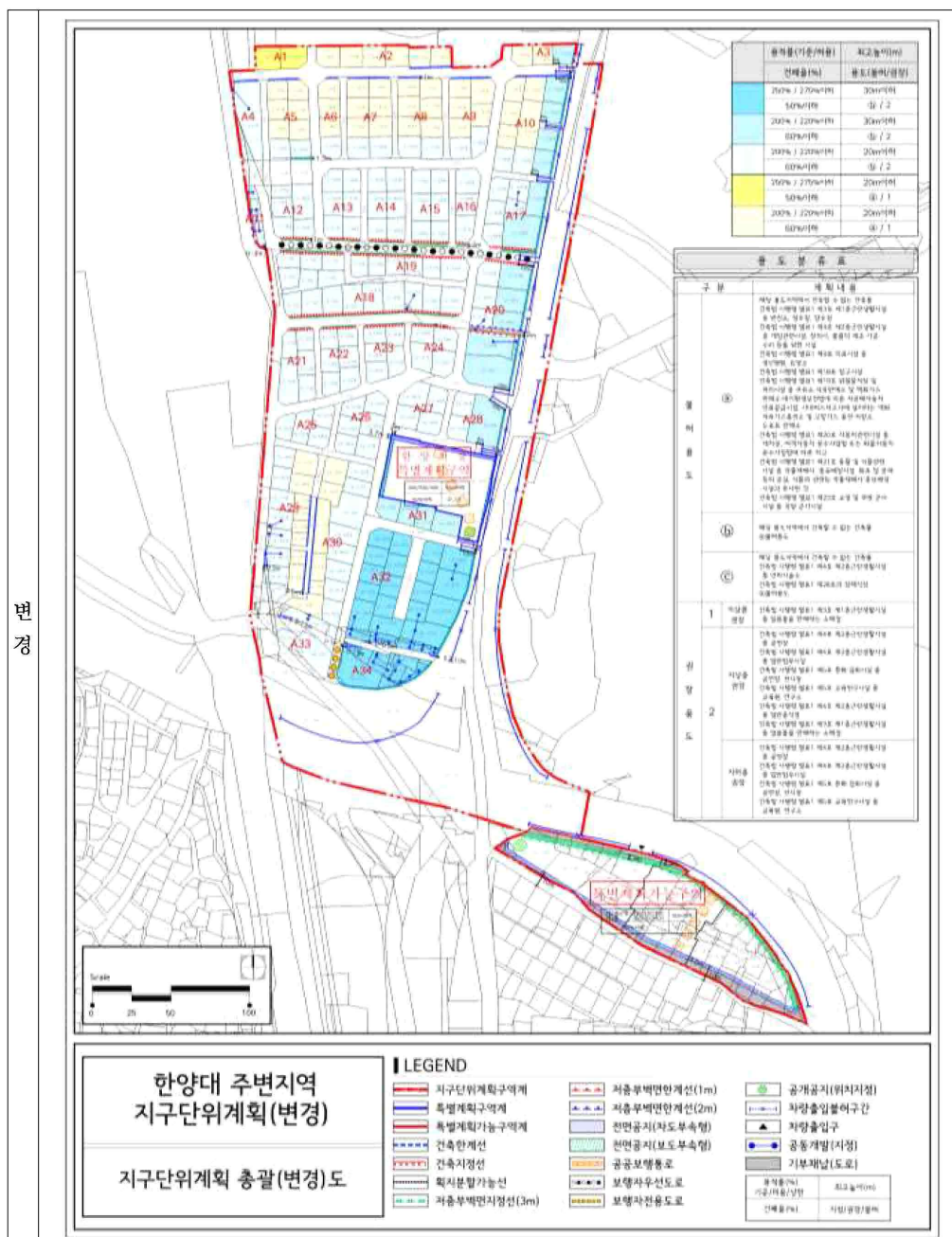
LEG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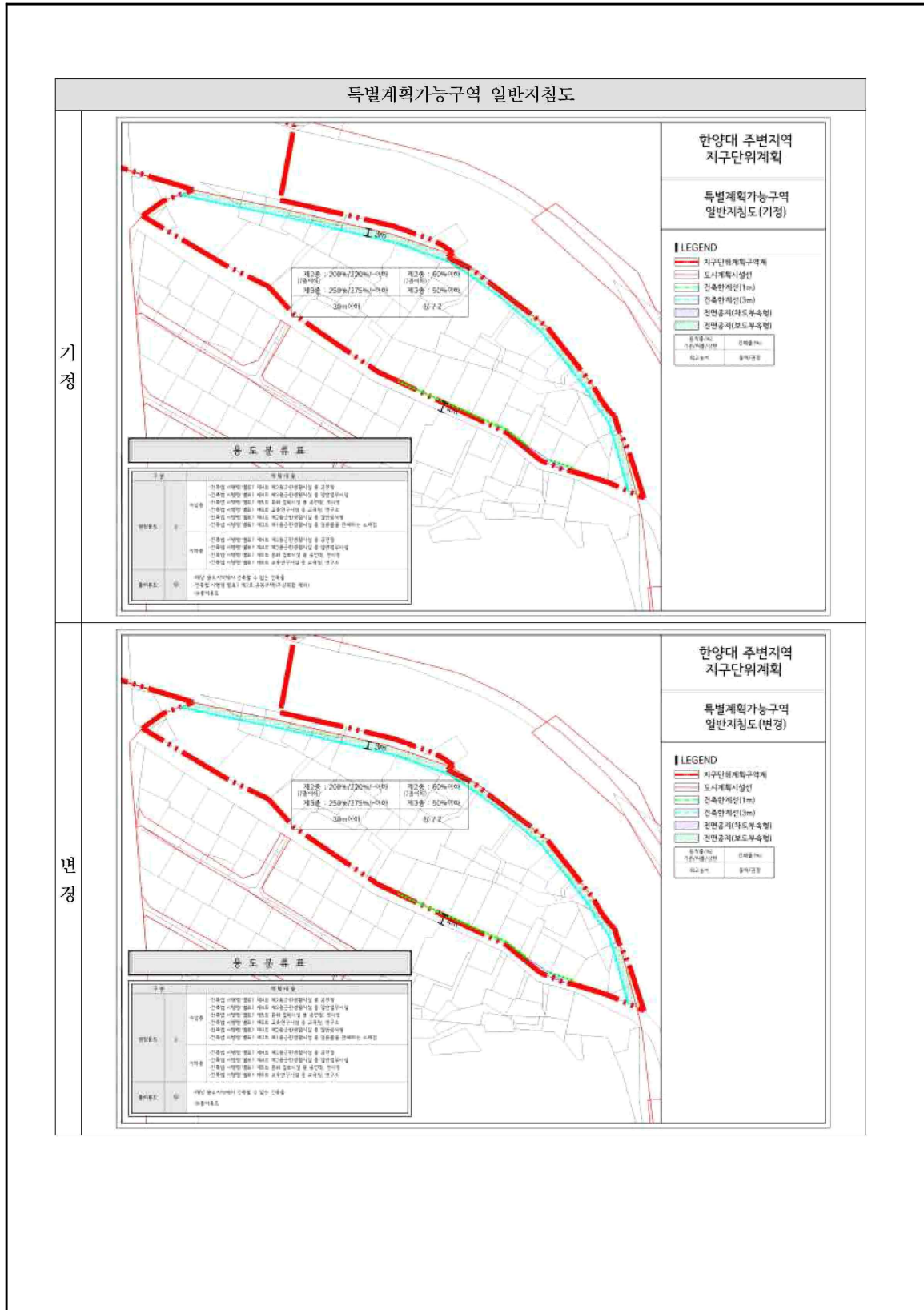
- | | | | | | |
|--------------|--|---------------|--|------------|--|
| 지구단위계획지구구역 | | 저층부면별지정선(1m) | | 공공기차(위자정지) | |
| 특별계획지구구역 | | 저층부면별지정선(2m) | | 차량통행허가구간 | |
| 특별계획지구구역 | | 전면금지차도부속형 | | 차량통행구간 | |
| 건축관련선 | | 전면금지차도(보도부속형) | | 공동통행(지정) | |
| 건축지정선 | | 공동보행로용 | | 기타특별(도로) | |
| 혁신마을가능선 | | 보행자우회도로 | | | |
| 저층부면별지정선(3m) | | 보행자우회도로 | | | |
- 보행자우회도로
전면금지차도(보도부속형)

공동보행로용
보행자우회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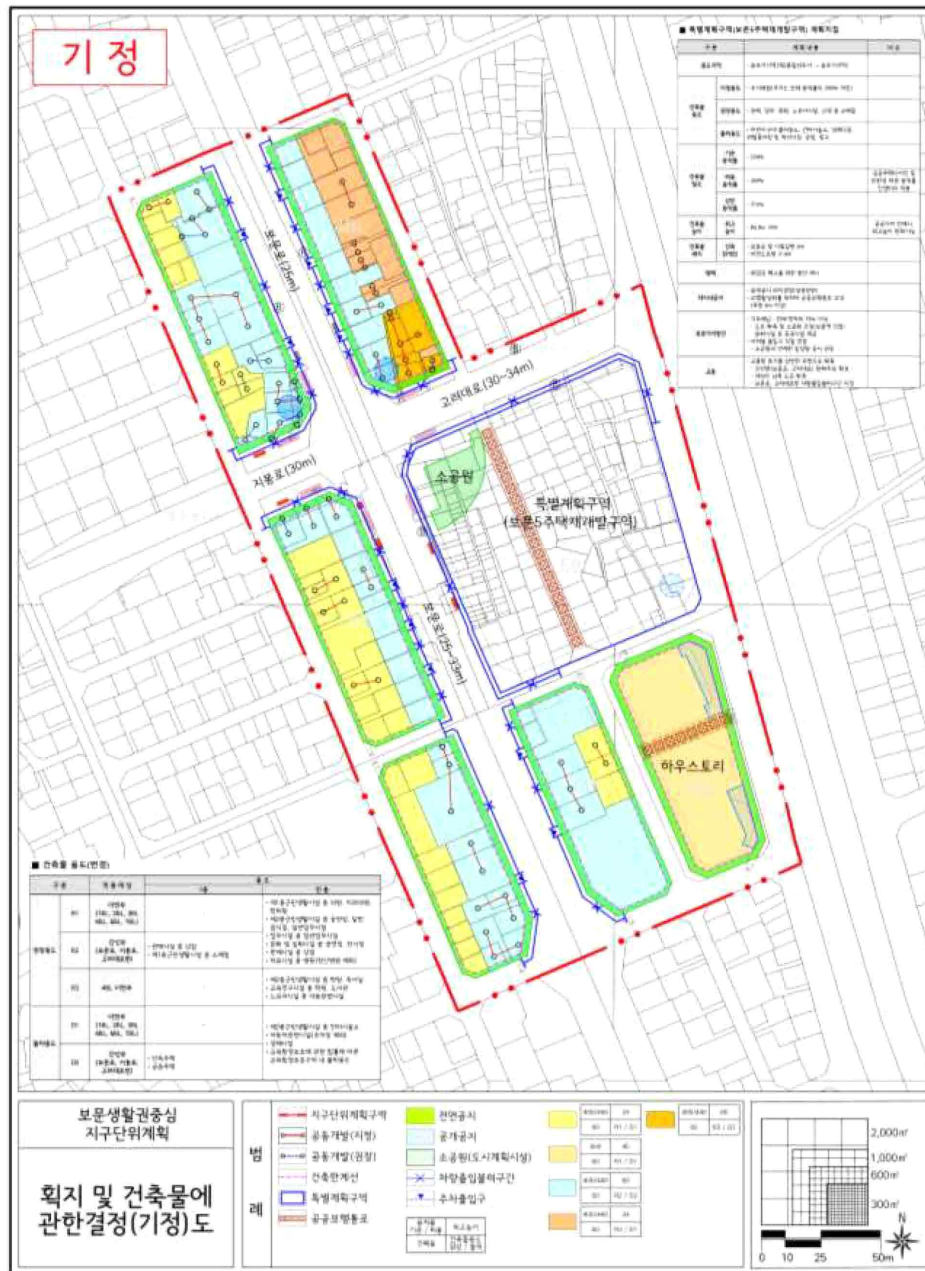
공동통행(지정)
기타특별(도로)

- | | |
|--------------------|----------|
| 부착물(%)
기공/저공/상면 | 최고농도(%) |
| 전해율(%) | 차입/공정/불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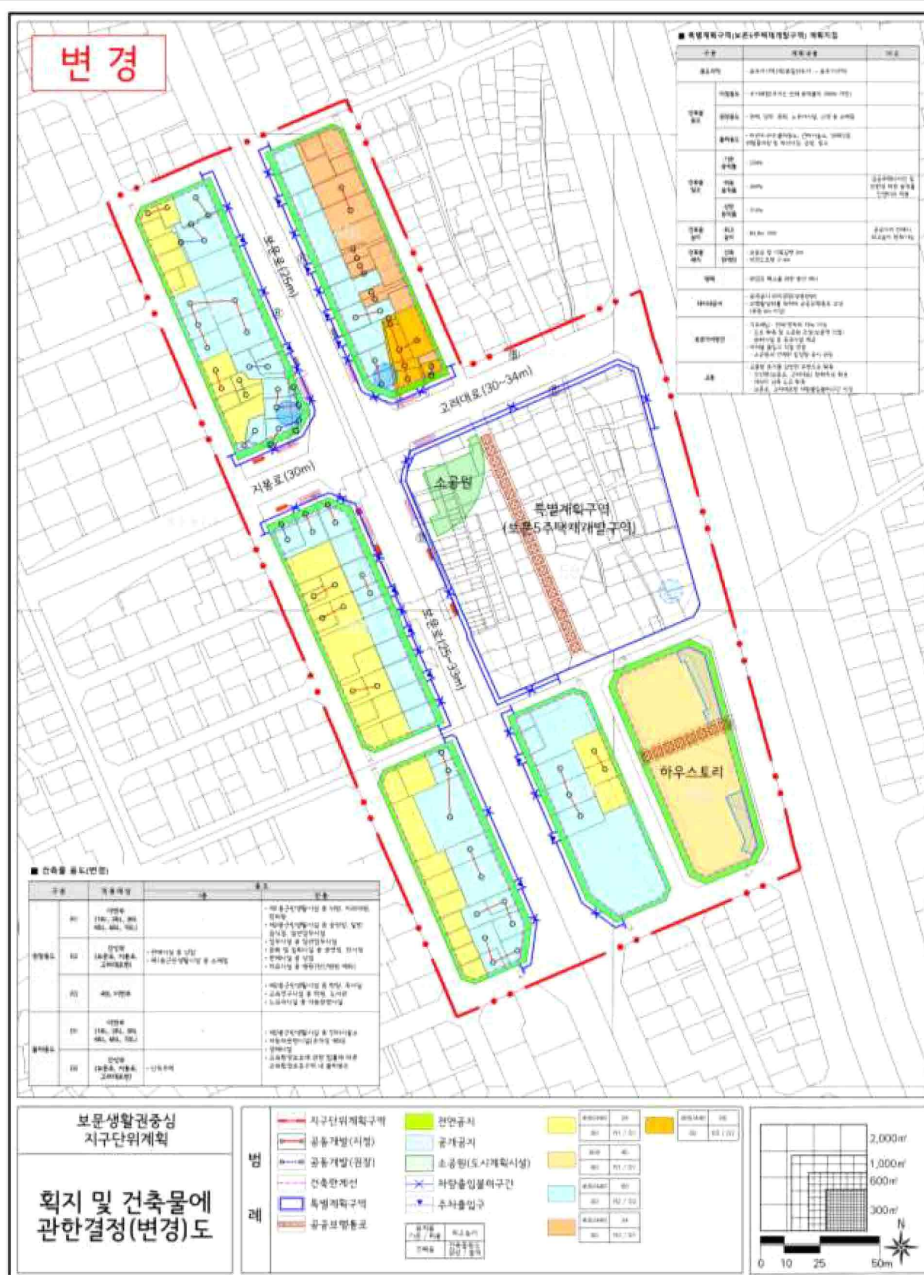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변경



○ 월곡생활권중심

구분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1) 불허용도	구역 전체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제조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마린 장외 발매소, 마린 전화부표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구역 전체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제조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마린 장외 발매소, 마린 전화부표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주거복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제조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제조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 월곡2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계획적용범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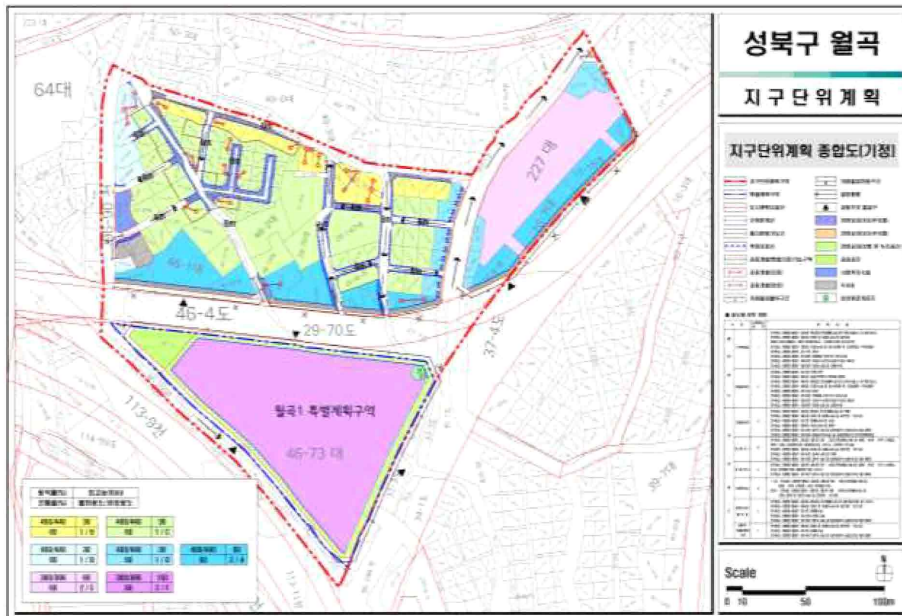
※ 월곡2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계획적용범위 변경

※ 월곡2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계획적용범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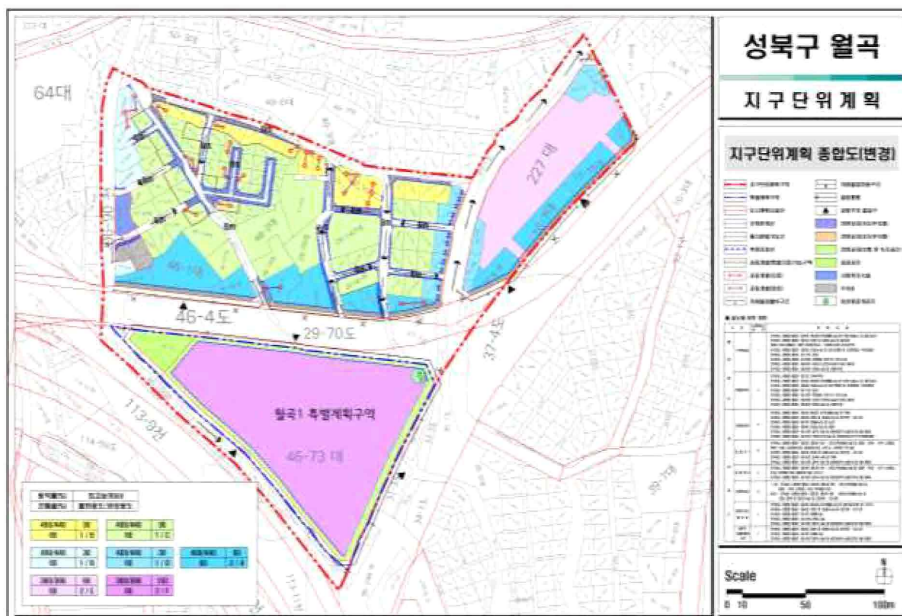
※ 월곡2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계획적용범위 변경

지구단위계획 중합도

기
정



변
경



○ 정릉생활권중심

구분	기정			
	구분		불허용도	비고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3.2 건축물에 관한 결정 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 정조서	간선부 (정릉로)	A	• 공장, 창고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정례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SR1
	간선부 (정릉로 외) 이면부	B	• 공장, 창고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정례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SR2, SR3
	아리랑 시장	C		
		• 대기업 프랜차이즈 • 공장, 창고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정례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SR4	

※ 상세한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상이한 용도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대지를 공동개발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용도제한규정을 적용

구분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간선부 (정릉로)	A	• 공장, 창고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정례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SR1
	간선부 (정릉로 외) 이면부	B	• 공장, 창고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정례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SR2, SR3
	아리랑 시장	C		
		• 대기업 프랜차이즈 • 공장, 창고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정례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SR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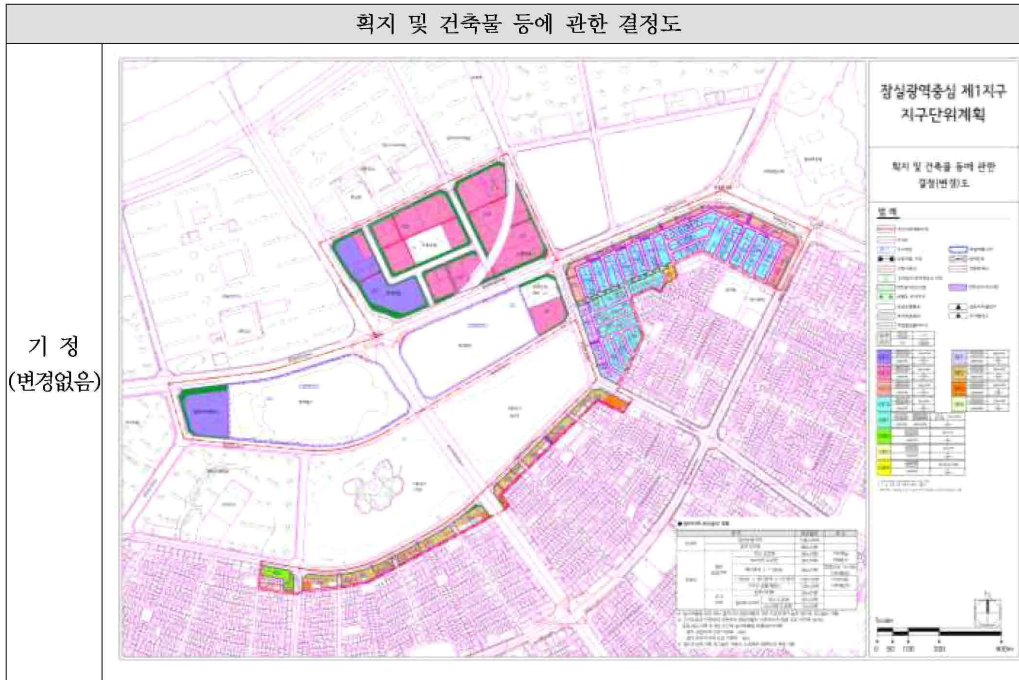
※ 상세한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상이한 용도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대지를 공동개발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용도제한규정을 적용

□ 송파구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구분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건축물의 불허용도(전층)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탁시설(관광숙박시설의 부대시설 제외, 단 학교관강위생정화구역 내의 관광숙박시설에 포함된 위탁시설은 불허)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객실링 및 베란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자 게임장 운영업 중 상인오락실(전자오락)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오락장 운영업 중 전화방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그 외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점 중 상인용품 소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경매사(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의료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위생물자장 및 차차시설(주유소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포함)	상업 지역 (간선변)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탁시설(관광숙박시설의 부대시설 제외, 단 학교관강위생정화구역 내의 관광숙박시설에 포함된 위탁시설은 불허)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객실링 및 베란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자 게임장 운영업 중 상인오락실(전자오락)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오락장 운영업 중 전화방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그 외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점 중 상인용품 소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경매사(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의료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위생물자장 및 차차시설(주유소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포함)	상업 지역 (간선변)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탁시설(관광숙박시설의 부대시설 제외, 단 학교관강위생정화구역 내의 관광숙박시설에 포함된 위탁시설은 불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경매사(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의료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위생물자장 및 차차시설(주유소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상업 지역 (이면부)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탁시설(관광숙박시설의 부대시설 제외, 단 학교관강위생정화구역 내의 관광숙박시설에 포함된 위탁시설은 불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경매사(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의료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위생물자장 및 차차시설(주유소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상업 지역 (이면부)
	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용 1.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허용 2. 준주거지역은 비주거용도가 용적률의 10% 이상인 주거복합건물인 경우 허용 (단, 석촌호수일변은 주거건물면적 30㎡ 미만 원룸형 도시정형주택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전용면적 30㎡ 이하 오피스텔 (석촌호수일변 준주거지역에 한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객실링 및 베란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자 게임장 운영업 중 상인오락실(전자오락)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오락장 운영업 중 전화방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그 외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점 중 상인용품 소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경매사(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의료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위생물자장 및 차차시설(주유소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주거 지역	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용 1.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전용면적 30㎡ 이하 오피스텔 (석촌호수일변 준주거지역에 한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객실링 및 베란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자 게임장 운영업 중 상인오락실(전자오락)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오락장 운영업 중 전화방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그 외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점 중 상인용품 소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경매사(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의료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위생물자장 및 차차시설(주유소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주거 지역
* 한국표준산업분류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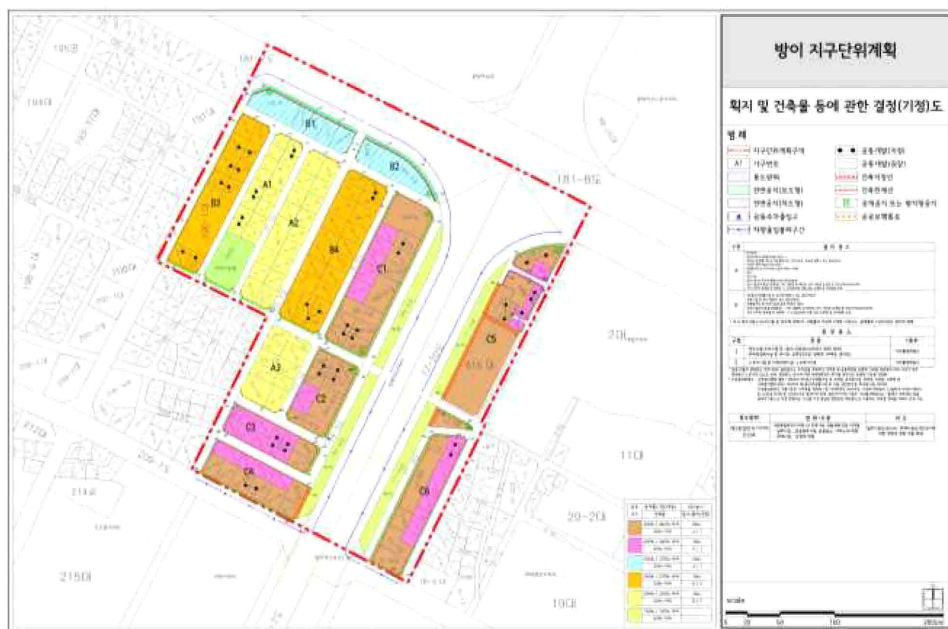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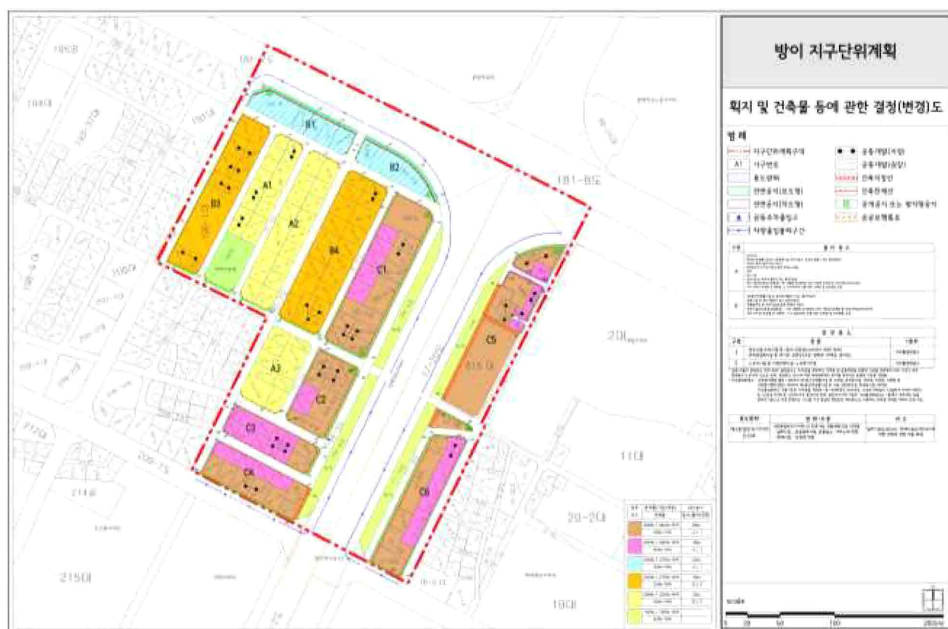
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경



○ 오금지구중심

구분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축폐물·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불허용도	A (간선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안마사술소,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도료류 판매소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제28호의 장례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 기타 캠핑 및 베링업 - 전자 게임장 운영업 중 성인오락실(전자오락) - 기타 오락장 운영업 중 전화방 - 그 외 분류 안 된 상품 전문 소매업 중 성인용품 소매	준주거 지역,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A (간선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안마사술소,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도료류 판매소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제28호의 장례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 기타 캠핑 및 베링업 - 전자 게임장 운영업 중 성인오락실(전자오락) - 기타 오락장 운영업 중 전화방 - 그 외 분류 안 된 상품 전문 소매업 중 성인용품 소매	준주거 지역,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B (이면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안마사술소,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도료류 판매소 제외) - 제23호의 교정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 기타 캠핑 및 베링업 - 전자 게임장 운영업 중 성인오락실(전자오락) - 기타 오락장 운영업 중 전화방 - 그 외 분류 안 된 상품 전문 소매업 중 성인용품 소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이하 포함)	B (이면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안마사술소,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도료류 판매소 제외) - 제23호의 교정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 기타 캠핑 및 베링업 - 전자 게임장 운영업 중 성인오락실(전자오락) - 기타 오락장 운영업 중 전화방 - 그 외 분류 안 된 상품 전문 소매업 중 성인용품 소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이하 포함)

주1)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가 건축물의 지상부 2개층 이상이고, 용적률의 15%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각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계획에 따르며, 공동주택용지는 별도 결정

※ 역세권 관련사업(역세권 활성화사업, 역세권 복합 개발 등), 모아주택 등 별도 개별사업 추진 시 해당 법 및 지침을 따름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불허용도 및 지구단위계획에서의 불허용도를 따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준수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각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계획에 따르며, 공동주택용지는 별도 결정

※ 역세권 관련사업(역세권 활성화사업, 역세권 복합 개발 등), 모아주택 등 별도 개별사업 추진 시 해당 법 및 지침을 따름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불허용도 및 지구단위계획에서의 불허용도를 따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준수

구분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7중이하 포함)	200% 이하	200% 이하	법적	—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250% 이하	용적률의	
준주거지역	300% 이하	400% 이하	2배 이하	
용도지역 상향 가능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주1)}	250% 이하	300% 이하	대지규모 650㎡~1,000㎡ 미만 공동개발 시
		250% 이하	350% 이하	대지규모 1,000㎡ 이상 공동개발 시
특별계획 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250% 이하	350% 이하	400% 이하
특별계획 가능구역 포함 →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2)}	200% 이하	250% 이하	250% 이하	불특단위 개발 시
주1) 용도지역 상향가능지의 용도지역 변경 시 적용(대지규모 650~1,000㎡ 또는 1,000㎡ 이상 공동개발 시)				
주2) 특별계획가능구역의 불특단위개발 시 적용(공동주택으로 건립할 경우 공동주택 건립형 기준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각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에 따르며, 공동주택용지는 별도 결정				
※ 역사권 관련사업(역세권 활성화사업, 역사권 복합개발 등), 모아주택 등 별도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법 및 지침을 따름				
※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용적률의 15% 이상, 지상층 2개층 이상 계획				
※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용적률·높이) 2) 용적률 계획

구분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7중이하 포함)	200% 이하	200% 이하	법적	—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250% 이하	용적률의	
준주거지역	300% 이하	400% 이하	2배 이하	
용도지역 상향 가능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주1)}	250% 이하	300% 이하	대지규모 650㎡~1,000㎡ 미만 공동개발 시
		250% 이하	350% 이하	대지규모 1,000㎡ 이상 공동개발 시
특별계획 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250% 이하	350% 이하	400% 이하
특별계획 가능구역 포함 →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2)}	200% 이하	250% 이하	250% 이하	불특단위 개발 시

주1) 용도지역 상향가능지의 용도지역 변경 시 적용(대지규모 650~1,000㎡ 또는 1,000㎡ 이상 공동개발 시)
주2) 특별계획가능구역의 불특단위개발 시 적용(공동주택으로 건립할 경우 공동주택 건립형 기준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각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에 따르며, 공동주택용지는 별도 결정
※ 역사권 관련사업(역세권 활성화사업, 역사권 복합개발 등), 모아주택 등 별도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법 및 지침을 따름

○ 개 룹

구 분	기 정			변 경		
	구 분	전용 불허용도	비 고	구 분	전용 불허용도	비 고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건축물의 불허용도	A (간단부)	• 단독주택,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성인시설 (주1)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안마원 등),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주2)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창고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주3)	—	A (간단부)	• 단독주택, 성인시설 (주1)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안마원 등),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주2)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창고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주2)	—
	B (이단부)	• 성인시설(주1) •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주2)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주2) • 교정시설	—	B (이단부)	• 성인시설(주1) •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주2)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주2) • 교정시설	—
* 주1) 성기구취업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주2) 외부벽 등과 같은 건축구조물로 소음 및 조명시설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축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함.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경



○ 옛 성동구치소 부지

구분		계획내용	
구분		기정	변경
도면번호		②	확대
면적		5,966.5㎡	확대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확대
건축물 용도	불허	•지정용도 및 권정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확대
	주거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부대편리시설	확대
	주거외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촬영이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자랑), 경의사, 종로판매사, 단판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운동시설(옥외촬영이있는 골프연습장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확대
	1층 권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확대
	건폐율	•60% 이하	확대
용적률		•기준 200% 이하 / 하용 280% 이하 / 상한 400% 이하 ※ 先 공공기여계획 이행을 통해 상한용적률인센티브(120%)는 달성된 것으로 봄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며, 최종 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주거외 용도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 계획	•기준 200% 이하 / 하용 280% 이하 / 상한 400% 이하 ※ 先 공공기여계획 이행을 통해 상한용적률인센티브(120%)는 달성된 것으로 봄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며, 최종 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건축물 높이		•90m 이하(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범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적용 준수)	확대
배치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획지③ 인접부대지경계선으로부터4m	확대
	중층 배치구간	•획지④ 인접부 공공보행통로로부터중층 배치구간(17층) 폭 23m 지정	확대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폭 8m) 설치(위치지정)	확대
교통처리계획		•오금로38길변(북측) 및 각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확대
기타사항		•공동주택용지1과 공동주택용지2가 하나의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스카이라인 고려	확대

②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결정
3. 특별계획
구역에 관한
결정
나. 특별계획
구역 계획지
침
2) 특별계획
구역②(공동
주택용지1)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경없음)



□ 영등포구

○ 신길6생활권

구분	기정		변경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가) 건축물 용도계획 ② 불허용도에 관한 계획	구분	전층 불허용도	1층 불허용도	구분	전층 불허용도	1층 불허용도
	A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전층 불허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및 수도·난방, 페인트, 유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소매점	A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전층 불허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및 수도·난방, 페인트, 유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소매점
	B	• 학교환경위생 적대경화구역내 불허용도 • 안마시술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으로 타이어·밧데리 등과 같은 자동차관련의 소매점	B	• 학교환경위생 적대경화구역내 불허용도 • 안마시술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으로 타이어·밧데리 등과 같은 자동차관련의 소매점
	C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주택	C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단독주택
	(주) 자동차관련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열거된 사항들로,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등을 말한다.			(주) 자동차관련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열거된 사항들로,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등을 말한다.		

○ 신풍지구

구분	기정			변경		
	구분	전층 불허용도	1층 불허용도	구분	전층 불허용도	1층 불허용도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가) 건축물 용도계획 ② 불허용도에 관한 계획	A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전층 불허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및 수도·난방, 페인트, 유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소매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으로 타이어·맞테리 등과 같은 자동차관련의 소매점 - 주택	A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전층 불허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및 수도·난방, 페인트, 유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소매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으로 타이어·맞테리 등과 같은 자동차관련의 소매점 - 단독주택
	B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안마시설소	전층 불허용도와 동일	B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안마시설소	전층 불허용도와 동일
(참) 자동차관련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열거된 사항들로,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등을 말한다.				(참) 자동차관련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열거된 사항들로,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등을 말한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신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기 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만 계획결정이 유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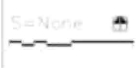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2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3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4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변
경

신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 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만 계획결정이 유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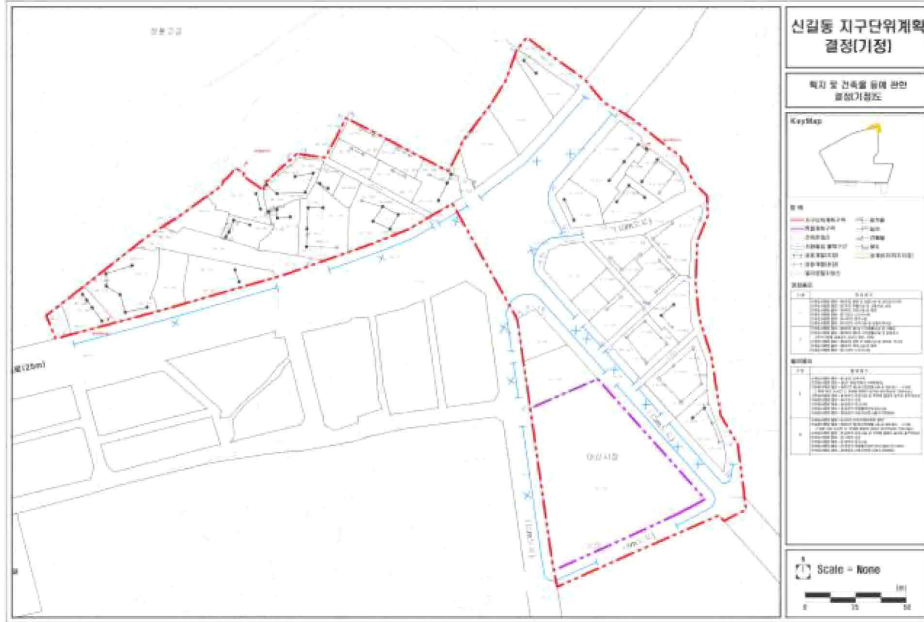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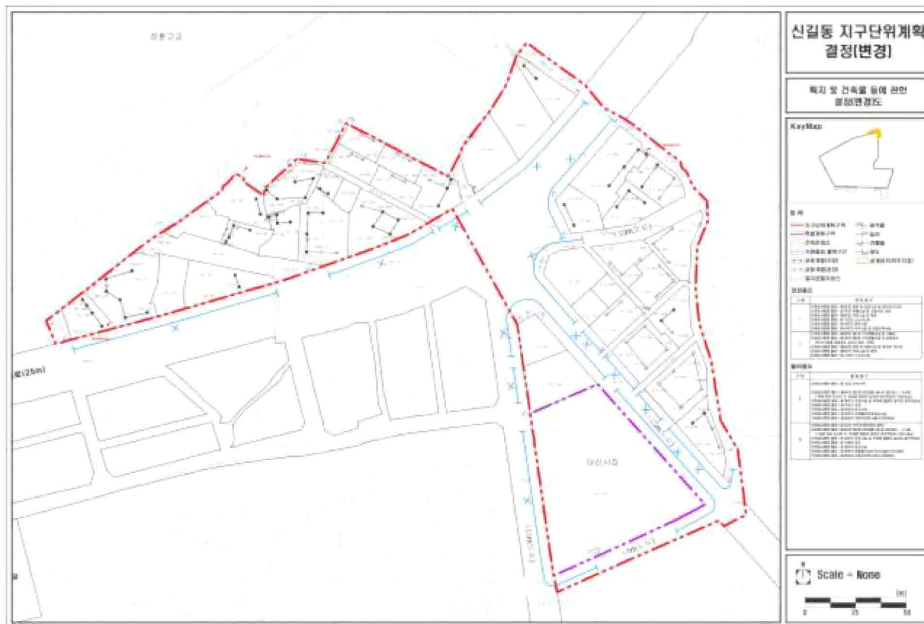
구분	기정			변경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불허용도 계획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A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2조업소·수리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안마시설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제외)	준주거지역 전면부	A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2조업소·수리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안마시설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제외)	준주거지역 전면부
	B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이면부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2조업소·수리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안마시설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준주거지역 이면부 일반주거지역	B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이면부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2조업소·수리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안마시설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준주거지역 이면부 일반주거지역
※ 특별계획구역은 별도 지침 적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미관지구는 해당 불허용도 입지 불가				※ 특별계획구역은 별도 지침 적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미관지구는 해당 불허용도 입지 불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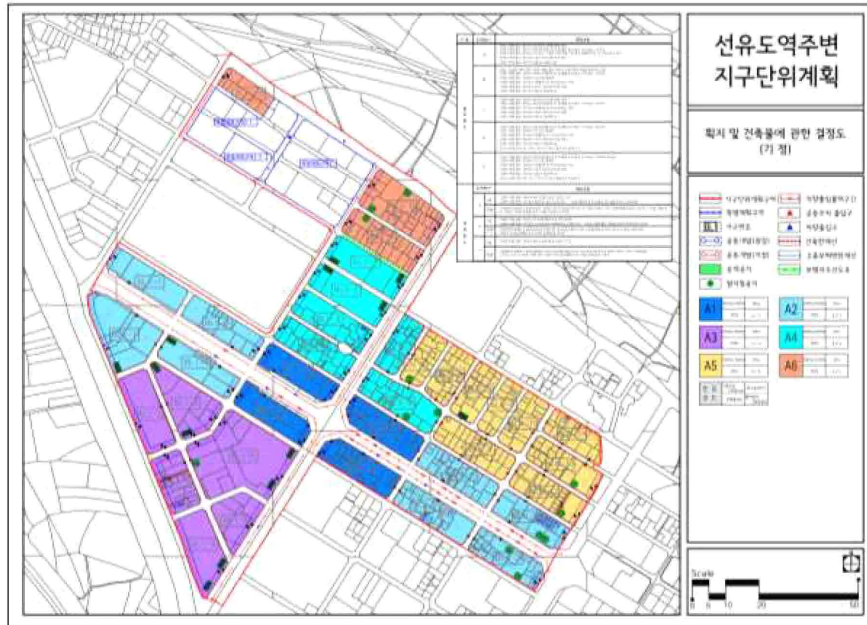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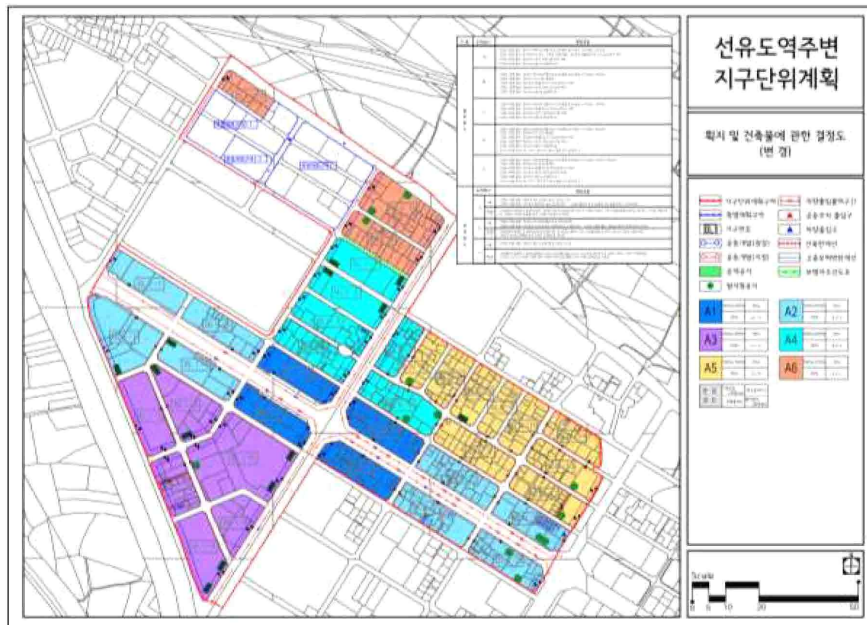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
경



○ 당산지구중심

구분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 · 건축물 불허용도계획	A 간선부 (교차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상복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간선 가로변	A 간선부 (교차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방 및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5호 가목7) 내지9)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간선 가로변
	B 간선부 (가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방 및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5호 가목7) 내지9)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간선 가로변	B 간선부 (가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방 및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5호 가목7) 내지9)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간선 가로변
	C 이면부 (준공업 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옥외철타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5호 가목7) 내지9)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이면 가로변	C 이면부 (준공업 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옥외철타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5호 가목7) 내지9)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이면 가로변
	D 이면부 (준주거 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복합용도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시행령제10호 제1항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5호 가목7) 내지9)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이면 가로변	D 이면부 (준주거 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복합용도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시행령제10호 제1항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5호 가목7) 내지9)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이면 가로변
	E (특별 계획구역)	- 공동주택(주상복합 제외)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공방 - 창고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특별 계획구역 (기개발 완료)	E (특별 계획구역)	- 공동주택(주상복합 제외)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공방 - 창고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특별 계획구역 (기개발 완료)
주) 1. 관계법령(용도지역, 미관지구 등)에 따른 불허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 2.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공동주택 건축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따름						
주) 1. 관계법령(용도지역, 미관지구 등)에 따른 불허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 2.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공동주택 건축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따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경



□ 용산구

○ 이태원로 주변

구분	기정			변경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나. 불허용도	구 분		불허용도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A	간선 가로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용도와 복합된 것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7호의 공장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전층	A	간선 가로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7호의 공장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전층
			B				이면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축금지 용도 불허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축금지 용도 불허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축금지 용도 불허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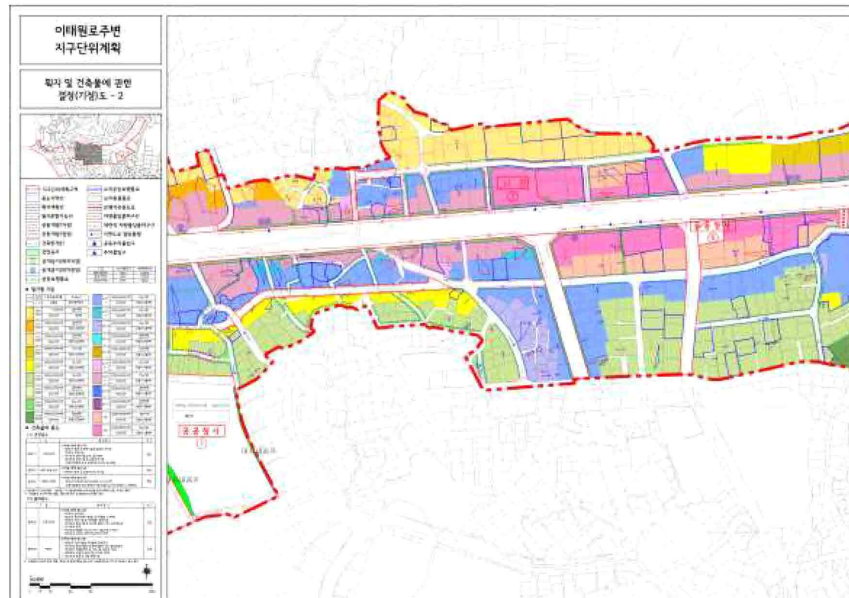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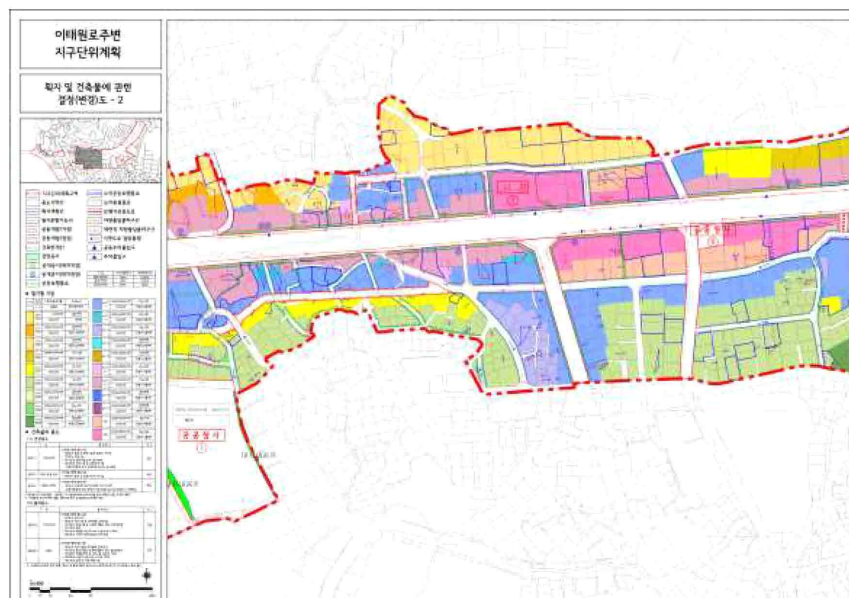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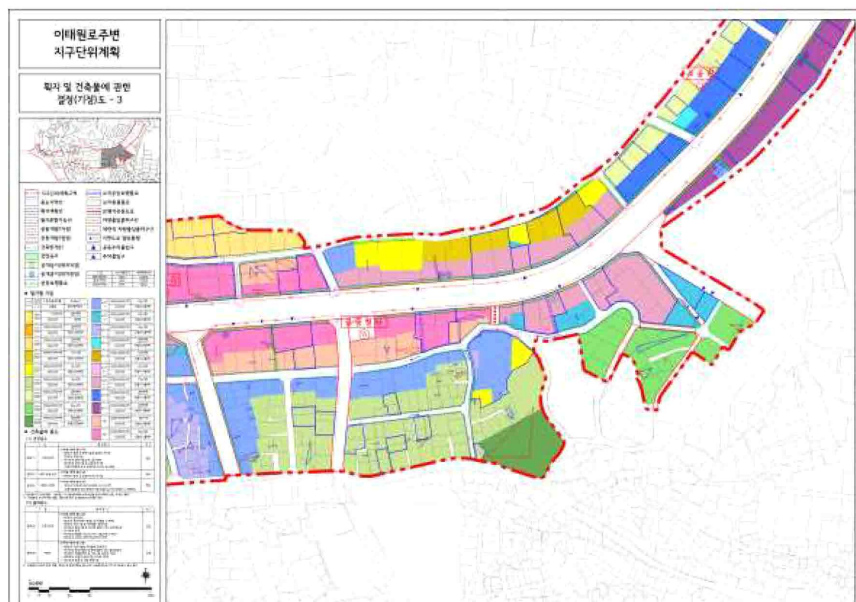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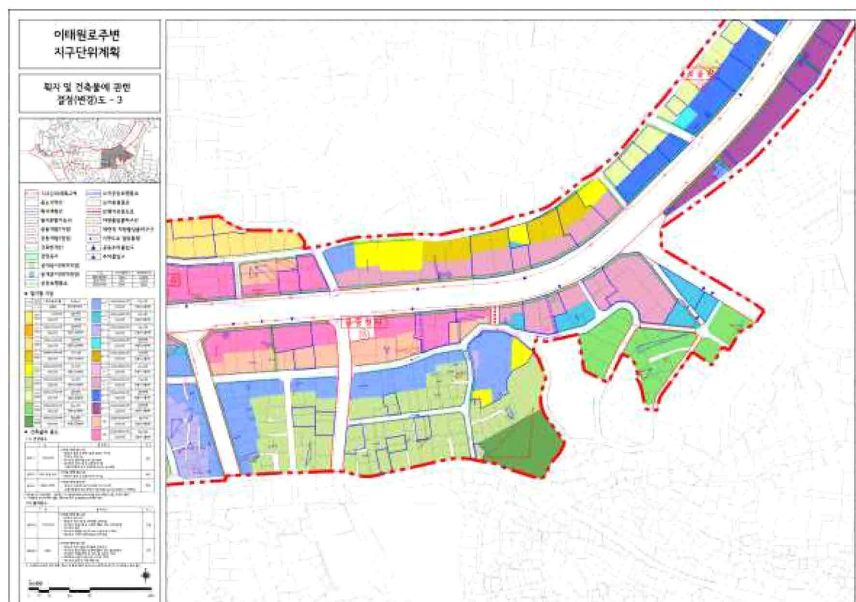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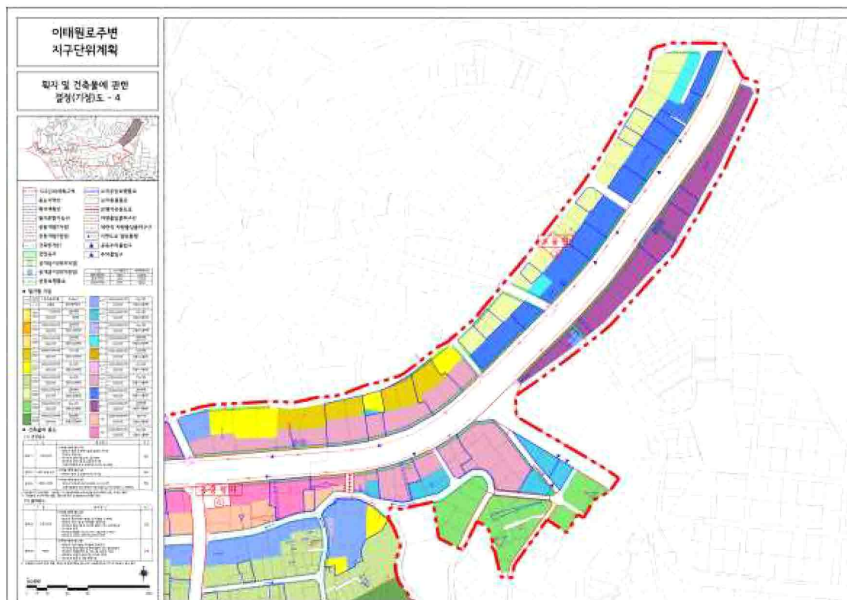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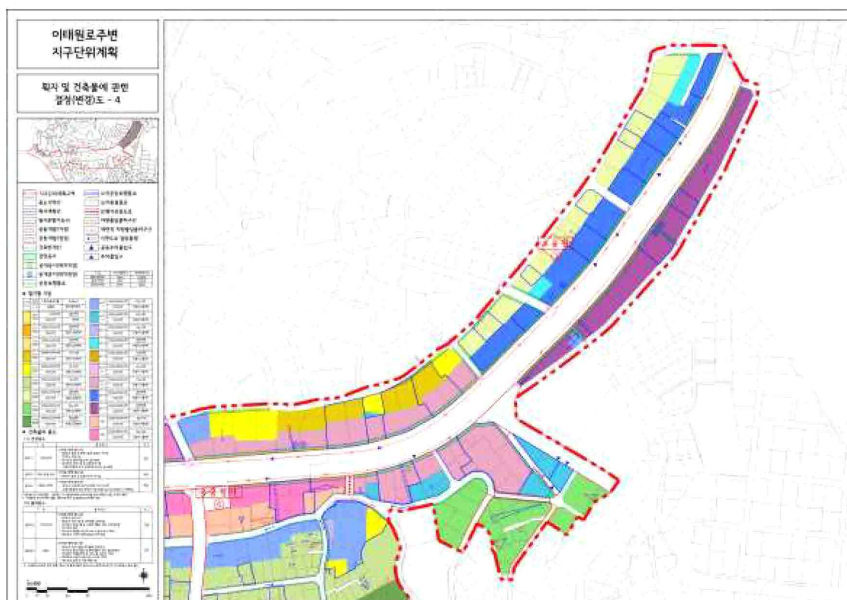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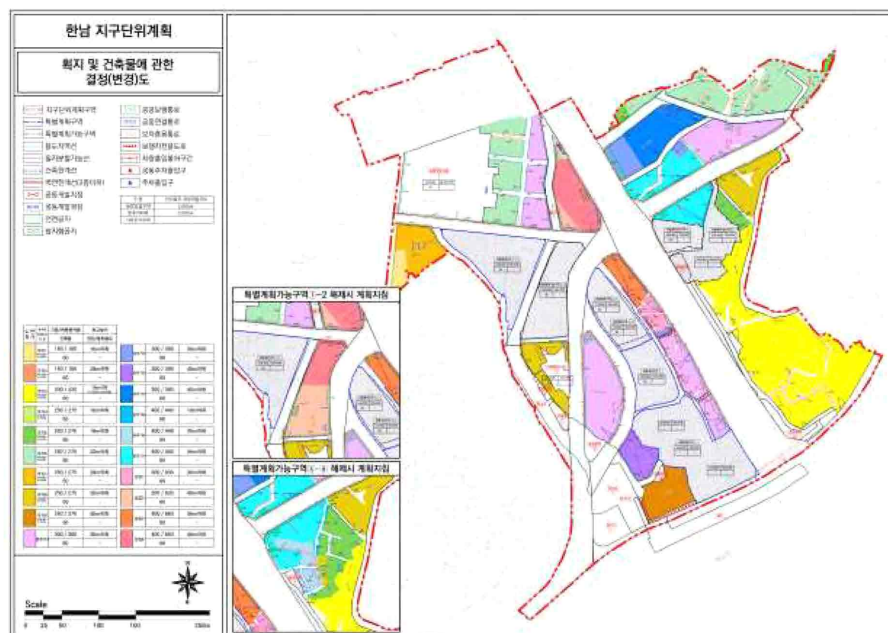


변경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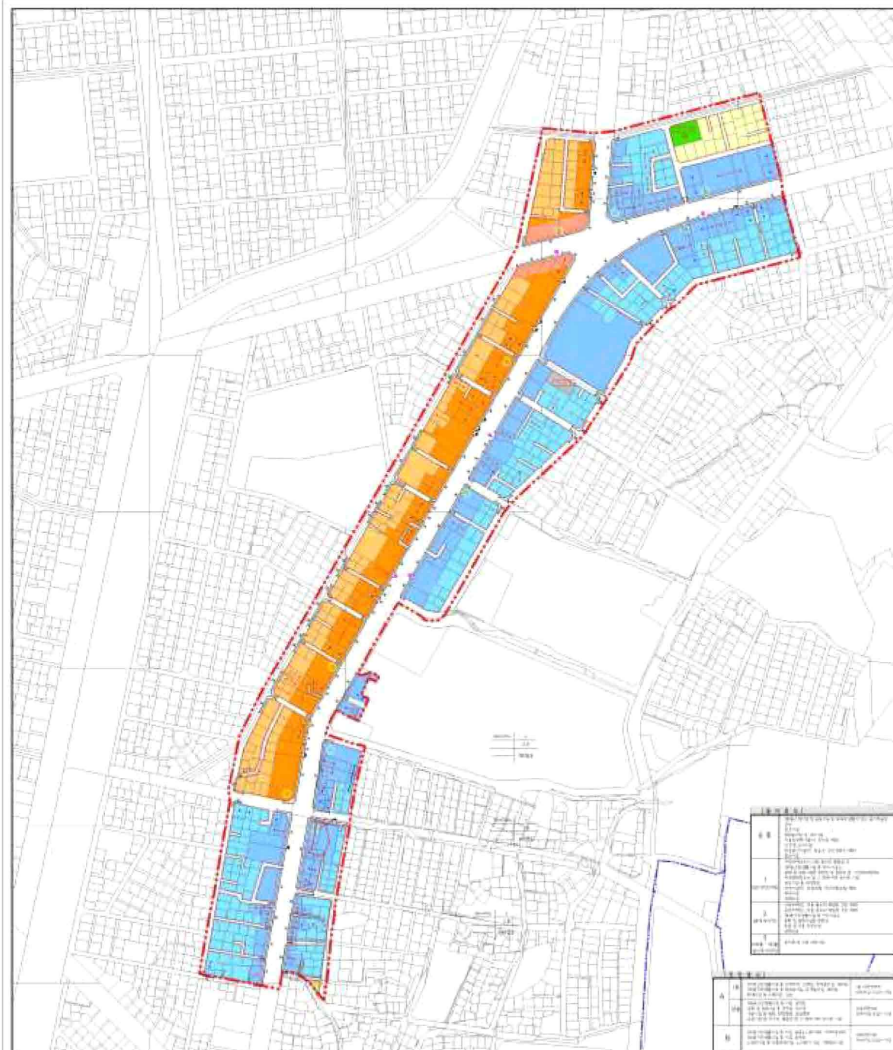
□ 은평구

○ 응암로

구분	기정		변경	
III.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계획	■ 안전한 보행(생활중심)가로 조성을 위한 부적합 용도 규제 ■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제38조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용도 불허 ■ 불허용도가 다른 필지 간 공동개발시 민간부문시행지침 제10조에 정한 규정을 적용		■ 안전한 보행(생활중심)가로 조성을 위한 부적합 용도 규제 ■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제38조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용도 불허 ■ 불허용도가 다른 필지 간 공동개발시 민간부문시행지침 제10조에 정한 규정을 적용	
	구분	공동사항	불허용도 (전충)	
일반 상업 지역 1	일반 상업 지역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의 집회장 중 마관경외발매소 마관전화투표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과 다목적 관람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제외) - 위탁시설 - 강제식장	
	준주거 지역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단, 방송국, 전신전화국 제외)	- 단독주택(단,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강제식장	
	제2종·제3종 일반 주거 지역	발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일반 상업 지역 1	일반 상업 지역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의 집회장 중 마관경외발매소 마관전화투표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과 다목적 관람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제외) - 위탁시설 - 강제식장	
	준주거 지역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단, 방송국, 전신전화국 제외)	- 단독주택(단,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강제식장	
	제2종·제3종 일반 주거 지역	발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주) 1. 학교위생정화구역 저촉시 관련규정 준수(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 2.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규정 준수(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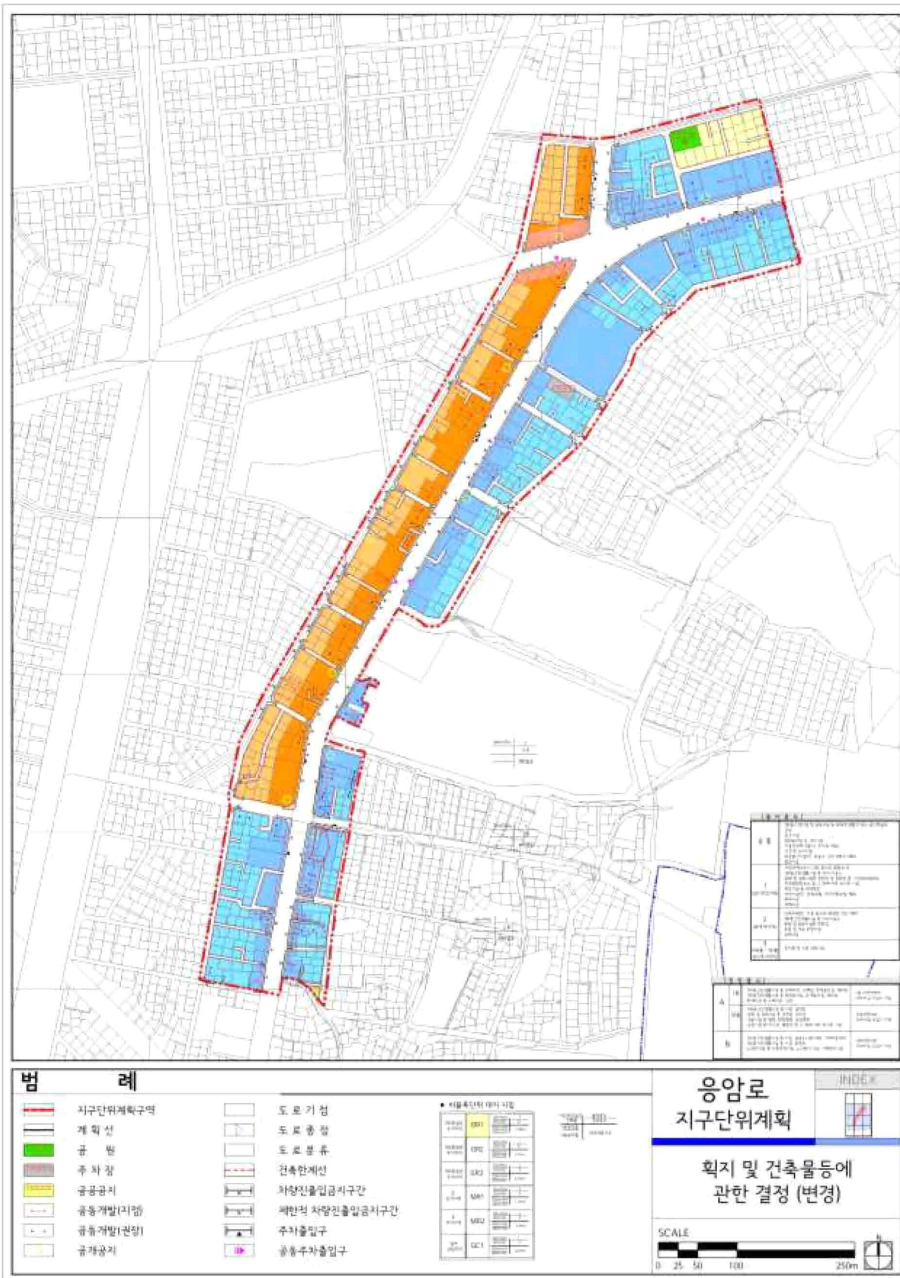
범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기점
계획선	도로종점
공원	도로분류
주차장	건축한계선
공공공지	차량진입입금지구간
공동개발(지점)	제한적 차량진입입금지구간
공동개발(전당)	주차물일구
공동공지	공동주차물일구

응암로 지구단위계획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기정)

SCALE 0 25 50 100 2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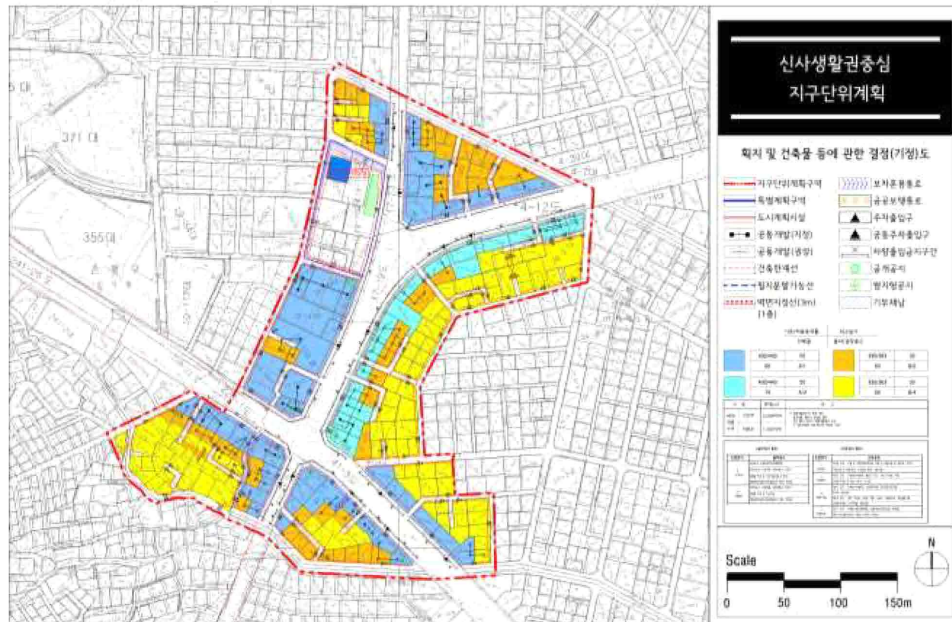


○ 신사생활권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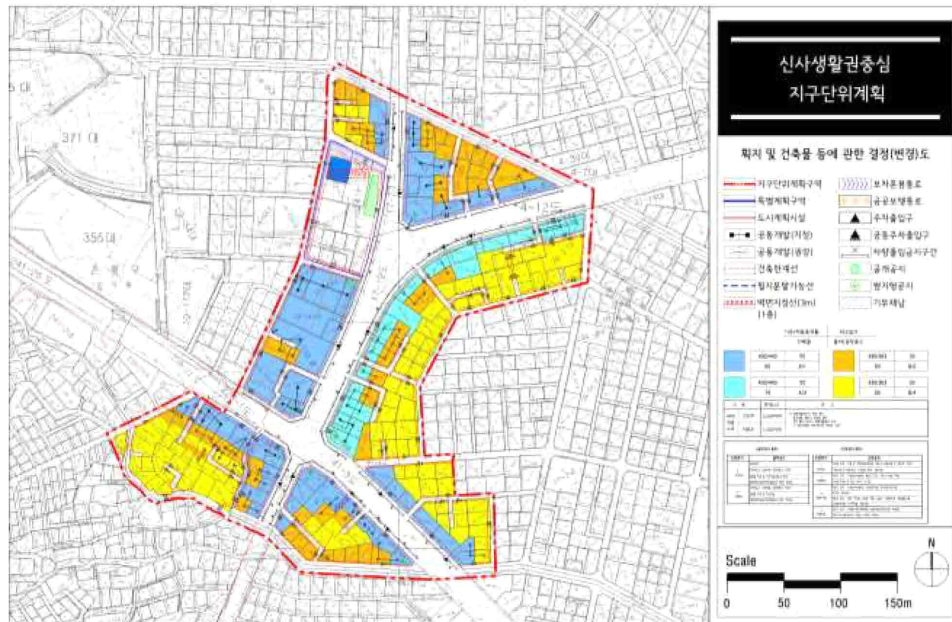
구분	기정			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A (간선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단, 주상복합은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조업, 게임관련시설(청소년게임업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	A (간선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조업, 게임관련시설(청소년게임업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
	B (이면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조업, 게임관련시설(청소년게임업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B (이면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조업, 게임관련시설(청소년게임업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참조 2. 불허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본 지침에서 불허하는 용도임 3. 불허A와 공동개발 이행시 불허A의 용도기준을 따름			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참조 2. 불허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본 지침에서 불허하는 용도임 3. 불허A와 공동개발 이행시 불허A의 용도기준을 따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
경



□ 종로구

○ 이화동 일대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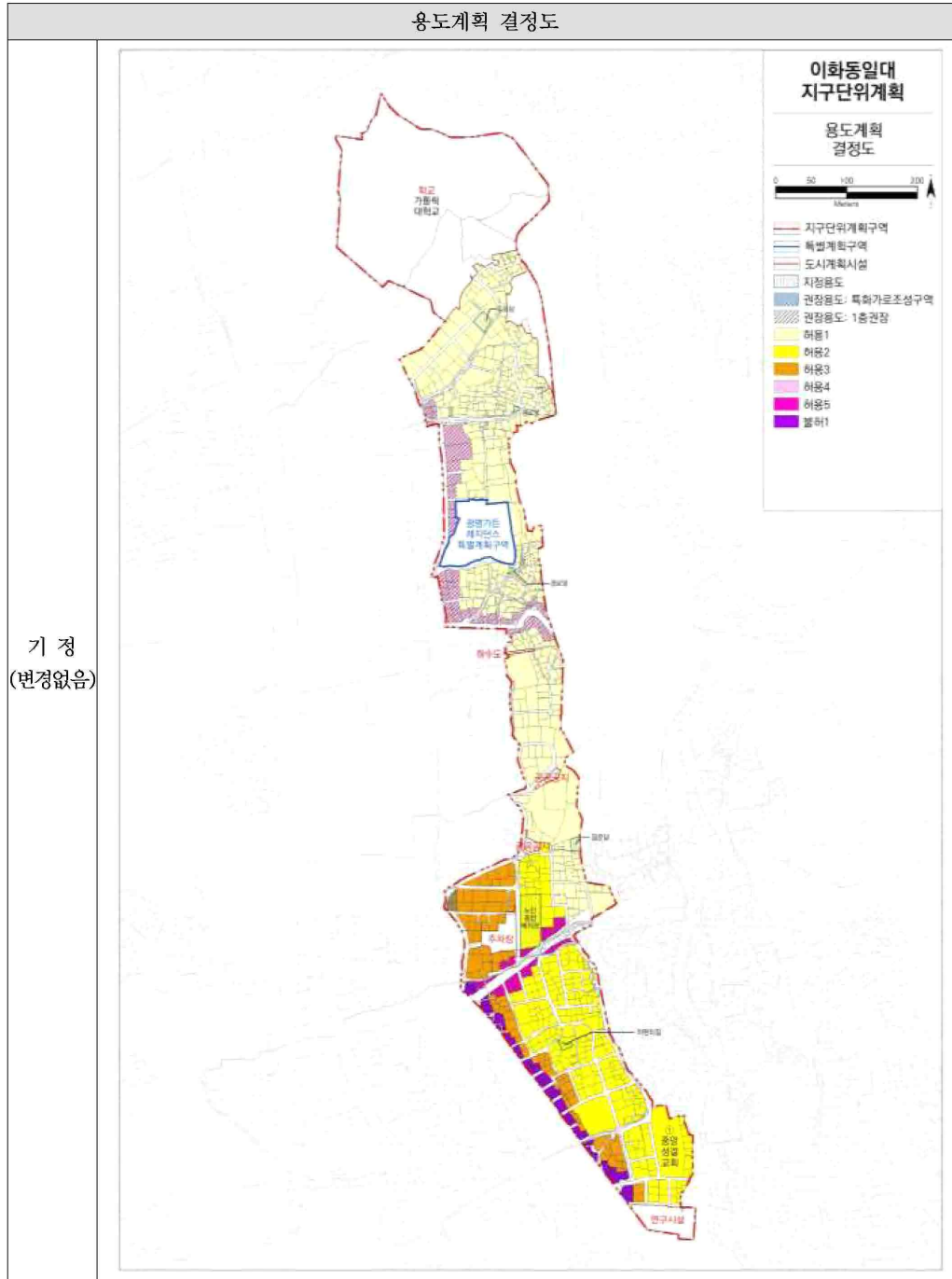
기정

변경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4) 불허용도

도면 표시	적용 구역	전용 불허용도		적용기준
		대분류	소분류	
불허1	가로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1층 권장용도 설치 시 허용 (주거용도는 전체면적의 70%를 넘지 않아야 함)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라. 공관	1층 권장용도 설치 시 허용 (주거용도는 전체면적의 70%를 넘지 않아야 함)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1층 전면 불허
			라. 기숙사	
			가. 공연장(연예장, 서커스장)	
		제2종근린 생활시설	마. 충포관개소	1층 전면 불허
			사. 청소년게입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입제공업소, 인터넷퓨터게입시설제공업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게입 관련 시설	
			차. 경의사	
			파. 테니스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1층 권장용도 설치 시 허용
			가.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타. 단란주점	
		문화 및 집회시설	리. 안마사술소	1층 전면 불허
			리. 노래연습장	
			나. 집회장(공회당, 마권(馬券)장의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숙박시설	마.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일반상업지역 내 1층 권장용도 설치 시 허용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및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및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종교시설, 운수시설, 발전시설, 경레식장		—

도면 표시	적용 구역	전용 불허용도		적용기준
		대분류	소분류	
불허1	가로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1층 권장용도 설치 시 허용 (주거용도는 전체면적의 70%를 넘지 않아야 함)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	—
			가. 공연장(연예장, 서커스장)	
			마. 충포관개소	
		제2종근린 생활시설	사. 청소년게입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입제공업소, 인터넷퓨터게입시설제공업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게입 관련 시설	1층 전면 불허
			차. 경의사	
			파. 테니스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가.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1층 권장용도 설치 시 허용
			타. 단란주점	
			리. 안마사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리. 노래연습장	1층 전면 불허
			나. 집회장(공회당, 마권(馬券)장의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마.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및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일반상업지역 내 1층 권장용도 설치 시 허용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및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종교시설, 운수시설, 발전시설, 경레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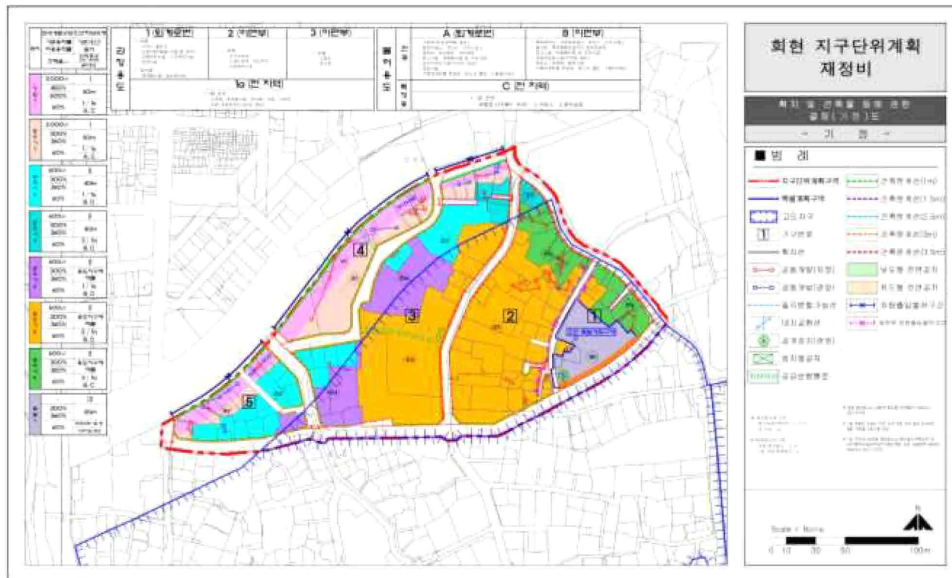
□ 중구

○ 회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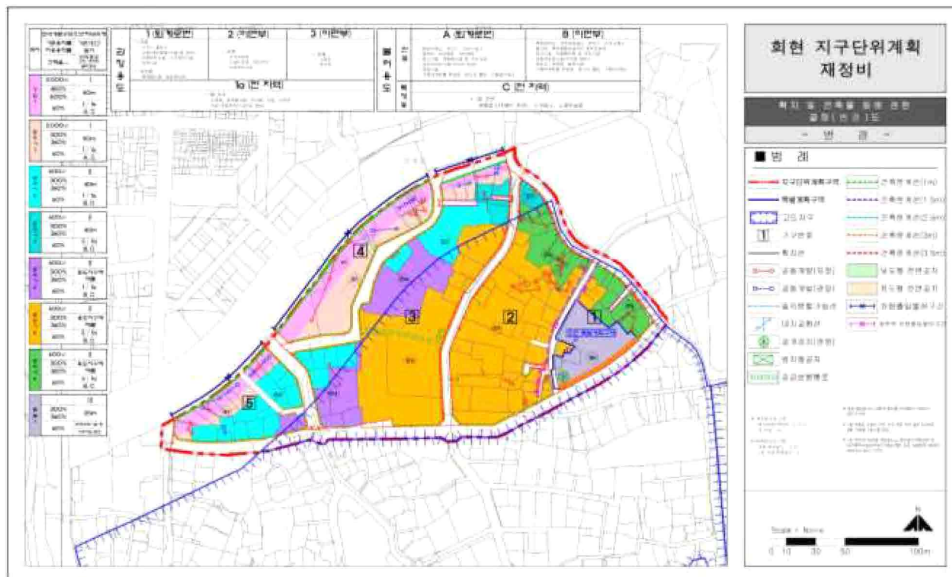
구분		기정		변경	
		구 분	전층 불허용도	1층 전면 불허용도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가) 불허용도 (1) 불허용도 결정조서	일반상업 지역, 준주거지역 일부 (퇴계로변)	A	• 공동주택 (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포판매소, 경의사, 안마시술소 • 종교시설 중 봉안당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장례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시행령제100조 제1항 제1호 내지 9)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	
	준주거지역 (이면부)	B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포판매소, 게임제공업소, 경의사, 안마시술소 • 종교시설 중 봉안당 •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 발전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시행령제100조 제1항 제1호 내지 9)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	
	전 지역	C	—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ATM기 제외), 소개업소, 노래연습장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구 분	전층 불허용도	1층 전면 불허용도	
	일반상업 지역, 준주거지역 일부 (퇴계로변)	A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포판매소, 경의사, 안마시술소 • 종교시설 중 봉안당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장례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시행령제100조 제1항 제1호 내지 9)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	
	준주거지역 (이면부)	B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포판매소, 게임제공업소, 경의사, 안마시술소 • 종교시설 중 봉안당 •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 발전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시행령제100조 제1항 제1호 내지 9)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	
	전 지역	C	—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ATM기 제외), 소개업소, 노래연습장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주1) 1층 전면은 도로(2 이상 도로 접할 경우 넓은 도로)에 접한 건축물 1층부를 말함			주1) 1층 전면은 도로(2 이상 도로 접할 경우 넓은 도로)에 접한 건축물 1층부를 말함		
주2)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별도의 건축물 불허용도 적용			주2)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별도의 건축물 불허용도 적용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
경



○ 퇴계로변

구분

기정

변경

3. 건축계획
에 관한 결
정조서
나.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
서
(1)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
서
(가) 불허용
도

구분

불허용도

비고

(A)
간선변

전층

- 단독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혜식당(병원부속시설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경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등 유사시설(경마장, 경륜장, 경정장등)
- 유흥시설
-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 제외),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퇴계로변

(B)
이면부

전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점담골프연습장
- 운동시설 중 옥외점담골프연습장
- 공장(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정과 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차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퇴계로
이면
주거지역

(A)
간선변

전층

- 단독주택(주거복합 제외)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혜식당(병원부속시설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경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등 유사시설(경마장, 경륜장, 경정장등)
- 유흥시설
-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 제외),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퇴계로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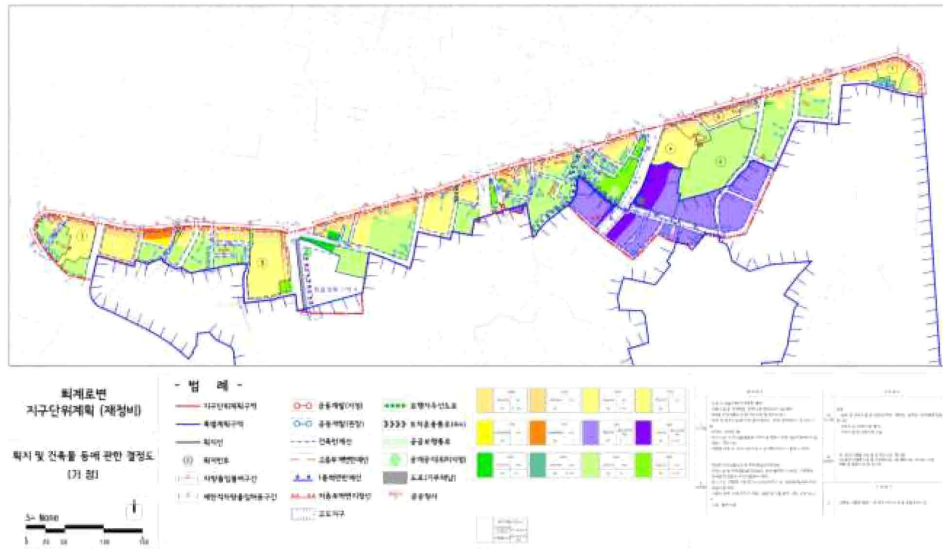
(B)
이면부

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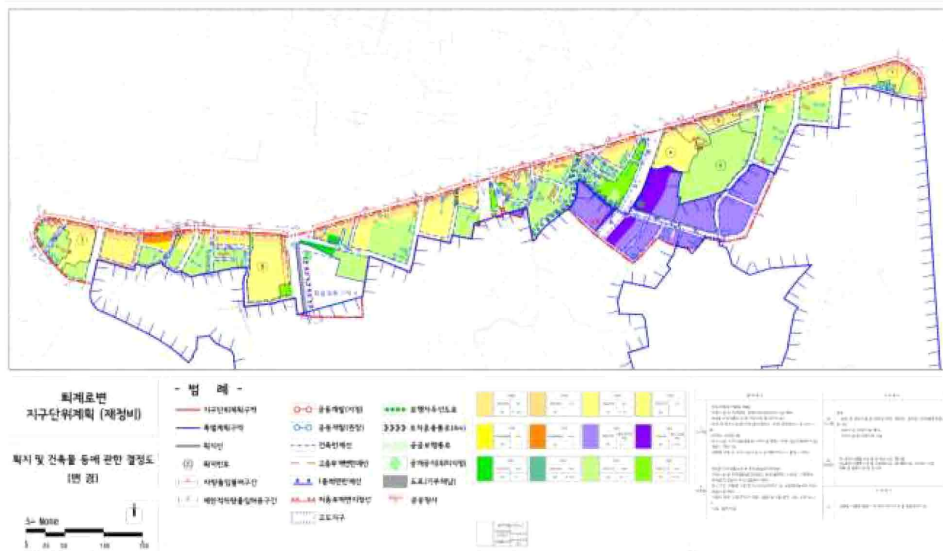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점담골프연습장
- 운동시설 중 옥외점담골프연습장
- 공장(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정과 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차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퇴계로
이면
주거지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경



○ 약수

구분	기정			변경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불허용도	구분	불허용도		구분	불허용도	
	대상지 전체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공장(저식산업센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애시설		대상지 전체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공장(저식산업센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애시설	
	준주거 지역 일부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상복합제외)	준주거 지역 일부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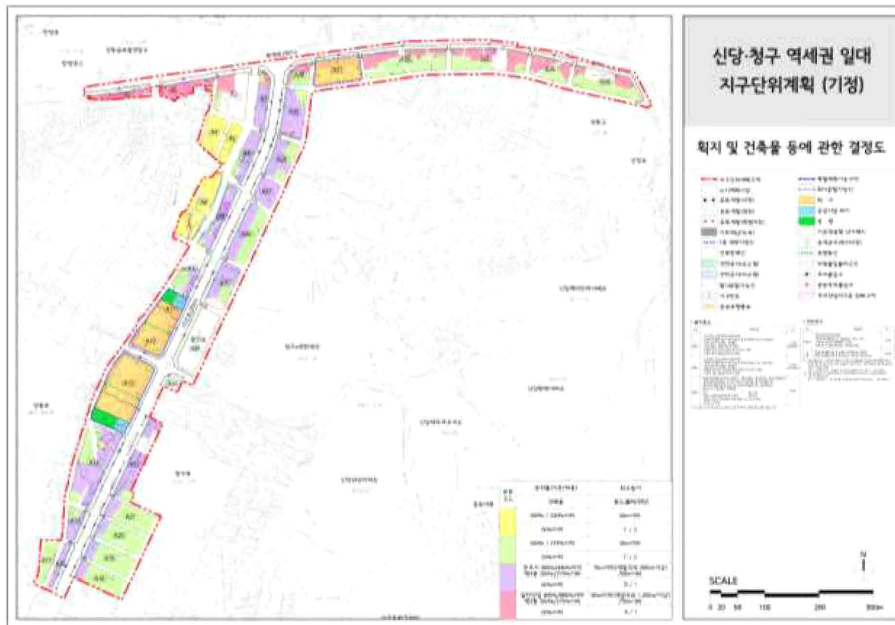
건축물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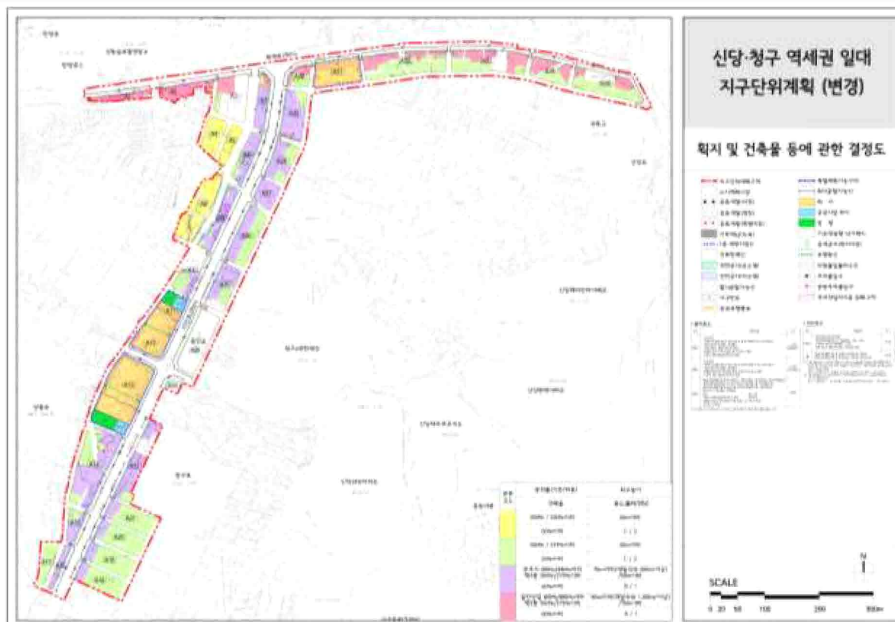
○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구분	기정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구분	불허용도	비고
③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가 불허용도	A 전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로류 판매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공영주차장 제외)	간선부 (퇴계로변)	A 전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로류 판매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공영주차장 제외)	간선부 (퇴계로변)
	B 전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로류 판매소 및 주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공영주차장 제외)	간선부 (다산로변)	B 전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로류 판매소 및 주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공영주차장 제외)	간선부 (다산로변)
	C 전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자동차양입소, 총포판매소, 청소년게입업소, 복합유통게입제공업소 등 이와 비슷한 게입관련시설, 다중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로류 판매소 및 주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공영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이면부	C 전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자동차양입소, 총포판매소, 청소년게입업소, 복합유통게입제공업소 등 이와 비슷한 게입관련시설, 다중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광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로류 판매소 및 주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공영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이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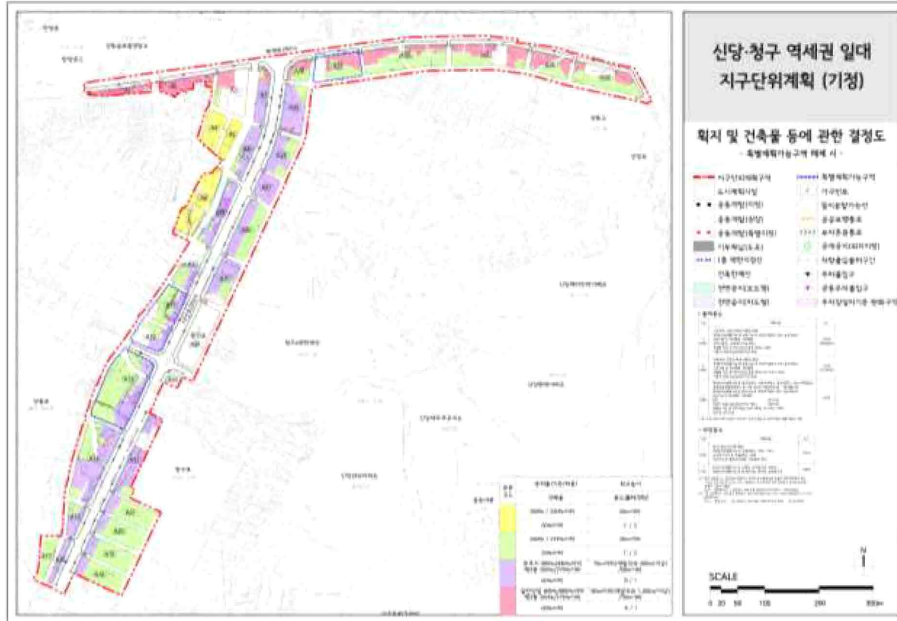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 시)

기
정

변경

